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결정사안】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말에서 8월 사이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지역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박○봉 등 13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요시찰대상자라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 소집·연행되어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 등지에서 경찰과 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연행되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경찰과 국군 등에 의해 1950년 6월 말에서 8월 사이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일명 벼락고개),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칠곡군 가산면 모래재,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 등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2.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여 희생자 총 1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박○봉(朴○鳳, 2다-300-2), 이○천(李○千, 2다-15696), 노○호(盧○鎬, 2다-1033), 박○식(朴○植, 2다-16708), 권○택(權○澤, 2091-21), 조○용(曹○龍, 2다-4728), 권○봉(權○鳳, 2다-9890), 장○두(張○斗, 2다-9547), 김○해(金○海, 2다-12983), 김○병(金○炳, 2다-5010), 김○쇄(金○釗, 2다-11400), 김○중(金○鍾, 2다-16041)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희생 확인)된 임○근(林○根, 2다-3226)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결정을 확인했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들은 남성으로 대부분 20~30대(85%)였으며 농업(77%)에 종사했다. 거주지별로는 예천군과 구미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경찰서 소속 경찰, 국군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

5.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

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6.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

【전 문】

【사 건】 2다-300-2 등 13건,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신청인】 박○봉 등 13명

【결정일】 2024. 10. 8.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확인)으로 결정한다.

【이 유】

- 목 차 -

I. 조사 개요	214
1. 사건 개요	214
가. 신청 접수와 처리	214
나. 신청 내용	215
2. 국가기관의 기존 조사	216
가.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216
나. 2000년 경상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217
다.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218
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218
3. 조사의 근거와 목적	219
4. 규명 과제	219
5. 조사 방법	219
가. 기록 조사	219
나. 진술 조사	226
다. 현장 조사	227
II. 조사 결과	228
1. 사건 배경	228
가. 한국전쟁 발발 전후 예천지역의 상황	228
나. 한국전쟁 발발 전후 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지역의 상황	230
다.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지역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232
라.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지역 국민보도연맹의 가입 경위 및 활동	234
2. 사건 경위	236
가.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지역의 예비검속과 구금	236
나. 희생 경위	238
1) 예천군	238
2) 칠곡군	247
3) 군위군	252
4) 구미시	254
5) 안동시	261
6) 영양군	266
다. 희생 장소	268
3. 사건조사 결과	272
가. 희생자 수와 신원	272
나. 희생자의 특징	275
다. 가해 주체	276
라. 가해의 위법성 여부	280
마. 유족의 피해	281
III. 결론 및 권고 사항	283
1. 결론	283
2. 권고 사항	284

- 표 목차 -

〈표 1〉 진실규명신청 상황	214
〈표 2〉 희생자 신원과 확인 근거	272
〈표 3〉 희생자 거주지(읍면동)별 분포	275
〈표 4〉 희생자 성별 분포	275
〈표 5〉 희생자 연령대별 분포	275
〈표 6〉 희생자 직업별 분포	275

- 사진 목차 -

〈사진 1〉 『제4대국회보고서』 중 「양민피살자신고서」	220
〈사진 2〉 형사사건부	221
〈사진 3〉 진실규명대상자 장○두 당시 모습	255
〈사진 4〉 진실규명대상자 김○해의 1947년 경 남조선국방경비대 근무 당시 집으로 보낸 편지 봉투 사본	257

- 그림 목차 -

〈지도 1〉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발생지역	216
〈지도 2〉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주요 희생 장소	269

- 붙임 목차 -

〈붙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 내용	285
〈붙임(표) 2〉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293
〈붙임(표) 3〉 군경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1기 진실화해위원회)	313
〈붙임(표) 4〉 제4대 국회 『양민피살자신고서』 정리표	320
〈붙임(표) 5〉 희생 현장 위치 및 사진	321

I. 조사 개요

1. 사건 개요

가. 신청 접수와 처리

신청인 박○봉(2다-300-2) 등 13명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직후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지역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신청 건수 13건, 진실규명대상자 13명).

진실화해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0차(2021. 8. 4.), 제17차(2021. 11. 9.), 제25차(2022. 3. 3.), 제27차(2022. 4. 5.), 제33차(2022. 6. 14.), 제39차(2022. 8. 30.), 제48차(2023. 1. 31.), 제49차(2023. 5. 2.) 제1소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제14차(2021. 8. 12.), 제21차(2021. 11. 23.), 제28차(2022. 3. 22.), 제30차(2022. 4. 12.), 제35차(2022. 1. 28.), 제40차(2022. 9. 6.), 제51차(2023. 2. 7.), 제54차(2023. 5. 10.) 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다.¹⁾ 진실규명 신청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진실규명신청 상황

연번	사건 번호 (2다-)	접수 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비고
				성명 (한자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 연도	신청서 사망일	제적등본 사망일	당시 거주지	사건 발생 장소	
예천군(신청건수 4건, 진실규명대상자 4명)												
1	300-2	2020. 12. 24.	박○봉 (朴○鳳)	박○봉 (朴○鳳)	남	형	1930	1950	1950. 9. 8.	용궁면 월오리	용궁면 산택리	
2	15696	2022. 10. 26.	이○석 (李○錫)	이○천 (李○千)	남	아버지	1926	1950. 5.	1958. 7. 5.	용궁면 월오리	용궁면 산택리	
3	1033	2020. 1. 19.	노○완 (盧○完)	노○호 (盧○鎬)	남	할아버지	1917	1950. 6. 2.	1952. 12. 10.	유천면 중평동	용궁면 산택리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와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경북 예천지역 사건은 총 28건이며, 이 중 15건이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조사개시 되었다. 그중 10건이 진실규명 결정(2023. 5. 24.)되었고, 4건이 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한편, 경북 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지역 사건은 총 89건이며, 이 중 48건이 ‘경북 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조사개시 되었다. 그중 26건이 진실규명 결정(2024. 4. 16.)되었고, 9건이 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진실규명결정서 검토 단계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사개시된 1건(2다-11400)도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확인되어 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23.; 「경북 칠곡·의성·군위·구미·안동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2024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24.

연번	사건 번호 (2다-)	접수 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비고
				성명 (한자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 연도	신청서 사망일	제적등본 사망일	당시 거주지	사건 발생 장소	
4	16708	2022. 12. 1.	박○완 (朴○完)	박○식 (朴○植)	남	할아버지	1915	1950. 7. 13.	1961. 10. 15.	용문면 상금곡리	고평 나들	
칠곡군(신청건수 2건, 진실규명대상자 2명)												
5	2090-21	2021. 2. 25.	권○광 (權○光)	권○택 (權○澤)	남	아버지	1926	1950. 6. 중순	1949. 6. 10.	석적읍 도개리	가산면 모래재	
6	4728	2021. 6. 2.	조○환 (曹○煥)	조○용 (曹○龍)	남	아버지	1920	1940년대 후반	1950. 7. 15.	대구 (추정)	가창 등지	
군위군(신청건수 1건, 진실규명대상자 1명)												
7	9890	2021. 12. 2.	권○억 (權○億)	권○봉 (權○鳳)	남	할아버지	1896	1950. 7.	1951. 4. 15.	우보면 달산리	군위군 효령면	
구미시(신청건수 3건, 진실규명대상자 3명)												
8	9547	2021. 11. 22.	장○진 (張○鎭)	장○두 (張○斗)	남	아버지	1903	1950. 7. 초순	1959. 8. 10.	인동면 인의동	불상지	
9	12983	2022. 6. 2.	오○석 (吳○石)	김○해 (金○海)	남	외삼촌	1930	1950. 6. 25. 전후	-	인동면 인의동	지천면 신동재	
10	5010	2021. 11. 26.	김○인 (金○仁)	김○병 (金○炳)	남	아버지	1915	1950. 6. 25. 전후	1970. 11. 29.	구미면 신부동	금오산 일대	
안동시(신청건수 2건, 진실규명대상자 2명)												
11	3226	2021. 4. 28.	임○우 (林○雨)	임○근 (林○根)	남	할아버지	1911	1950. 7.	1955. 11. 26.	녹전면 원천리	남후면 무릉리	1기 진실 화해 위원회 미신청 진실 규명 (희생 확인)
12	11400	2022. 1. 28.	김○동 (金○東)	김○쇄 (金○釧)	남	아버지	1913	1950. 5. ~ 6.	1951. 4. 30.	남후면 검안리	한티재	
영양군(신청건수 1건, 진실규명대상자 1명)												
13	16041	2022. 11. 10.	김○원 (金○源)	김○종 (金○鍾)	남	아버지	1912	1950.	1969. 3. 15.	영양읍 동부리	가창 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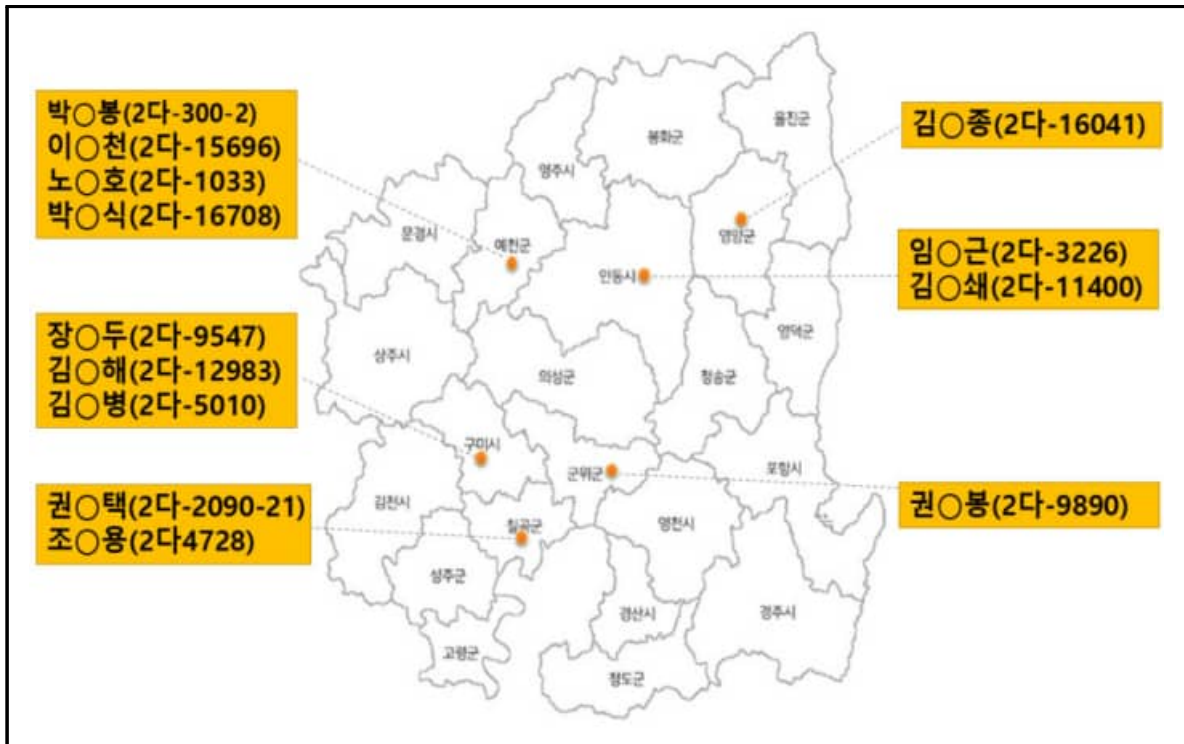
나. 신청 내용

신청인 박○봉 등 13명은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지역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에서 8월 사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경찰과 국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되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어 관할 경찰서 또는 지서 등에 구금된 후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가산면 모래재, 금오산 일대,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계곡, 한티재 등으로 끌려가 집단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고초를 겪으며 외지로 떠돌거나 가정이 해체되었으며 교육의 기회와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불합리한 차별 속에 살아왔으며 억울함과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신청인 박○봉 등 13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하여 사망일시와 장소, 사망 경위를 포함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유해 발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했다.

〈지도 1〉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발생지역



2. 국가기관의 기존 조사

가.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1960년 4·19 혁명 이후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하였던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가 속출하자, 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4대 국회는 1960년 5월 23일(국회 제35회 제19차 본회의)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제4대 국회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제4대 국회 조사특위는 피해지역을 경남, 경북, 전남으로 나누어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각 3명으로 편성하고, 같은 해 5월 27일 조사특위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²⁾

2) 제19차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 조사특위는 경남반·경북반·전남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조사특위의 편성은 위원장 최천을 중심으로

제4대 국회 조사특위는 현장을 조사하고 「양민피살자신고서」, 「양민피살사건증언취속기록」, 「탄원서」,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³⁾을 포함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대한민국국회, 1960)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제4대 국회 조사특위의 조사 결과는 1960년 6월 21일 제4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당시 경북 예천(183명)·칠곡(151명)·군위(104명)·안동(319명)·영양(259명) 지역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주민 1,016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신고되었다.

나. 2000년 경상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1999년 11월 10일(경상북도의회 제141회 제2차 본회의) 경상북도의회는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12월 16일 경북도의회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⁴⁾

경상북도의회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1월 19일부터 2000년 5월 2일까지 총 9차에 걸쳐 사건 현장을 조사⁵⁾하고 유족들의 증언을 담은 속기록,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⁶⁾을 포함한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경북도의회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조사할 때, 경북 예천지역에서는 서신 및 방문을 통해 2건이 접수되었고, 예천군도 자체 조사를 1건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 1건,⁷⁾ 미군 폭격기에 의한 피해 2건⁸⁾으로 사망 90명, 부상 105명이었고, 주택 88호가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있었다. 경북 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지역에서는 전화, 서신, 방문, 언론보도, 기타

경남반: 최천·조일재·박상길, 경북반: 윤용구·주병환·임차주, 전남반: 유옥우·이사형·박병배 등으로 구성되었고, 조사 시기는 1960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하였다. 조사특위는 조사별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를 1960년 6월 21일 제4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3) 제4대 국회 조사특위가 제출한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에는 ‘첫째, 조사한 지역뿐 아니라 사건조사를 위한 군·경·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악질적 관련자 및 피해자와 피해 상황을 조속히 조사하고, 둘째, 관련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법률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 여부와 관계없이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한울아카데미, 2005, 696쪽.
- 4) 제2차 본회의 결의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전체위원(1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편성은 위원장 주기돈, 간사 채희영을 중심으로 이상수·김기인·나종택·박경동·이달·김용암·김응규·신영호·이용석·최영욱·주기돈·최희영·윤상주·이태조·현명진 등으로 구성되었고, 조사 시기는 2000년 1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했다.
- 5) 1차-문경시 산북면, 예천군 보문면, 예천군 감천면, 2차-의성군 금성면, 3차-안동시 북후면, 의성군 가음면, 4차-영양군 영양읍, 영덕군 영덕읍, 영덕군 지품면, 울진군 근남면, 5차-포항시 흥해읍, 포항시 청하면, 포항시 송라면, 포항시 여남동, 포항시 동해면, 6차-고령군 성산면, 고령군 우곡면, 7차-김천시 남면, 김천시 감천면, 칠곡군 왜관읍, 8차-문경시 문경읍, 9차-안동시 풍산읍, 청송군 안덕면.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2000, 46~57쪽.
- 6) 경북도의회양민특위가 제출한 정부에서 조치할 사항에는 ‘국민보도연맹, 재소자 등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행된 총살이나 처형이라 할지라도 사실 여부 확인이나 재판절차 등이 생략된 채 자행됨에 따른 유가족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6·25 전후 자행된 일반 양민학살사건과 그동안 연좌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유족들에게 국민화합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명예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2000, 478쪽.
- 7) 사건 개요: 6·25 직전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부친 등 10명 이상이 예천군 용궁면 원당고개에서 총살당했다.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2000, 39쪽.
- 8) 보문면 산성리와 감천면 진평리에서 발생한 항공기 폭격 사건이다.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2000, 39쪽, 46~47쪽.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27건은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 15건, 미군 폭격기에 의한 피해 11건, 미군에 의한 피해 1건으로 사망 인원은 455명 이상이다.

다.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⁹⁾의 진실규명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경 예천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들이 경북 예천경찰서 및 각 지서 경찰 등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적법한 절차 없이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개포면 경진리 경진나들(서울나들),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벼락고개) 등에서 집단희생된 사실을 규명하고 59명의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였다.¹⁰⁾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칠곡·군위·구미·안동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들이 경북 칠곡·군위·구미·안동경찰서 및 관내 지서 소속 경찰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예비검속되어 1950년 7월에서 8월경 경북 칠곡·군위·구미·안동 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실을 규명하고, 83명의 희생자 신원을 확인했다.¹¹⁾

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¹²⁾의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상북도 예천지역 주민 박○○ 등 10명이 예천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 또는 소집 통보를 받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어 지서 및 예천경찰서 등에 구금되었으며, 예비검속된 사람들이 예천경찰서가 후퇴하기 직전인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중순경 예천읍 고평읍 고평나들, 개포면 경진리 서울나들,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일명 벼락고개)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하였다.¹³⁾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북도 칠곡·군위·구미·안동 지역 주민 25명이 경북 칠곡·군위·구미·안동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 또는 소집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어 지서 및 경찰서 등에 구금되었으며, 예비검속된 사람들이 1950년 6월에서 8월 사이 칠곡·군위·구미·안동 지역에서 경

9)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일 출범하여 2010년 12월 31일에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령으로 같은 해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와 구분하여, '1기 진실화해위원회'로 약칭한다.

10) 1기 진실화해위원회, 「대구·경북(Ⅰ-1) 국민보도연맹 사건 -예천·문경·상주·영주-」,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2010, 633~634쪽.

11) 칠곡 30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4』, 2010); 군위 13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4』, 2010); 구미 7명(진실화해위원회, 「김천·구미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안동 25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영양 8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영양·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12) 2020년 6월 9일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령으로 같은 해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약칭한다.

13)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권, 2023, 108~161쪽.

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하였다.¹⁴⁾

3.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¹⁵⁾의 진실규명을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¹⁶⁾

4. 규명 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발생 배경 및 예비검속과 구금과정,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희생 경위, 희생자의 수와 신원, 가해 주체, 가해의 위법성 여부, 유족들의 피해 사실 등을 밝히 고자 한다.

5. 조사 방법

가. 기록 조사

1)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대한민국 국회, 1960)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제4대국회보고서』)¹⁷⁾에는 1960년 당시 제4대 국회 조사특위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로부터 시군별로 접수한 5,000여 장의 「양민피살자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양민피살자신고서」는 사건이 발생한 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을 유족대표로 작성하여 관공서에서

14)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칠곡·의성·군위·구미·안동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2024. 4. 16.)」, 『2024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권, 2024, 108~161쪽

15) 이하에서 '이 사건'은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영덕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을 지칭한다.

16) 「과거사정리법」 제1조.

17) 『제4대국회보고서』(1960)는 총 24권, 약 6,90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대국회보고서』(1960)에는 「최종보고서」와 「시군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별 보고서」는 권당 200~300매가량의 「양민피살자신고서」와 「연명부」, 「집계표」로 구성되어 있다. 김상숙, 「한국전쟁 전 대구경북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실태와 특징 - 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102집, 2011, 90쪽.

접수하여 군수가 국회에 제출한 공문서이다.¹⁸⁾ 「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희생자와 신고인의 이름, 본적, 주소, 직업, 나이와 같은 인적사항과 피살 시기·장소·경위 등 피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가해자별, 직업별, 성별, 연령별로 피해자가 구분되어 집계되어 있다.¹⁹⁾

진실화해위원회는 「양민피살자신고서」를 포함하여 『제4대국회보고서』를 사건 관련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 시기·경위·장소와 희생자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 기록으로 분석·활용하였다.²⁰⁾

이 사건의 제4대 국회 「양민피살자신고서」 정리표는 <붙임(표) 4>와 같다.

<사진 1> 『제4대국회보고서』 중 「양민피살자신고서」

18) 신고서는 읍·면장 귀하로 작성되어 읍·면의 일부인(日附印)이 찍힌 상태로 접수 일자와 연번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읍·면장이 군수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 군수가 취함·집계한 결과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공문서이다. 「양민피살자신고서철 [경북상주] 기록 검토 보고」(조사3과-2842, 2023. 12. 14.).

19) 경북지역의 「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해당 지역 시·군은 물론 읍면 단위에 이르기까지 학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전체 집계표에는 피학살자를 직업별, 성별, 나이별로 분류하고, 학살 주체가 군인지 경찰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전갑생,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경남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연구』,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239쪽.

20) 「양민피살자신고서」를 비롯한 『제4대국회보고서』의 신뢰성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경북지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양민피살자신고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양민피살자신고서」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유족들의 진술과는 별도의 증거가치를 지니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라며 신뢰할만한 자료로 판단했다. 국회도서관(기획담당관실), 「국회도서관, 손글씨로 쓴 한문기록 「양민피살자신고서」 색인(한글찾기) 작성」(보도자료, 2013.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106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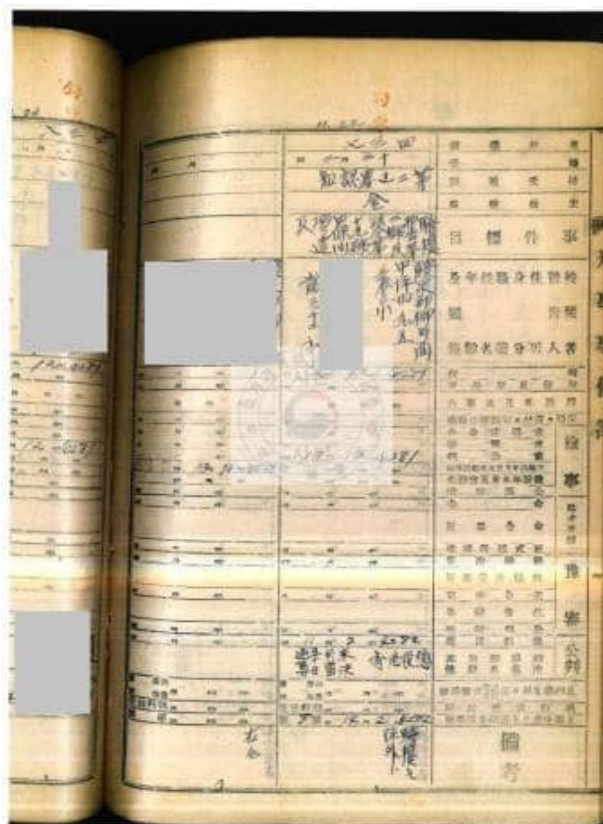
2)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경상북도의회, 2000)

2000년 6월 울진군의회 주기돈을 위원장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된 경북도의회양민특위는 피해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활동결과보고서에는 도내 23개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119건의 신고서를 미군과 아군에 의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지역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기록을 검토하였다.

3) 행형기록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들에 대한 형사사건부 등 행형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입수했다.²¹⁾ 진실화해위원회는 입수한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형사사건부』 중 특히 「국가보안법」, 미군정 시기 「포고령 제2호」, 「법령 제19호」 등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분석했고 해당 기록을 통해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죄명, 처분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2〉 형사사건부



21) 진실규명대상자 노○호(2다-1033) 등 4명(〈표 2〉 참조)에 대한 행형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지역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건기록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생산한 한국전쟁 전후 경북지역 관련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조사에 활용했다. 검토된 보고서 및 사건 기록은 아래와 같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안동 부역 혐의 희생 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3권, 200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2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구·경북(I-1) 국민보도연맹 사건 -예천·문경·상주·영주-」,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6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영양·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천·문경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군위·경주·대구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북 봉화·영양·청송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천·구미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6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 대구·칠곡·영천·경주」,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북 군위·안동·영주·의성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6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6권,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권, 2023.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북 칠곡·의성·군위·구미·안동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2024.

나) 기초사실조사표(1기 진실화해위원회, 2007~2009)

2007년에서 2009년까지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 걸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조사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 유형, 피해 상황, 사건 개요, 희생자 규모, 가해 주체, 희생 유형 등에 대해 사건 관련자, 목격자 등의 증언을 채록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록을 파악·수집하는 것이었다.²²⁾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사실조사표』를 작성했다. 당시 경북 예천·칠곡·군위·안동·영양 지역에서 작성된 『기초사실조사표』에는 총 1,933건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개인별 피해현황 조사표」(이하 ‘피해현황조사표’)가 포함되어 있다.²³⁾ 「피해현황조사표」에는 희생자와 증언자의 인적 사항, 사건 내용, 피해 일시, 희생 장소, 피해 형태, 가해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조사에서는 『기초사실조사표』를 경북 예천·칠곡·군위·안동·영양 지역의 피해 상황과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했다.

5) 제적등본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에 대한 공적인 기록으로 제적등본을 확인했다. 한국전쟁 시기 지역 관공서가 소실되거나 호적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 직후 사망신

22)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10, 116~126쪽.

23) 경북 예천·칠곡·군위·안동·영양 지역 『기초사실조사표』에 포함된 「피해현황조사표」는 총 840건(예천 360건, 칠곡 38건, 군위 45건, 안동 362건, 영양 35건)이다.

고를 한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일부 유족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일을 기억해서 사망신고를 했다. 이를 통해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6) 족보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에 대한 기록으로 족보를 확인하였다. 제적등본에 실제 사망일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족보에는 실제 사망일이 기재되어 제삿날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7) 학교생활기록부(학적부)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적부’)를 자녀들이 졸업한 각 학교에 요청·입수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학교생활기록부(학적부) 중 특히 보호자의 성명·주소·직업·관계, 가정환경, 입학·졸업일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희생 여부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8) 기타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조사를 위해 『대공신원기록편람』(치안본부, 1984)²⁴⁾, 『행불자명부』(내무부 치안국 전남청, 1968)²⁵⁾, 『좌익수형기미만기석방자명부』(경상북도 경찰국, 1963)²⁶⁾, 『좌익수전향자석방자명부』(경상북도 경찰국, 1962)²⁷⁾, 『좌익미전향석방자명부』(경상북도 경찰국, 1962)²⁸⁾ 등을 검토했다.

연행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월북 여부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월북자명단(공보처 통계국, 1951)』, 『6·25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납북인사 DB」²⁹⁾를 검토했다.

24) 『대공신원기록편람』은 치안본부가 1984년 생산한 자료로 본적지별 간첩, 귀순자, 납북귀환자, 납북미귀환자, 정보사범 등의 주소, 성명,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25) 『행불자명부』는 내무부치안국이 1968년 생산한 기록이다. 이 명부에는 1960년대 후반까지 행방불명된 인원 2,232명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학력, 직업, 죄명, 형기, 출소연월일, 호적소명, 행불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다.

26) 『좌익수형기미만기석방자명부』는 경상북도 경찰국이 1963년 생산한 기록이다. 이 명부에는 특조령, 보안법, 조치령,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747명의 본적, 현 주거지,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기, 석방년월일, 주요 가족명이 기재되어 있다.

27) 『좌익수전향자석방자명부』는 경상북도 경찰국이 1962년 생산한 기록이다. 이 명부에는 좌익사범 105명의 본적, 현 주거지,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기, 석방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28) 『좌익미전향석방자명부』는 경상북도 경찰국이 1962년 생산한 기록이다. 이 명부에는 좌익사범 444명의 본적, 현 주거지,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기, 석방년월일, 요시찰 여부와 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다.

29) 납북인사 DB의 인터넷 주소는 www.kwafu.org/korean/directory.php 이며, 해당 DB는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2,438명)』, 공보처 통계국, 1950; 『6·25사변피랍치자 명부(82,959명)』, 대한민국 정부, 1952; 『6·25동란으로 인한

그 밖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아래 기록을 참고했다.

○ 군·경 관련 자료

- 경북 예천경찰서, 『경찰연혁사』(생산년도 불상)
-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195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70.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Ⅱ』, 1973.
-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1978.
- 보병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198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 경우장학회, 『국립경찰오십년사(사료편)』, 1995.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 경찰청,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한국전쟁 당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2007.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1987.
-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1952.
- 온창일·정토웅·김광수·나종남·양원호, 『한국전쟁사 부도』, 황금알, 2021.

○ 신문·잡지자료

- 『국민보도연맹사건 관련 신문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수집기록(1949~1961).
-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애국자』 창간호, 1949.

○ 지방향토지

-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경상북도사 (중)』, 경상북도, 1983.
- 영양군지편찬위원회, 『영양군지』, 1988.
-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1: 예천의 역사』, 예천군, 2005.
-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2: 예천의 생활문화』, 예천군, 2005.
-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3: 예천의 문화재』, 예천군, 2005.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 『실향사민등록자명단(7,034명)』, 대한적십자사, 1956; 『6·25사변피랍치자인사명부 (2,316명)』,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 1951.

- 칠곡군, 『칠곡군지』, 2016.
- 군위군, 『군위군정백서 2010~2011』, 2012.
- 안동문화원, 『내 고장 편람』 1권, 2020.
- 구미시, 『구미시정백서 2020~2021』, 2022.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 김동춘, 『월간참여사회』, 2001, 7월호.
- 강성현, 「전향에서 감시동원, 그리고 학살로-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4호, 2004.
- 전갑생,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 경남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 연구』,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 김상숙, 「한국전쟁 전 대구경북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실태와 특징-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102집, 대구사학회, 2011.
- 전현수, 「6·25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연구 - 경상북도 예천군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55권, 2021.

나. 진술 조사

1) 신청인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신청인 박○봉(2다-300-2호) 등 13명에 대한 신청인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신청인의 주요 진술 내용은 <붙임(표) 1>과 같다.

2) 참고인 진술·면담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7월 8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참고인 박○○ 등 30명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다. 참고인 진술 내용은 <붙임(표) 2>와 같다.

3) 군경 관련 참고인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군경 관련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70여 년이 지나 유력 참고인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생존 군경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기록을 통해 경북지역 군경 관련 참고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군경 관련 참고인 진술

내용은 <붙임(표) 3>과 같다.

다. 현장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제4대국회보고서』, 『기초사실조사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해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지역의 주요 희생 장소를 아래와 같이 파악했다.

- 1)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 2)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일명 벼락고개)
- 3) 개포면 경진리 경진나들
- 4)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 5) 칠곡군 가산면 모래재
- 6)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
- 7) 안동시 수상동 한티재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중 조사과정에서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 ‘개포면 경진리 경진나들’,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가산면 모래재’,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관련 지도와 사진은 <붙임(표) 5>와 같다.

II. 조사 결과

1. 사건 배경

가. 한국전쟁 발발 전후 예천지역의 상황

해방이 되자 그동안 금지되었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념에 따라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천군에서는 군민대회를 통해 자치적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예천치안유지회’가 결성되었다. 예천치안유지회는 3일 만에 군 행정을 완전히 장악한 후 건국준비 예천치안유지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 중 일부 청년들이 예천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대립 구도에서 예천청년동맹이 신탁통치를 지지한 것을 계기로 예천청년동맹에서 이탈한 우익들은 광복청년대를 발족하였다. 이때부터 예천지역에서 좌·우익의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³⁰⁾

예천지역의 좌우 갈등은 1946년 대구10월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비화되었다. 10월 4일 민주청년동맹이 주도하는 군중이 민청사무실을 출발하여 예천경찰서로 향하면서 우익청년단체인 광복청년대원들 및 경찰과 대치하였다. 10월 5일 경찰과 광복청년대원이 무장하고 총격전을 벌임으로써 좌우 갈등은 유혈사태로 변했고, 광복청년대는 경찰을 도와 좌익 진영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³¹⁾

대구10월사건 이후 예천지역의 좌우 갈등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좌익세력은 지도부를 잃고 크게 약화되었고 광복청년대를 비롯한 우익세력의 힘이 강화되었다. 1947년 좌익 진영의 활동은 미미하였다.³²⁾ 광복청년대가 대동청년단에 흡수되어 대동청년단 예천군지부로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1948년 또다른 우익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³³⁾와 함께 대한청년단(이하 ‘한청’) 예천군지부로 통합되었다.³⁴⁾

1949년 군경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남로당원을 체포했고,³⁵⁾ 남로당원이 용궁지서를 습격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³⁶⁾ 7월 남로당 군당 책임자 등 간부 4명이 사살되고 6명이 체포되었다.³⁷⁾ 한청은 점점 조직을 정비하였고,³⁸⁾ 1950년에 들어와 야산대는 거의 괴멸되어 예천지역은 안정을 되찾

30)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60~269쪽.

31) 전현수, 「6·25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연구 -경상북도 예천군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55권, 2021, 360쪽.

32) 전현수, 「6·25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연구 -경상북도 예천군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55권, 2021, 360~362쪽.

33) 서북청년회(서북청년단)는 북한에서 월남해 온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청년단체로서 비교적 급진적인 성향을 보여주던 조직이었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0쪽.

34)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0쪽.

35) 『대구시보』(1949. 2. 23.).

36) 『조선중앙일보』(1949. 3. 1.).

37) 『영남일보』(1949. 7. 7.).

38) 『영남일보』(1949. 7. 13.); 『영남일보』(1949. 11. 25.).

기 시작하였다.³⁹⁾

대구10월사건은 예천지역에서 민간인 희생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후에 국민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되었다.⁴⁰⁾ 이후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을 거치며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자 예천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주민이 대구10월사건에 가담하거나 좌익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것을 포함하여 경찰의 감시와 관리 대상이 되는 상황이 한국전쟁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남하하여 단양·문경지역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예천은 전투지역이 되었다. 청풍전투에서 분산된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 제7중대와 문경군 동로면 적성리의 제21연대 제9중대가 예천읍에 도착하여 대원을 규합하고, 7월 12일 영주에 있던 3사단 본부에 연락했다. 7월 13일 사단 본부가 예천으로 급파한 2개 중대 병력에 경찰까지 합세하여 대규모의 전투 병력을 구성하였다.⁴¹⁾ 예천경찰서는 이 시기에 예천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을 진행하였다.

7월 15일 상주를 통해 미군 제25사단 제24연대 제3대대(연대장: Horton White 대령)가 예천에 들어오자 국군은 예천읍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재구축하였다. 그러나 사단 본부가 주저항선을 풍기-영주 도로로 결정함에 따라 예천에 주둔하던 국군이 영주로 이동하면서 인민군은 예천을 손쉽게 장악하게 되었다.⁴²⁾

1950년 7월 19일 인민군 제8사단 2개 중대 병력이 예천읍을 공격하여 예천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미군과 경찰은 안동·의성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7월 20일 군경합동으로 예천읍에서 인민군을 일시적으로 몰아냈으나, 7월 24일 6,000명 규모의 인민군에 밀려 내성천으로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미군은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에 예천방어선을 맡기고 상주 화령장으로 철수하며 예천은 인민군에 점령되었다.⁴³⁾

7월 31일 안동에서 열린 한국군 고급지휘관 회의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철수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8월 1일 야간에 인민군의 공격을 받은 국군은 안동 시내와 낙동강 북방 곳곳에서 분산되고 퇴각하였다. 이 와중에 UN 공군은 인민군의 후방이 된 예천 한천교, 고평교 등과 인민군 주둔 건물에 폭격을 가했다. 9월 26일 수복될 때까지 예천은 인민군 통치하에 있었다.

39) 전현수, 「6·25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연구 -경상북도 예천군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55권, 2021, 363쪽.

40) 전현수, 「6·25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연구 -경상북도 예천군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55권, 2021, 365쪽.

41)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2~273쪽.

42)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3쪽.

43)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3~274쪽;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861쪽.

나. 한국전쟁 발발 전후 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지역의 상황

경북지역은 해방 이후 1946년 ‘대구10월사건’⁴⁴⁾에 이어 1948년 ‘대구6연대사건’⁴⁵⁾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의 좌익인사와 군인들이 경북 도처의 산악지대로 입산해서 빨치산이 되었다. 이에 더해 김○○ 부대(제3병단) 등 북한인민유격대가 남하해 빨치산에 합류하면서 태백산과 문수산, 일월산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의 빨치산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됐다.⁴⁶⁾

경찰은 경상북도 비상경비총사령부와 태백산지구 전투경찰대 총지령본부를 설치해서 경북 일대와 태백산, 일월산, 보현산 등지의 빨치산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⁴⁷⁾ 국군도 제2사단 16연대와 제3사단 제22연대, 제25연대 등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한 빨치산 토벌 작전을 펼쳤다. 1949년 8월 이후 일명 김○○ 부대로 알려진 인민군 제3병단이 남하해 빨치산과 합류하자 국군은 1949년 9월 28일 충북 단양에 거점을 둔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제2사단 제16연대장 이정일 대령)를 설치하고 제2사단 16연대 3개 대대와 8사단 제21연대 1개 대대 등을 배속시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실시했다.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의 작전은 1950년 3월 15일 종료됐으며, 이후 안동지구 등에 대한 공비토벌작전 임무는 제2사단 제25연대로 이관됐다.⁴⁸⁾

미군정기 칠곡에서는 왜관식량사건⁴⁹⁾과 대구10월사건 등이 일어났다. 1946년 10월 1일부터 10월 3일에 걸쳐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10월사건이 영남·경기·호남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속에, 칠곡군에서도 10월 3일 새벽 칠곡 주민 200여 명이 경찰서와 약목지서를 점령하면서 이틀간에 걸쳐 소요가 일어났다. 이때 사망자 15명(관리 8명, 일반인 7명), 부상자 16명(관리 7명, 일반인 9명), 건물 파괴 71곳(관청 65곳, 일반 65곳)이 발생했다.⁵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1일 경상북도 전시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1950년 7월 10일 미 제25사단이 부산에 상륙해서 김천과 상주에 배치됐다.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은 1950년 7월

44) 대구10월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46년 9월 하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뒤, 이어서 10월 1일에서 2일 사이 대구에서 주민봉기의 형태로 발생했다. 그리고 10월 6일까지 경북지역으로 번졌고 12월 중순까지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4』, 2010, 64쪽.

45) ‘대구6연대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에 이어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제6연대 병사 400여 명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서 처벌된 병사는 1949년 5월 말까지 372명이나 되었다. 보병제3사단, 『백골사단 역사』, 1980, 109~110쪽.

46)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77~78쪽.

47)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76쪽.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41쪽;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2001. 9. 29) 77~78쪽.

49) 1946년 콜레라 발생 등 재해와 미군정의 무원칙한 식량 정책 및 강제 매입으로 인해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왜관식량사건’은 1946년 7월 3일 미군정 당국이 왜관에 있던 식량영단 창고에서 재고 쌀을 대구로 싣고 가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왜관 주민에게 쌀을 배급하라”고 하며 군용트럭 3대를 향해 투석전을 벌였다. 밤이 되자 합세한 주민 1천여 명이 경찰서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농성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미군의 유탄에 맞아 사망하고, 주민 10여 명이 붙잡혔다. 경찰청에서는 식량 농성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는 체포한 사람 중 인민위원회 간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좌익의 선동으로 결론지었다. 『칠곡군지』, 2016, 153~154쪽.

50) 칠곡군, 『칠곡군지』, 2016, 154~155쪽.

29일경 주민들의 소개령이 내려지자 군경 가족과 우익인사들은 대부분 피난을 가기도 했으나, 전투가 심해지자 주민 대부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인민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에서는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인민군 점령지의 행정정책을 집행하면서 주민들은 그들을 따르며 살 수밖에 없었다.⁵¹⁾

1950년 8월 1일 미 8군사령부는 전 부대에 현 전선에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전면 철수를 명령했다.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면서 국군은 방어선의 북측면(왜관~영덕)을, 미군은 방어선의 서측면(왜관~남지읍~진해만)을 담당했다. 의성에 국군 1군단 사령부가 설치되고 국군 수도사단과 국군 8사단이 의성~영덕에 배치됐고, 군위에 2군단 사령부가 설치되고 국군 6사단과 국군 1사단이 왜관~의성에 배치됐다.⁵²⁾ 국군 8사단은 1950년 8월 1일 안동 인도교 및 철교 폭파 후 낙동강 남안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1950년 8월 1일 인민군 8사단과 12사단은 안동을 점령하고, 8월 3일부터 인민군 13사단은 왜관 북방에서 낙동강 도하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1950년 8월 11일 인민군 8사단이 포항을 점령했으며, 8월 13일에는 다부동 전투가 시작됐다.⁵³⁾

국군 제1사단은 8월 23일 인민군의 마지막 공세를 격퇴했으나, 인민군은 8월 31일부터 낙동강 지역에서 총공세를 감행해서 포항 시내에 진입하기도 했다. 인천상륙 개시 전까지 칠곡, 포항, 영천 등지에서 국군과 인민군의 공방전이 계속됐다.⁵⁴⁾

한국전쟁 시기 칠곡군은 '낙동강-반변천-오십천'을 연결하는 전선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한 곳이자 최대 격전지였다. 특히 인민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왜관 다부동 지역을 돌파하면 대구-부산 간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국군·유엔군은 2개 사단(국군제1사단, 미제1기병사단), 북한 인민군은 5개 사단을 투입해서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55일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당시 다부동 전투, 328고지 전투, 유학산 전투(674고지 전투, 837고지 전투), 불령장 전투, 가산산성 전투 등이 칠곡군에서 벌어졌다.⁵⁵⁾

1950년 9월 중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해서 전세가 역전됐다. 1950년 9월 22일 국군 제6사단이 군위를 탈환했고, 9월 23일 칠곡경찰서가 수복됐다. 국군 제1사단이 9월 25일 선산에 진출했고,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는 9월 27일 영양군을 탈환했다. 국군 제8사단은 9월 24일 낙동강 이남에 위치한 안동의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일대를 수복한 후 9월 26일 안동 읍내를 수복했다.⁵⁶⁾

51)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군위·안동·영주·의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683쪽;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4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71; 보병제8사단 『오뚜기역사』, 1980.

52) 한반도 동남부에 남북 160km, 동서 80km의 곱자 모양을 이룬 낙동강 방어선은 서북 첨단의 왜관을 기점으로 북측면은 동해안의 영덕에 이르며, 서측면은 낙동강 본류를 따라 남강과의 합류지점에 있는 남지읍에 도달하고, 그로부터 다시 함안, 진동리를 거쳐 진해만에 이른다. 낙동강 방어선은 인민군의 공격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동북부 산악지대, 낙동강, 남강, 남해 등 천연장애물을 최대한 이용한 방어선이었으며, 워커 장군의 비장한 사수결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워커 라인(Walker Line)'이라고도 불린다. 온창일·정도웅·김광수·나종남·양원호, 『한국전쟁사 부도』, 황금알, 2021, 64~66쪽.

5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년, 268~309쪽.

5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년, 268~309쪽.

55) 칠곡군, 『칠곡군지』, 2016, 154~155쪽.

56)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군위·안동·영주·의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683쪽.

다. 경북 예천·칠곡·구미·안동·영양지역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이승만 정부는 대구10월사건과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을 거치면서 강력한 좌익통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며 대대적으로 빨치산을 토벌하고 좌익을 검거하였다. 1948년 9월 4일부터 1949년 4월 30일까지 전국에서 89,710명이 좌익혐의 등으로 군경에 체포되어 이 중 28,404명이 석방되고 21,606명이 기소되었다. 기소된 사람 중 80% 이상이 유죄를 선고 받아 형무소에 수감되면서 전국 형무소 대부분은 수용 능력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수용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형무소 수감자의 약 80%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였다.⁵⁷⁾

정부는 좌익 관련자를 수형이 아닌 회유와 전향의 방식으로 통제·관리하고자 국민보도연맹을 창설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자와 동(同) 형여자(刑餘者), 반국가사상보지자(反國家思想保持者) 등을 주요 가입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보도연맹은 창설 당시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단체’로 규정하였지만, 조직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였으며,⁵⁸⁾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인사의 주도하에 조직 및 운영된 ‘임의단체’였다.⁵⁹⁾

국민보도연맹은 ‘자수자와 전향자를 계몽·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명목으로 1949년 6월 5일 서울시 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중앙본부선포대회’를 열고 대외적으로 창설을 선포하였다.⁶⁰⁾ 국민보도연맹 기관지인 『애국자』 창간호에 따르면,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9월 20일부터 지방지부 조직에 착수하였다. 지방지부의 조직원칙은 기본적으로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⁶¹⁾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간사장 박○○)는 지방지부 조직에 착수하여 1949년 12월 12일까지 지방지부 조직을 완료할 계획으로 도연맹과 시군 연맹, 읍면지부를 구성하였다.⁶²⁾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의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연맹도 결성되었다. 1949년 11월 6일 『영남일보』는 ‘국민보도연맹 경북도연맹이 동년 11월 1일 발족하여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공회당에서 선포식을 거행한다. 대구경찰서 3층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활발히 활동한 결과, 1949년 11월 4일까지 450명의 자수자를 포섭했고, 그중에는 남녀 중학생 약 80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하였다.⁶³⁾

당시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수와 경북도연맹 간사장에 대해, 1949년 11월 25일 『남선경제신문』은 ‘보도연맹가입자가 1,554명으로 학생이 수위(首位), 경북도연맹 간사장이 백○○’라고 보도하였

57)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334쪽.

58)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초창기에 경찰이 주로 조직 운영해왔지만, 현재는 법무부가 주관’이라고 운영 주체를 밝혔다. 법무부차관 김갑수는 중앙기구와 ‘고문에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3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윤재욱 의원은 ‘국민보도연맹의 책임자라고 하면 대개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임명하다시피’한다고 발언하여 보도연맹 중앙조직이나 지방조직 모두 국가기관이 조직하고 관리했던 것이 확인된다. 국회사무처, 『제6회 제28호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50. 2. 11.

59)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390쪽.

60) 『동아일보』(1949. 6. 6.); 『조선일보』(1949. 6. 6.); 『경향신문』(1949. 6. 6.);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343쪽.

61) 『민주중보』(1949. 12. 3.).

62)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342~343쪽.

63) 『영남일보』(1949. 11. 6.).

다.⁶⁴⁾ 12월 7일 『영남일보』는 ‘지식인 포함 3,000여 명 전향 12월 5일까지 총 3,332명’이라고 보도하였다.⁶⁵⁾

경상북도연맹 산하 시·군 조직 중 예천군 국민보도연맹이 1949년 10월 30일 결성되었음을 『예천군지』(예천군, 2005)를 통해 확인했다.⁶⁶⁾ 하지만 그 외 사건 관련 기록과 진술이 부재하여 예천군연맹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칠곡군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일자와 간부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50년 2월 2일 『영남일보』에 ‘1950년 2월 2일 왜관읍 보련위원 조직’이라고 보도된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군위군 국민보도연맹은 1950년 2월 2일 결성됐으며, 조직은 간사장 손○○, 사무국장 김○○, 총무부장 김○○, 보도부장 김○○, 훈련대장 김○○, 사업부장 정○○, 선전부장 서○○, 조직부장 김○○이다.⁶⁸⁾ 또한, 군위군연맹과 관련해서 경찰 측 참고인에게 일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위경찰서 참전경우회 소속인 참고인 홍○○은 “군위군연맹의 경우 8개 면에 지부가 결성됐는데, 대장(간사장)이 손○○, 군위면지부 책임자는 홍○○이었으며, 군위경찰서 앞 1층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⁶⁹⁾ 군위경찰서 참전경우회 소속인 참고인 김○○ 또한, “당시 군위군연맹과 면 단위 지부가 결성되어 있었고, 사무실 입구에는 보도연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라고 진술했다.⁷⁰⁾

1950년 2월 5일 『영남일보』 기사에 따르면, 선산군⁷¹⁾ 국민보도연맹은 ‘1950년 2월 8일 선포식이 거행된다’라고 보도되어 비슷한 시기에 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며,⁷²⁾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이○○의 진술에 따르면, 선산군 보도연맹 문화부장은 이○○(직다-9179)이다.⁷³⁾

1950년 2월 23일 『남선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안동군 국민보도연맹은 1950년 2월 20일 결성됐다. 조직은 위원장 서○○(외 위원 30명), 이사장 송○○, 훈련과장 이○○, 간사장 박○○, 사업과장 김○○, 사무국장 이○○, 선전과장 권○○, 총무과장 김○○, 조직과장 서○○, 보도과장 남○○였고, 규모는 천여 명으로 추정된다.⁷⁴⁾

64) 『남선경제신문』(1949. 12. 29.).

65) 『영남일보』(1949. 12. 7.).

66) 예천연표에 “1949년 10월 30일 예천군 국민보도연맹 결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하권: 예천의 문화재』, 2005, 861쪽.

67) 『영남일보』(1950. 2. 2.).

68) 『영남일보』(1950. 2. 7.).

6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홍○○ 녹취록(2009. 4. 3.).

7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녹취록(2009. 4. 17.).

71) 구미시는 1950년 당시 행정구역상 선산군이였다. 현재 구미시는 선산군 구미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1978년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이 구미시로 승격됐다. 1979년에는 선산면이 읍으로 승격됐고, 1995년부터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돼서 현재 구미시에 이르고 있다.

72) 『영남일보』(1950. 2. 5.).

7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이○○ 진술조서(2008. 12. 27.).

74) 『남선경제신문』(1950. 2. 23.).

영양군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일자와 간부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50년 3월 8일 『남선경제신문』에 ‘보련군부조직(保聯郡部組織) 거의 완료, 지난 4일 현재 안동, 청송, 봉화, 예천을 제외한 각 군에서는 보련군연맹조직을 완료하였다’라고 보도되어 영양지역은 1950년 3월 이전에 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⁷⁵⁾

라. 경북 예천·칠곡·구미·안동·영양지역 국민보도연맹 가입 경위 및 활동

국민보도연맹이 하나의 조직체로서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지자,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는 반공사상의 선전·선무 작업과 이를 통한 포섭, 좌익세력 색출 및 섬멸 작업, 전향자 보도 사업을 전개하면서 본격적인 조직 확대 작업에 들어갔다.⁷⁶⁾ 당국은 사상을 전향할 의향이 있는 자들에 대해 1949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수를 받은 뒤 동년 11월 30일까지 자수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함으로써 좌익 인사들의 전향을 더욱 촉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내무·국방 3부 장관의 공동 성명 발표와 검찰총장의 담화, 삐라 살포, 각종 언론보도 등을 동원했고, ‘죄과를 불문에 부치겠다.’, ‘취직을 앞선해 주겠다’는 등 회유를 계속하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⁷⁷⁾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와 각 지도기관, 지방지부에서 규정한 국민보도연맹 가입 대상은 국가보안법상 불법단체 가입자와 그 형이 남은 자, 반국가사상 소지자, 미군정 포고령 위반자, 이상의 사람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 자, 가입을 희망한 우익단체원 등이었다. 이처럼 국민보도연맹의 가입 대상은 그 규정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전향자 이외의 사람들도 가입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향자 단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좌익사상과 관련 없는 일반 국민도 가입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⁷⁸⁾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지역 국민보도연맹 가입 경위는 대체로 과거 좌익활동 전력(전과)이 있거나 좌익활동 혐의를 받은 경우, 빨치산 등 좌익에게 식량 등을 제공해서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마을 동장(구장) 등의 권유(요구)로 도장을 찍어준 경우 등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인 조○○은 “작은아버지는 좌익활동을 하다 전향하면서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라고 했고, 신청인 장○진은 “아버지는 노동운동과 좌익활동을 하다가 보도연맹에 가입됐다”라고 진술했다.⁷⁹⁾ 신청인 권○광은 “1949년경 마을 이장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테니 보도연맹원

75) 『예천군지』에 따르면 예천군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10월 30일 결성되었고, 1950년 2월 23일 『남선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안동군 국민보도연맹은 1950년 2월 20일 결성됐다고 보도되어, 결성일자에 대한 보도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남선경제신문』(1950. 3. 8.).

76) 강성현, 「전향에서 감시동원, 그리고 학살로-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4호, 역사학연구소, 2004, 70쪽.

77) 경찰청,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2007, 511쪽.

78) 중앙본부와 각 지도기관에서 규정한 보도연맹 의무가입자는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자, 동(同) 형여자(形餘者), 반국가사상보지자(反國家思想保持者), 자진 가입자다. 한편, 마산시지부와 통영군위원회의 규정을 통해 지방지부의 가입 대상이 중앙의 일반규정에 비해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359~364쪽.

79) 참고인 조○○ 진술조서(2023. 4. 21.); 신청인 장○진 진술조서(2023. 2. 9.).

명부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해서 아버지도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진술했다.⁸⁰⁾ 일부 참고인은 “진실규명대상자가 질병으로 활동하지 못하는데도 위협을 받아 남로당에 가입되었다”⁸¹⁾라거나 “좌익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무슨 명부에 이름이 올려졌다는 것을 사망 후에 알게 되었다”⁸²⁾라고 진술했다.

『제4대국회보고서』의 「양민피살자신고서」에 기재된 피살경위에 ‘좌익계열에 가담하였다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⁸³⁾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⁸⁴⁾ ‘강제 가입’⁸⁵⁾처럼 가입 경위는 짧게 쓰여 있었다. 강제 가입은 구체적으로 ‘죄 없는 사람 보도연맹에 가입하라 하여 근거 없이 가입할 수 없다고 하니 신고인 본인(피살자의 처)을 특공대와 지서주임 김○○⁸⁶⁾가 와서 나체를 만들어 놓고 구타하기에 보도연맹에 가입’⁸⁷⁾이라고 기록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예천경찰서 소속이었던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신○○과 김○○, 김○○, 윤○○은 보도연맹원들이 대체로 과거에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나 그 사람들에게 의복이나 식량·정보 등을 제공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한 활동과 무관하게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했다.⁸⁸⁾

한편,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지역 국민보도연맹 가입 후 활동 사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당시 칠곡군 북삼지서에 근무하던 참고인 나○○은 본서에서 보도연맹원들을 모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구호를 외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으며⁸⁹⁾, 칠곡군 북삼면 보손리에서 보도연맹에 가입됐던 참고인 장○○은 “보도연맹원들은 몇 월 며칠 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이곤 했는데, 전화가 없으니 편지나 전보로 연락이 왔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왜관 마을회관 등에서 모임이 있었다”라고 했다.⁹⁰⁾

군위경찰서 경우회 소속의 참전경찰 홍○○은 “보도연맹원들이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경찰관들에게 교육과 제식훈련 등을 받았다”라고 했으며⁹¹⁾, 같은 경우회 소속의 김○○ 역시 “보도연맹원들이 한 달에 1회 정도 정화교육 명목으로 경찰서 강당으로 소집돼서 사찰 형사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다.⁹²⁾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김○○은 “형 김○○가 보도연맹에 가입된 후 경찰 지시로

80) 신청인 권○○광 진술조서(2021. 10. 27.).

81) 신청인 이○○석 진술조서(2023. 6. 5.);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 6. 24.).

82)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6. 2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8. 11. 13.).

83)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134, 135쪽.

84)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39, 129, 130, 137쪽.

85)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179~180쪽.

86) 김○○는 이복 출생으로 1948년 9월 20일부터 1950년 5월 2일까지 예천경찰서 수사과 형사반장, 개포지서 주임, 호명지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1950년 5월 2일부터 1950년 10월 1일까지 예천경찰서 사찰계 형사반장으로 근무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 국민보도연맹사건 관련 참고인 탐문조사 결과보고」(조사3팀-827, 2008. 11. 10.), 10~11쪽.

87)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57쪽.

8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신○○ 진술녹취록(2008. 11.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8. 11. 1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8. 11. 1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윤○○ 진술녹취록(2008. 11. 11.).

8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나○○ 진술조서(2009. 5. 7.).

9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장○○ 면담보고서(2009. 5. 8.).

91)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홍○○ 진술녹취록(2009. 4. 3.).

9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9. 4. 17.).

강연회에 동원돼서 학교 등지에서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등의 강연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으며⁹³⁾,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김○○은 “동생 김○○가 보도연맹 가입 후, 한 달에 1~2회 정도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했다.⁹⁴⁾ 이처럼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국민보도연맹원들은 경찰이 주관하는 강연회 등에 참석하거나 증언자로 강연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정기적으로 사상 전환을 위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사건 경위

가.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지역의 예비검속과 구금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국장: 장석운)⁹⁵⁾은 전국 도 경찰국에 치안국장 명의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이라는 비상통첩을 무선전보로 보냈다. 치안국은 추신을 통해 인원과 수용 관계를 고려하여 ‘각 지서에서는 요시찰인 중 특히 의식계급으로써 사찰대상이 된 자에 한하여 우선 구속하고 성명, 연령, 주소를 명기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치안국은 1950년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했다.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의 내용은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라는 것이었다. 7월 11일에는 치안국장 명의로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하도록 했다.⁹⁶⁾

또한, 이승만 정부는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당시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송요찬 헌병사령관이 7월 12일 정일권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했다.⁹⁷⁾

치안국의 지시는 경상북도 경찰국과 예천경찰서를 거쳐 각 지서로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직후 철도경찰이었던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윤○○은 예천지역의 예비검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중앙의 지시를 받은 예천경찰서에서 각 지서로 보도연맹원 연행을 지시하였고, 연행된 보도연맹원을 경찰서 내 유치장 또는 유도장에 구금시켰다. 2~3일 정도 구금 후 경찰서 후퇴 직전

9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김○○ 진술조서(2007. 10. 30.).

9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김○○ 진술조서(2008. 4. 30.).

95)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II, 1973, 39쪽.

96)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391~392쪽.

97)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632쪽.

몇 차례에 나누어 처리했는데, 예천읍 우계동, 개포면 경진나들, 용궁면 산택 등 세 곳으로 끌고 가 처리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윤○○ 진술녹취록(2008. 11. 11.)]⁹⁸⁾

당시 예천경찰서 경찰이었던 참고인 김○○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천경찰서가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했다. 김○○은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이 예천경찰서 유치장 또는 연무장에 구금되었으며, 경찰이 후퇴하기 전 예천에 주둔하던 ‘백골부대’ 1개 소대 병력에 의해 고평나들에서 희생되었다고 했다.⁹⁹⁾

『제4대국회보고서』(1960)에도 이 사건 당시 예천지역에서 예비검속된 사람의 상당수가 경찰(서)에 구금된 후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진실규명대상자 노○호(2다-1033)의 이름도 확인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대상자들은 대부분 예천경찰서에서 약 1~3일 정도 구금되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거주지 관할 지서를 거쳐 예천경찰서로 오기도 하였다. 또한 단순히 지서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서에서 구금되었다가 예천경찰서로 오기도 하였다.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가 예천경찰서에 구금되었던 동안에는 거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고 대부분 면회 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¹⁰⁰⁾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중순경 집과 학교 등에서 경찰에 연행되거나 지서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대부분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예비검속된 이후 가족들이 경찰서 및 지서에 방문할 엄두를 내지 못한 관계로 구금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진술 및 기록을 종합해보면 예천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치안국의 명령을 받은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각 면의 지서나 예천경찰서, 연무장 등에 구금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북 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지역의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소집 또는 연행)되어 칠곡·군위·선산(구미)·안동·영양경찰서와 관할 지서 등에 구금된 후 살해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북삼면 보손동 주민들이 칠곡경찰서로 연행·구금된 후 트럭에 실려 김천 방면으로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참고인 박○○의 진술,¹⁰¹⁾ 이른 아침 마당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사복 경찰 2명이 집으로 찾아와 뒤뜰에서 일하고 있던 아버지를 연행하는 걸 목격한 참고인 김○○의 진술¹⁰²⁾로도 확인되며,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9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결과보고」(조사3팀-882, 2008. 11. 24.), 1~3쪽; 참고인 윤○○ 진술녹취록(2008. 11. 11.).

9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결과보고」(조사3팀-882, 2008. 11. 24.), 15~17쪽;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8. 11. 13.).

100) 1기 진실화해위원회, 「대구·경북(Ⅰ-1) 국민보도연맹 사건 -예천·문경·상주·영주-」,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2010, 554쪽.

101)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4. 4.).

10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7. 11.).

확인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서가 각 지서에 예비검속자들의 연행 및 소집 통보를 하달했고, 경찰에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각 지서, 경찰서, 창고 등에 구금됐다.¹⁰³⁾

나. 희생 경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천경찰서에 의해 예비검속된 진실규명대상자들은 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등에 구금된 후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사이 예천군 예천읍 고평나들,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일명 벼락고개)에서 집단희생되었다.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칠곡·군위·선산(구미)·안동·영양경찰서와 관할 지서 등에 구금되어 있던 진실규명대상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에서 8월경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다. 이 사건 지역별 희생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예천군



경상북도 서북부에 있는 예천군의 행정구역은 2읍 10면이다.¹⁰⁴⁾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예천군 주민 59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주요 희생지는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개포면 경진리 경진나들(서울나들),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벼락고개) 등이다.¹⁰⁵⁾

(1) 진실규명대상자 박○봉(2다-300-2, 신청인 박○봉)

진실규명대상자 박○봉(朴○鳳, 1930년생, 학생)은 용궁면¹⁰⁶⁾ 월오리에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경 경찰에 연행되어 용궁면 산택리에서 희생되었다.

103) 참고인에 따르면 군위경찰서 보도연맹원 구금장소는 경찰서 유치장 외에도 강당, 창고 등 임시수용소가 있었고, 안동경찰서는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해서 경찰서 유치장, 무도관, 동부초등학교 교실에 구금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9. 4. 1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8. 11. 4.).

104) 예천군, 『예천군지』, 2005.

105) 1기 진실화해위원회 「대구·경북(Ⅰ-1) 국민보도연맹 사건-예천·문경·상주·영주」,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2010.

106) 용궁면은 현재 11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쪽은 개포면, 남쪽은 지보면, 풍양면과 문경군 영순면, 서쪽은 문경군 영순면과 같은 군 산양면, 북쪽은 문경군 산양면, 산북면과 인접하고 있다. 용궁면은 1914년 4월 1일 군면 통폐합에 따라 구읍면의 무동 등 15개 동리와 서면의 왕태동, 북상면의 풍정 등 4개 동리, 문경군 산동면의 연평 등 5개 동리와 같은 예천군인 화장면의 지내리 일부를 병합하여 지금의 용궁면이 되었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중권: 예천의 생활문화』, 2005. 6., 102쪽.

신청인 박○봉(1950년생,¹⁰⁷ 동생)의 전문 진술¹⁰⁸에 따르면, 박○봉은 용궁면 월오리 ‘다래이’에 거주하며 용궁고등공민학교¹⁰⁹를 다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무렵 여름에 지서에서 모임이 있다며 마을 청년들을 소집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 후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 박○봉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제로 연행해갔다. 가족들은 당시 경찰의 소집을 받고 나간 청년들은 모두 사살되었다고 들었고, 박○봉의 아버지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아가 박○봉의 시신을 수습하여 용궁면 요암리에 산소를 썼다. 가족들은 박○봉의 기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명절에 차례를 지낸다.

참고인 박○○(1936년생,¹¹⁰ 동생)의 목격 진술¹¹¹에 따르면, 박○봉은 용궁면 월오리에 살며 학교에 다녔다. 마을에는 안 씨와 양 씨가 많이 살았고 박 씨는 박○봉의 가족과 작은아버지 박○○¹¹²의 가족만 살았다. 박○봉의 가족은 문경에서 예천으로 이주하여 마을의 상황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인민군이 오기 전, 박○봉이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사망했다. 박○봉이 학교하여 소여물을 주려고 불을 지피다가 경찰들이 찾아와 연행되는 장면을 박○봉의 부모와 박○○이 목격했다. 박○봉이 귀가하지 않자, 이튿날 박○봉의 부모가 30km 거리의 예천경찰서까지 찾아갔지만 면회하지 못했다. 점심 무렵, 월오리에서 1~2km 정도 거리에서 기관총 소리가 들렸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산택리로 찾아갔다. 박○봉이 연행될 때 입었던 흰 바탕에 줄이 있는 츄리닝을 보고 시신을 찾아 얼굴을 확인하고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고 묘를 썼다. 참고인은 박○봉이 희생된 이유에 대하여 “좌익활동을 하며 박○봉을 가입시키려고 하던 사람이 경찰에 잡히면서 명단이 경찰에 넘어갔고, 가입하지 않았어도 명단에 있었던 이유로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안○○(1941년생¹¹³, 이웃)와 김○○(70대, 이웃)의 전문 진술¹¹⁴에 따르면, 박○○의 가족이 안○○의 집안에서 일했고, 순흥 안 씨 집성촌에서 유일한 박 씨였기 때문에 당시에 박○봉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는 “한 집에 두 명씩 죽은 세 집¹¹⁵ 중 한 집”이라고 진술하였다.

107) 실제로는 1949년생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박○봉 진술조서(2022. 7. 1.).

108) 신청인 박○봉은 진실규명대상자 박○봉의 희생 사실에 대해 아버지, 형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박○봉 진술조서(2022. 7. 1.).

109) 1948년에 용궁고등공민학교로 개교하여 1952년에 명칭이 변경된 현재의 용궁중학교이다. 용궁중학교 학교 연혁. <https://school.gyo6.net/yongmunms/hm/hist/selectHistList.do?mi=195385>.

110) 실제로는 1934년생이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 6. 22.).

111) 참고인 박○○은 부모님과 함께 박○봉의 연행, 시신, 장례식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 6. 22.).

112)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대상자 박○○(2다-300-1, 진실규명)이다. 참고인 박○○은 진실규명대상자 박○○의 연행 및 희생 사실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진실규명, 2024. 7. 9.);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 6. 22.).

113) 실제로는 1938년생이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7.).

114) 참고인 안○○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을 집안 어른들, 동네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참고인 김○○은 안○○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7.); 참고인 김○○ 면담보고(2024. 5. 17.).

115)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에서 한 집에 두 명이 죽은 사람은 박○○(2다-300-1, 진실규명)과 박○봉(2다-300-2), 안○○과 안○○(이상 2다-1041, 진실규명),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대상자 양○○과 양○○(이상 다-2912, 진실규명)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대구·경북(1-1) 국민보도연맹 사건 -예천·문경·상주·영주-」,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2010, 566쪽;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진실규명, 2024. 7. 9.).

제적등본에 박○봉이 ‘1950년 9월 8일 오후 5시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104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¹¹⁶⁾

『제4대국회보고서』(1960)에 박○봉에 대해 ‘[피살연월일] 1950년 6월 30일 [경찰관계]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 피살되었음(신고인 박○○, 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¹⁷⁾

『피해자현황조사』(2007)에 ‘박○봉, 월오리, 15세, 남성, 학생, 1950년 6월 30일 용궁면 산택리에서 총살, 가해자-경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¹⁸⁾

박○봉의 『용궁고등공민학교 학적부』에 ‘입학연월일’은 ‘1949년 9월’, ‘입학 후의 변동 및 사유’에 ‘1950년 7월 17일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¹⁹⁾

박○봉의 시신이 수습된 장소인 용궁면 산택리는 『경북 예천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과 『대구·경북(I-1) 국민보도연맹 사건 -예천·문경·상주·영주-』의 주요 희생 장소이며, 주요 희생일은 1950년 7월 16일이다. 「학적부」에 기록된 박○봉의 사망일자 1950년 7월 17일은 용궁면 산택리에서 희생 사건이 있었던 1950년 7월 16일에 근접하다. 따라서 박○봉의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박○봉이 박○봉의 희생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목격 참고인 박○○이 경찰이 박○봉을 연행하는 장면과 박○봉의 시신을 목격한 점, (3) 용궁면 산택리에서 박○봉의 시신이 수습된 점, (4) 『제4대국회보고서』에 박○봉의 희생이 신고된 점, (4) 『피해자현황조사』에 박○봉의 희생이 기록된 점, (5) 박○봉의 학적부에 사망일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박○봉(2다-300-2)은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경 경찰에 연행되어 용궁면 산택리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2) 진실규명대상자 이○천(2다-15696, 신청인 이○석)

진실규명대상자 이○천(李○千, 1926년생, 농업)은 용궁면 월오리에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 16일경 경찰에 연행되어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이○석(1952¹²⁰⁾, 아들)의 전문 진술¹²¹⁾에 따르면, 이○천은 한학을 공부한 선비로 농사를

116) 사망신고일은 단기 4284년(1951년) 3월 29일, 신고자는 호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주는 박○봉의 아버지 박○○이다. 신청인 박○봉은 ‘사망신고가 늦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박○봉 진술조서(2022. 7. 1.).

117)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114쪽.

118)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와 『피해자현황조사』에 기재된 날짜가 1950년 (음력) 6월 3일의 오기일 수 있다. 1950년 음력 6월 3일의 양력 날짜는 1950년 7월 17일이고 학적부에 기재된 사망일과 일치한다.

119) 용궁중학교, 「학적 기록 조회 결과」(용궁중학교-4317, 2023. 6. 19.).

120) 신청인 이○석과 참고인 이○○는 이○석이 실제로는 1950년생이고, 본래 이름은 ‘이○석’이라고 진술하였다. 출생 당시 아버지인 이○천의 아들 이○석(李○錫, 1950년생)으로 입적되었다가 이○천 사후(死後)에 대를 잇기 위해 큰아버지 이○○(李○○)의 양자로 입적하며 호적상 입양이 아닌 친자 출생으로 등록되었다(李○錫, 1951년생). 이후 큰아버지에게 아들(이○○, 1955년생)이 태어나자 파양하면서 먼저 등록된 이○석(1950년생, 1951년생)의 사망신고를 하고 ‘이○석(1952년생)’으로 입적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옛 족보(1961년 추정)에 이○천의 아들 이○석(1950년생), 이○○의 아들 이○○이 각각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이○석 진술조서(2023. 6. 5.);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 6. 24.).

121) 신청인 이○석은 진실규명대상자 이○천의 희생 사실에 대해 어머니, 재종숙부, 당고모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이○석 진술조서(2023. 6. 5.).

짓다가 당시 폐병으로 앓아누워 문 밖 출입을 하지 못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남로당은 스무 살 넘는 사람을 가입시켰고, 이○천도 위협을 받아 가입되었으나 병세가 깊어 실제 활동은 없었다. 1950년 음력 4월 1일(양력 5월 17일) 이○천의 아내가 이○석을 출산하고 50일 정도 지난 음력 5월 말(양력 7월 중순), 이○천은 집으로 온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용궁지서에 구금되었다. 사촌누이¹²²⁾가 4km 거리를 걸어서 용궁지서까지 밥을 가져다주었다. 그 후 약 일주일 후 용궁면 산택리에서 총살되어 작은할아버지 내외와 재종숙부 이○○가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문중산에 산소를 썼다. 가족들은 음력 6월 1일(양력 7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다가 현재는 기독교식으로 추도식을 지낸다.

참고인 이○○(1932년생,¹²³⁾ 육촌동생)의 목격 진술¹²⁴⁾에 따르면, 당시 남로당원들은 몇 살 이상인 사람을 가입시켰고, 남로당을 비판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였다. 이○는 4, 5일 간격으로 와병 중인 이○천의 집에 문병을 다녔고, 이○천이 활동을 못 하는데 도장을 찍으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어 남로당에 가입되었다고 들었다. 인민군이 38선을 넘어왔다는 소문이 나고부터 경찰이 남로당,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명단에 따라 강제 연행하여 감금하였다.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며칠째 듣던 중 이○천도 병석에 누워있다가 끌려갔다고 들었다. 하룻길에 고개를 숙인 사람을 뺨뺨하게 태운 트럭 대여섯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가 집으로와 어른들에게 본 내용을 전하는데 총소리가 연달아 났고, 어른들은 총살하는 소리이고 방향은 산택 쪽이라며 들것을 준비하여 이○○와 함께 현장으로 갔다. 산택 골짜기에 열씩 묶여 있던 죽은 사람들 틈에 얼굴을 확인하여 이○천의 시신을 수습하고 해질녘에 앞산에 매장한 후, 해가 저서야 귀가하였다.¹²⁵⁾

참고인 안○○(1940년생,¹²⁶⁾ 이웃)의 전문 진술¹²⁷⁾에 따르면, 월오리는 순흥 안 씨 집성촌이었고, 반상(班常)을 구분하던 증조부 안○○¹²⁸⁾이 신분을 이유로 손 모 씨를 홀대한 일이 있었다. 순흥 안 씨는 독립운동에 관련되어 일본 순사에게 찍혀 있었는데, 나중에 손 씨의 큰아들이 경찰이 되면서 안 씨 집안은 고초를 겪었다. 이후 경찰이 똑똑한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잡아갈 때, 안○○과 독립운동을 했던 이○○¹²⁹⁾의 종손(從孫)인 이○천도 사상범으로 잡아갔다. 안○○는 “이○천이 특별한

122) 신청인 이○석은 이○천이 구금된 기간에 용궁지서로 밥을 날라준 사람이 작은할아버지 이○○의 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은 「양민피살자신고서」의 신고인이고, 관계는 ‘숙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 이○석 진술조서(2023. 6. 5.);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75쪽.

123) 실제로는 1930년생이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 6. 24.).

124) 참고인 이○○는 진실규명대상자 이○천의 시신 수습부터 매장까지의 과정을 동행하여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 6. 24.).

125) 진실화해위원회, 「2다-15696호 참고인 진술 영상, 족보 입수 보고」(조사3과-2023. 6. 7.).

126) 실제로는 1939년생이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3. 6. 24.).

127) 참고인 안○○는 다른 사건(2마-17725, 진실규명대상자 안○○; 2마-17728, 진실규명대상자 안○○)의 신청인이다. 안○○는 진실규명대상자 이○천의 희생 사실에 대해 할머니,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안○○ 진술조서(2023. 6. 24.).

128) 안○○(1847-1909)은 1907년부터 이강년부대의 좌종사(坐從事)가 되어 의병활동을 하였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정보(관리번호: 11174).

129) 이○○(1956-1940)은 1907년부터 이강년부대의 좌종사부(坐從事部)에 소속되어 의병활동을 하였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정보(관리번호: 9084).

일을 한 게 없는데 경찰에 붙잡혀 가서 죽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적등본에 이○천이 ‘1958년 7월 5일 오전 7시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62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¹³⁰⁾

족보에 이○천이 1950년 음력 6월 1일(양력 7월 15일)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¹³¹⁾

『제4대국회보고서』(1960)에 이○천에 대해 ‘[피살연월일] 1950년 6월 2일 [경찰관계] 보도연맹에 가입한 자로서 경찰에 연행 원당계곡에서 총살(신고인 이○○, 숙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³²⁾

○○○○○에서 열람한 『6·25 처형자 명단』(1978)에 이○천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본적, 생년월일 및 연고자 성명 등이 일치해서 진실규명대상자 이○천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¹³³⁾

『피해자현황조사』(2007)에 “이○천, 월오리, 23세, 남성, 농업, 1950년 6월 2일 용궁면 산택리에서 총살, 가해자-경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석의 『산양국민학교 학적부』에 ‘입학연월일’은 ‘1959년 4월 7일’, ‘가정환경’에 ‘부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³⁴⁾

제삿날과 족보, 『제4대국회보고서』, 『6·25 처형자 명단』, 『피해자현황조사』 등을 근거로 할 때, 이○천의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 16일(음력 6월 2일)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이○석이 이○천의 희생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이○천의 희생 경위에 대한 목격참고인 이○○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 점, (3) 이○천의 시신이 용궁면 산택리에서 수습된 점, (4) 족보에서 확인되는 이○천의 사망일자와 제삿날이 음력 6월 1일이며, 이 사건의 발생시기에 해당하는 점, (5) 『제4대국회보고서』에 이○천의 희생이 신고된 점, (6) 『피해자현황조사』에 이○천의 희생이 기록된 점, (7) 『제4대국회보고서』에 기재된 이○천의 사망일과 희생경위가 이 지역의 1기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일 및 희생 경위와 일치하는 점, (8) 『6·25 처형자 명단』에 이○천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9) 이○천의 아들 이○석의 학적부에 이○천이 사망했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이○천(2다-15696)은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 16일경 경찰에 연행되어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130) 사망신고일은 서기 1961년 3월 15일, 신고자는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은 진실규명대상자 이○천의 형수이다. 신청인 이○석은 ‘큰어머니가 큰아버지 사망신고 후에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한 것 같고, 남자들이 없으니 일처리를 하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이○석 진술조서(2023. 6. 5.).

131) 병인(丙寅) 정월(正月) 15일 생(生), 경인(庚寅) 6월 1일 졸(卒), 묘(墓) 나산(蘿山) 전산(前山) 진좌(辰坐). 『성주이씨연경당파보(星州李氏燕敬堂派譜)』, (1961년 추정); 『성주이씨대동보』 3권, 2011.

132) 해당 일자를 양력으로 변환하면 7월 16일이다.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75쪽.

133) 진실화해위원회는 『6·25 처형자 명단』을 열람 및 확인하였다.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095, 3347)」(기법-3940, 2024. 8. 20.);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730 등)」(기법-4471, 2024. 9. 13.).

134) 신청인 이○석의 초등학교 학적부에 기재된 이름은 이○석이다. 신청인 이○석은 호적상 큰아버지 이○○의 아들 이○석(1951년 생)으로 되어있을 당시에 입학했다고 진술하였고, 학적부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산양초등학교, 「학적 기록 조회 의뢰(이○석) 회신」(산양초등학교-7681, 2023. 9. 8.); 신청인 이○석 진술조서(2023. 6. 5.).

(3) 진실규명대상자 노○호(2다-1033, 신청인 노○완)

진실규명대상자 노○호(盧○鎬, 1917년생, 농업)는 유천면¹³⁵⁾ 중평리에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 16일 경찰에 연행되어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노○완(1965년생, 손자¹³⁶⁾)의 전문 진술¹³⁷⁾에 따르면, 노○호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지었다. 노○완은 노○호가 안동형무소에 다녀온 적이 있고, 보도연맹의 ‘책임자 비슷한 분 중 한 분’이었다고 들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중평리 일대에서 여러 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노○호를 연행한 사람은 서로 아는 경찰이었고, 중간에 도망갈 기회를 주느라 화장실을 가라며 풀어주었는데 노○호는 도망가지 않았다. 가족들은 산택에서 노○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등산에 산소를 썼고, 음력 6월 1일(양력 7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노○호의 아들 노○○은 공직에 종사하는 동안 어딘가에 자주 불러 다녔고, 노○완도 군생활 중 보안대에 불려가서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 노○완은 성장기 동안 아버지에게 “어디 나서지 말라, 공직에 가지 말라, 고시는 보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다.

참고인 윤○○(1935년생, 이웃)의 목격 진술¹³⁸⁾에 따르면, 뒷집에 살던 노○호가 우익과 경찰에 의해 포승줄로 손목이 묶인 채 연행되었다. 이후 노○호의 가족들이 산택에서 시신을 모셔 와서 장례를 지냈다.

참고인 김○○(1944년생, 며느리)의 전문 진술¹³⁹⁾에 따르면, 김○○는 결혼 전에 아버지로부터 “노○○ 씨네 아들(노○병호)이 똑똑하고 괜찮았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들었다. 노○호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공민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도 하고, 면 일도 보았다고 들었다. 노○호는 집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경찰은 노○호를 양조장(윤○○의 집) 마당에 끌어앉혔다가 데려갔다. 노○호의 육촌 노○○이 산택 못에서 총살된 노○호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고 선산에 모셨다. 김○○는 노○호의 제삿날마다 ‘친구를 잘못 만나 도장을 찍어주어 무엇에 가입되어 죽었다.’라고 시어머니에게 들었다. 가족들은 대소사 때마다 가장의 빈자리를 느꼈지만, 내놓고 그리워하지도 못했다. 노○호의 아들은 공직에 종사하는 동안 어딘가 한 번씩 불러갔다 오면 괴로워하며 울었고, 자녀들을 조심시켰다.

135) 유천면은 버드내가 있다고 하여 유등천면(柳等川面)이라 불리기도 하며, 현재 20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용문면과 예천읍 등과 인접하고 북서쪽은 개포면과 문경시 등과 맞닿아 있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중권: 예천의 생활문화』, 2005, 90~91쪽.

136) 신청인 노○○(盧○○) 사망으로 아들 노○완이 신청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지위승계 처리(2다-1033호)」(조사3과-1222, 2023. 6. 27.).

137) 신청인 노○완은 진실규명대상자 노○호의 희생 사실에 대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노○완 진술조서(2023. 7. 10.).

138) 참고인 윤○○은 진실규명대상자 노○호가 우익과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윤○○ 진술조서(2023. 8. 14.).

139) 참고인 김○○은 진실규명대상자 노○호의 희생 사실에 대하여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이웃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노○호의 연행에 대해서는 목격자인 윤○○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8. 14.).

참고인 박○○(1942년생,¹⁴⁰ 이웃)의 전문 진술¹⁴¹)에 따르면, 노○○의 아버지 노○호는 보도연맹에 관련되어 사망했다. 노○○이 공직에 종사하였고, 피해를 염려하여 아버지 노○호의 희생에 대해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적등본에 노○호가 ‘1952년 12월 10일 오전 2시 예천군 유천면 중평동 95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¹⁴²

족보에 노○호가 1950년 음력 6월 2일(양력 7월 16일)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¹⁴³

『형사사건부』에 따르면, 노○호는 1949년 2월 11일 ‘포고 제2호, 법령 1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다.¹⁴⁴

『제4대국회보고서』(1960)에 노○호에 대해 ‘[피살연월일] 1950년 7월 13일 [경찰관계] 보도연맹으로서 6·25사변 당시 경찰에 구금 피살되었음(신고인 노○○, 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⁴⁵

○○○○○에서 열람한 『6·25 처형자 명단』(1978)에 노○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본적, 생년월일 및 연고자 성명 등이 일치해서 진실규명대상자 노○호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¹⁴⁶

『피해자현황조사』(2007)에 “노○호, 중평리, 34세, 남성, 농업, 1950년 7월 16일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에서 총살, 가해자-경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노○호의 아들 노○○의 『유천초등학교 학적부』에 ‘입학연월일’은 ‘1948년 9월 1일’, ‘보호자’는 ‘노○호, 농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¹⁴⁷ 『대창중학교 학적부』에 ‘입학연월일’은 ‘1954년 3월 13일’, ‘보호자’는 ‘노○○, 형’으로¹⁴⁸ 기재되어 있다.

제삿날과 족보, 『6·25 처형자 명단』, 『피해자현황조사』 등을 근거로 할 때, 노○호의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 16일(음력 6월 2일)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노○완이 노○호의 희생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노○호의 희생 경위에 대한 목격참고인 등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되고, 신청인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3) 노○호의 시신이 용궁면 산택리에서 수습된 점, (4) 족보에서 확인되는 노○호의 사망일자와 그에 따른 제삿날이 이 사건의 발생시기에 해당하는 점, (5) 『제4대국회보고서』에 노○

140) 실제로는 1941년생이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7. 6.).

141) 참고인 박○○는 진실규명대상자 노○호의 희생 사실에 대해 이웃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7. 6.).

142) 사망신고일은 단기 1952년 12월 14일, 신고자는 노○○라고 기재되어 있다. 노○○는 진실규명대상자 노○호의 아버지이다. 신청인 노○완은 사망신고 경위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노○완 진술조서(2023. 7. 10.).

143) 정사(丁巳) 3월 12일 생(生), 경인(庚寅) 6월 2일 졸(卒), 묘(墓) 장등(長嶺) 술좌(戌坐). 『광주광산노씨대동보』, (2003).

144) 진실규명대상자 노○호는 죄명과 처분 날짜, 처분 내용 등이 확인되나, 판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법검찰청 안동지청 사무과, 『형사사건부』(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D0093832), 1949.

145)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121쪽.

146) 진실화해위원회는 『6·25 처형자 명단』을 열람 및 확인하였다.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095, 3347)」(기법-3940, 2024. 8. 20.);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730 등)」(기법-4471, 2024. 9. 13.).

147) 노○○의 학적부(유천초등학교-제2021-049호, 2023. 8. 4.).

148) 노○○의 학적부(대창중학교-2023-16, 2023. 8. 3.).

호의 희생이 신고된 점, (6) 『피해자현황조사』에 노○호의 희생이 기록된 점, (7) 한국전쟁 전 ‘포고 제2호, 법령 제19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8) 『6·25 처형자 명단』에 노○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9) 노○호의 아들 노○○의 학적부에 보호자가 형으로 기재되어 노○호의 사망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노○호(2다-1033)는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 16일경 경찰에 연행되어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4) 진실규명대상자 박○식(2다-16708, 신청인 박○완)

진실규명대상자 박○식(朴○植, 1915년생, 농업)은 용문면¹⁴⁹⁾ 상금곡동에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 13일 경찰에 연행되어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박○완(1969년생, 손자¹⁵⁰⁾)의 전문 진술¹⁵¹⁾에 따르면, 박○식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회계직으로 취직하여 돈을 많이 벌고 귀향한 후 상금곡동에 거주하며 면사무소에 다녔다.¹⁵²⁾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예천에 들어오기 전, 박○식은 집에서 경찰 두 명에 의해 연행되어 예천경찰서에 구금되었다. 3일 후, 경찰서에 갇힌 사람들은 트럭으로 고평나들까지 이동한 후 총살되었다. 고평나들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박○식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시켜 시신을 수습하였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산소를 썼다. 매장 깊이를 통상보다 두 배 깊게 파고,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리지 않기 위해 비석은 세우지 않았다. 박○완은 박○식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합장묘를 만들기 위해 박○식의 산소를 개묘하였을 때 유골을 보았다.¹⁵³⁾ 박○식의 아들 박○○은 연좌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서류상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한다면 박○식의 사망일시와 사망장소를 달리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다. 가족들은 개종하기 전까지 음력 5월 28일(양력 7월 13일)에 박○식의 제사를 지냈다.

참고인 박○○(1938년생, 조카)의 목격·전문 진술¹⁵⁴⁾에 따르면, 박○식의 아버지는 선비이자 한문 선생이었고 박○식도 한학 공부를 하고 명필이었다. 박○식은 박○○의 아버지¹⁵⁵⁾와 일본에 노무자로 다녀와 번 돈으로 농지를 샀고, 관공서에 불러 다니면서 글씨를 써주고, 파출소에서 필요할

149) 용문면은 인근에 있는 천년고찰 용문사의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이고, 현재 18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은 하리면과 예천읍, 남쪽은 예천읍과 유천면, 서쪽은 유천면과 문경군 동로면, 북쪽은 상리면과 하리면에 맞닿아 있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중권: 예천의 생활문화』, 2005, 21쪽.

150) 진실규명대상자 박○식의 아들 박○○이 사망하여 손자 박○완이 신청하였다. 신청인 박○완 진술조서(2023. 6. 5.).

151) 신청인 박○완은 진실규명대상자 박○식의 희생 사실에 대해 할머니, 아버지, 오촌당숙 박○○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박○완 진술조서(2023. 6. 5.).

152) 용문면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자료가 없어 박○식이 근무한 사실은 파악할 수 없고, 1948년 이후 자료에서 재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용문면, 「조사 협조 의뢰(재직 기록 요청) 회신」(용문면-6024, 2023. 6. 15.).

153) 박○식의 묘(墓) 위치가 구(舊) 족보에는 ‘동점산(東占山) 증조(曾祖) 우측(右側) 계좌(癸坐)’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년에 발간된 족보에는 ‘오미봉(五味峯) 후우편(後右便) 논골 간좌(艮坐)’라고 기재되어 이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함양박씨세보』 5, (생산연도 미상); 『함양박씨치암공파세보』 권지이(卷之二), 2005.

154) 참고인 박○○은 진실규명대상자 박○식의 시신과 장례식을 목격하였고, 다른 내용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6. 21.).

155) 박○○의 아버지는 박○식의 형인 박○○이다.

때 부르면 일을 봐주고 오는 등으로 잘 지냈다. 전쟁이 나고 용문지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박○식을 연행하는 모습을 박○식의 아내가 목격하였다. 연행된 지 3일 만에 고평나들로 가서 총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박○○의 아버지가 친구를 데리고 현장에 가서 며칠이 걸려 시신을 찾아 수습했다. 어른들이 마지막이니 얼굴을 보라고 하여 박○○은 박○식의 시신을 목격하였고, 파출소에서 알지 못하도록 오후에 몰래 장례를 치르고 안장하는 것 또한 목격했다. 전쟁이 나자 이남이 이북에 넘어 갈까 봐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을 죽인 것이라고 들었다.

참고인 박○○(1942년생, 친척)의 전문 진술¹⁵⁶⁾에 따르면, 박○식은 상금곡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보도연맹원을 집단 학살할 때 고평나들에서 죽었고, 시신이 수습되었다.

제적등본에 박○식이 ‘1961년 10월 15일 오전 6시 정선군 신동면 조동리 336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¹⁵⁷⁾

죽보에 박○식이 1950년 음력 5월 28일(양력 7월 13일)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¹⁵⁸⁾

『수용자 신분장』에 따르면, 박○식은 1947년 8월 30일에 ‘판결죄명’ ‘포고 제2호, 법령 제1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1947년 9월 7일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48년 10월 29일에 ‘우량수형자석방령¹⁵⁹⁾에 의하여 석방’되었다.¹⁶⁰⁾

박○식의 아들 박○○의 『용문초등학교 학적부』에 ‘입학연월일’은 ‘단기 1945년 4월 1일’, ‘졸업연월일’은 ‘1951년 7월 25일’, ‘보호자’는 ‘박○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후면의 ‘가정환경’에 ‘부 별세’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⁶¹⁾

제삿날과 죽보를 근거로 할 때, 박○식의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 13일(음력 5월 28일)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박○완이 박○식의 희생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박○식의 희생 경위에 대한 목격참고인 박○○ 등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되고, 신청인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3) 박○식의 시신이 고평나들에서 수습된 점, (4) 죽보에서 확인되는 박○식의 사망일자와 그에 따른 제삿날이 이 사건의 발생시기에 해당하는 점, (5) 한국전쟁 전 ‘포고 제2호, 법령 제19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6) 박○식의

156) 참고인 박○○는 진실규명대상자 박○식의 희생 사실에 대해 집안사람, 이웃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7. 6.).

157) 사망신고일은 단기 4294년 10월 30일, 신고자는 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호적은 호주가 박○식, 사망장소인 강원도 정선군이 본적지로 등록되어 있다. 신청인 박○완과 참고인 박○○은 진실규명대상자 박○식은 예천과 일본에서 살았고, 강원도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강원도에 거주한 사람은 박○○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박○완 진술조서(2023. 6. 5.);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6. 21.).

158) 자(字) 낙경(樂京), 생(生) 을묘(乙卯) 정월(正月) 28일, 졸(卒) 경인(庚寅) 5월 28일, 묘(墓) 동점산(東占山) 증조(曾祖) 우측(右側) 계좌(癸坐). 『함양박씨세보』 5, (생산연도 미상).

159) 「우량한수형자석방령」(군정법률 제172호, 1948. 3. 11., 제정).

160) 진실규명대상자 박○식은 죄명 및 처분 날짜, 처분 내용 등이 확인되나, 판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무부 대구교도소 서무과, 『수용자신분장』(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D0569216), 1948.

161) 용문초등학교, 「학적기록 조회 자료 제출」(용문초등학교-7334, 2024. 8. 1.).

아들 박○○의 학적부에 박○식이 사망했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박○식(2다-16708)은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 13일경 용문지서 소속 경찰에 연행되어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2) 칠곡군



경상북도 남서부, 낙동강 중류에 있는 칠곡군의 행정구역은 3읍 5면으로, 팔공산과 가산을 잇는 유학산 지맥이 대구 북편 관문에 협곡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전쟁 시기 칠곡군은 낙동강 방어작전 최후의 보루로 왜관~다부동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¹⁶²⁾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칠곡군에 거주하던 주민 38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주요 희생지는 지천면 신동재, 아양동(아시동), 유학산 팻재고개, 금릉군 등이다.¹⁶³⁾

(1) 진실규명대상자 권○택(2다-2090-21, 신청인 권○광)

진실규명대상자 권○택(權○澤¹⁶⁴⁾, 1926년생, 농업)은 석적읍 도개리(舊 석적면 도개동, 용소)¹⁶⁵⁾에서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경 경찰에 의해 연행·구금되었다가 가산면 모래재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권○광(1948년생, 아들)의 전문 진술¹⁶⁶⁾에 따르면, 1949년경 마을 이장이 청년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테니 보도연맹원 명부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해서 아버지 권○택도 도장을 찍어줬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음력 6월 초순 무렵 칠곡경찰서 경찰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보도연맹 가입자를 조사한다면서 권○택 등 마을 청년 10여 명을 연행했다. 권○택은 연행 후 일주일 정도 칠곡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가산면 모래재로 끌려가서 총살됐다. 시신은 수습해서 희생지에 묻었고, 제사는 사망 일자를 알지 못해 음력 9월 9일에 지내고 있다.¹⁶⁷⁾

162) 『칠곡군지』, 2016.

163) 30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4』, 2010.), 1명(「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4』, 2010.); 7명(「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4』, 2010.).

164) 참고인에 따르면 집에서는 '○이'라고 불렸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9. 11.).

165) 참고인에 따르면 마을은 안동권씨·영일정씨 집성촌으로 당시 80가구 정도 살았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9. 11.).

166) 신청인은 할머니 손○○과 마을 주민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신청인 권○광 진술조서(2021. 10. 27.).

167) 신청인 권○광 진술조서(2021. 10. 27.); 신청인 권○광 통화보고서(2024. 9. 22.).

참고인 권○○(1936년생¹⁶⁸), 권○택의 9촌)의 목격·전문 진술¹⁶⁹)에 따르면, 권○택은 당시 농사를 지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 좌익활동을 할 겨를도 없었다. 마을은 두메산골로 교통이 좋지 않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없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구로 피난 가기 전¹⁷⁰) 왜관경찰서(칠곡경찰서) 형사 2명이 마을로 들어와 주민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 조사한다고 권○택 등을 연행했는데, 권○택 외 다른 주민들은 풀려났다. 사나흘 후 왜관경찰서(칠곡경찰서)에서 마을 동장 정○○에게 시신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와서, 동장을 통해 권○택이 가산면 금화동 모래재에서 사살됐음을 알게 됐다. 당시 왜관경찰서(칠곡경찰서) 배형사¹⁷¹)가 주동이 돼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권○○은 “집안 어른들과 형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한티재로 갈 때 저도 따라갔습니다. 한티재는 모래재라고도 부르는데, 가는 도중 금화지라는 저수지가 있고, 거기서 700~800m 정도 올라가면 한티재가 나옵니다. 한티재에 도착하니 9개의 구덩이에 흙으로 대충 덮어놓은 9구의 시체가 각각 놓여 있었고, 구덩이 위에는 죽은 사람 이름이 쓰인 쪽말이 있었는데, 왜관경찰서에서 시신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표식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집안 어른들은 권○택의 시신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봉분만 해서 바로 매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¹⁷²⁾

참고인 권○○(1941년생¹⁷³), 권○택의 동생)의 전문 진술¹⁷⁴)에 따르면, 둘째 오빠 권○택은 농사를 지었는데 밥만 겨우 먹고 살 정도였다. 한국전쟁 이전 석적지서 경찰 2명이 집으로 찾아와 조사할 것이 있다며 권○택을 석적지서로 연행한 후 며칠간 구금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권○택은 가산으로 끌려가서 군경에게 총살됐다. 권○○은 “사건 당일 제가 밖으로 놀러 나갔다 돌아오니 둘째 오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어머니는 울면서 둘째 오빠 얘기를 해줬는데, 이전에 마을 구장이 도장을 받으러 와서 오빠가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는데 그 일로 연행됐다고 합니다. 오빠가 총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이 가산으로 가서 오빠 시신을 급히 그 자리에 묻고 봉분으로 무덤 표식만 해 놓고, 난리 통에 하양으로 피난 갔다 가을경 마을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했다.¹⁷⁵⁾

이 사건 당시 칠곡군에 거주하던 참고인 이○○(1932년생, 왜관을 석전리 주민)과 이○○(1936년생, 이웃), 권○○(1931년생, 석적면 망정2리 주민)는 ‘권○택은 보도연맹 가입자로 한국전쟁 발발 후

168) 참고인은 실제 나이는 1935년생으로 당시 15세였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9. 11.).

169) 참고인은 시신 수습과정을 목격했고, 마을 동장 정○○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9. 11.).

170) 참고인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권○○의 큰누나가 만삭이라 피난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군이 총을 들이대면서 쫓아내서 권○○의 가족은 대구로 피난 갔다가 1950년 10월경 마을로 돌아왔는데, 대구로 피난 가기 전 권○택이 희생됐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9. 11.).

171) 참고인에 따르면 당시 왜관 읍내에 살던 배형사는 30~40대 외모에 입술이 두껍고 보통 키에 뚱뚱한 편이었고 유도를 잘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권○○이 왜관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배형사가 경찰서 체육관에서 경찰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있다. 학교에서 단체 견학 간 적도 있다. 배형사는 경찰로 정년퇴직해서 현재 사망한 걸로 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9. 11.).

172)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9. 11.).

173) 참고인은 실제로는 1939년생으로, 갓난아기 때 몸이 너무 약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고 한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4. 21.).

174) 참고인은 어머니 손○○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4. 21.).

175)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4. 21.).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산면 모래재(한듬재)에서 총살됐다'라는 요지의 「인증서」를 제출했다.¹⁷⁶⁾

제적등본에는 권○택이 1949년 6월 10일 칠곡군 석적면 도개동 285번지에서 사망(1953년 4월 15일 사망신고, 신고자 호주 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¹⁷⁷⁾ 족보에는 권○택이 경인(1950년) 5월 12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¹⁷⁸⁾

○○○○○에서 열람한 『6·25 처형자 명단』(1978)에 권○택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본적과 연고자 성명 등이 일치해서¹⁷⁹⁾ 진실규명대상자 권○택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¹⁸⁰⁾

『1948년 형사사건부』에 따르면, 권○택이 「포고령제2호, 법령제1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1948년 11월 10일 구류되었으나, 1948년 11월 □0일 석방됐다고 기재되어 있다.¹⁸¹⁾

신청인과 다수의 참고인이 희생 시기를 1950년 음력 6월경 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로 진술하고 있으며, 족보상 사망 시기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점으로 보아 권○택의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권○광이 권○택의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2) 희생지에서 권○택의 시신을 목격한 참고인 권○○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3)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청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4) 권○택의 족보상 사망일이 이 사건의 발생 시기와 유사한 점, (5) 『6·25 처형자 명단』에 권○택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6) 형사사건부를 통해 권○택이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거나, 이를 이유로 연행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권○택(2다-2090-21)은 경북 칠곡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경 경찰에 의해 연행·구금되었다가 가산면 모래재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176) 참고인 이○○ 인증서(등부 2012년 제2829호, 2012. 7. 5.); 참고인 이○○ 인증서(등부 2012년 제2831호, 2012. 7. 5.); 참고인 권○○ 인증서(등부 2012년 제2832호, 2012. 7. 5.).

177) 신청인은 제적등본 상 권○택의 사망일이 희생 시기와 다른 이유를 양부(삼촌) 권○○에게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당시 시대 상황이 부친을 사변 때 사망한 걸로 신고하면 가족도 밭○이라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신고한 듯하다고 진술했다. 족보상 사망일이 1950년 5월 12일(음력 추정, 양력 6월 27일)이고, 『6·25 처형자 명단』에 권○택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제적등본 상 사망일은 오기로 판단된다. 권○택의 본적지는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 585번지다. 신청인 권○광 통화보고서(2024. 9. 22.); 제적등본 발행번호 2113-2102-4396-0791(2024. 9. 9.).

178) 음력 5월 11일은 양력으로는 1950년 6월 27일이다. 『안동권씨세보』, 1978.

179) 『6·25 처형자 명단』에 권○택의 생년월일이 1926년 7월 14일(호적 1926년 8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본적(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계리)과 연고자의 성명·관계(권○○, 형)가 동일해서 생년월일은 오기로 보인다.

180) 진실화해위원회는 『6·25 처형자 명단』을 열람 및 확인했다.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095, 3347)」(기법-3940, 2024. 8. 20.);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730 등)」(기법-4471, 2024. 9. 13.).

181) 『1948년 형사사건부』에 기재된 권○택의 인적 사항 중 '주소(대구부 봉산동 171번지)'와 '직업(마차부)'이 일치하지 않지만, '성명(권○택, 權○澤)'과 '나이(23세)'가 일치하고, 제적등본 상 권○택의 친아들 권○광의 출생장소가 '대판부 봉산동 150번지(대구부 봉산동의 오기로 추정됨)'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권○택은 1948년경 본적지가 아닌 대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 『1948년 형사사건부』, 관리번호 BD0091498, 1948.

(2) 진실규명대상자 조○용(2다-4728, 신청인 조○환)

진실규명대상자 조○용(曹○龍, 1920년생, 미상)은 대구¹⁸²⁾에서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경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가창면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조○환(1943년생, 아들)의 전문 진술¹⁸³⁾에 따르면, 아버지 조○용은 본가인 칠곡군 석적면 남울동에 거주할 때 보도연맹에 가입했고 잦은 경찰 호출을 받았다. 고모부¹⁸⁴⁾도 조○용의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경찰에게 많은 고초를 겪었다. 사건 이전 조○용은 대구로 이사했는데 뚜렷한 직업은 없었던 듯하고 집을 자주 비웠다. 1950년 여름경 조○용과 삼촌 조○○¹⁸⁵⁾은 대구에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실종됐는데 거창(혹은 가창)으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있었다. 조○용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어머니 조○○ 생전에는 조○용이 연행된 여름경 지내오다가 현재는 종교 문제로 지내지 않고 있다.¹⁸⁶⁾

참고인 조○○(1940년생, 조카)의 전문 진술¹⁸⁷⁾에 따르면, 작은아버지 조○용은 고향인 칠곡군 석적면 남울동에서 좌익활동을 하다 전향하면서 보도연맹에 가입했는데, 뚜렷한 직업이 없어 생계를 위해 1948년에서 1949년경 정식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보조로 대구경찰서 본서에서 근무했다.¹⁸⁸⁾ 조○용은 좌익단체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아 일종의 정보원 역할을 했고 당시 조형사라고 하면 사상범 잡는 형사로 유명했다고 한다. 사건 이전 조○용은 무슨 이유에선지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집에 있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전라도 경찰에게 연행된 후 실종됐는데, 옆집에 살던 작은아버지 조○○도 그때 연행됐다. 이를 목격한 작은어머니가 조○○(조○용의 큰형)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보도연맹으로 끌려간 이들이 가창 또는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학살됐다는 소문을 들었다.

조○○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구 서구 비산동에 살던 고모부(성명 미상)가 칠곡군 석적면 포남2동으로 피난을 가다가 팔달교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에게 신원조사를 받았는데, 고모부가 소지하고 있던 보도연맹원증이 발견되자 고모부를 연행했다고 합니다. 조사받던 고모부가 처남들도 보도연맹원이라고 얘기해서 작은아버지 조○용과 조○○이 연행됐고 고모부도 당시 실종됐다고 들

182) 신청인에 따르면 사건 당시 조○용은 대구시 비산1동 원고개 근처에서 셋방살이를 했는데, 집 앞에 철길과 주막,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고, 집에서 조금 내려가면 들마을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초본 요청 결과 ‘자료 없음’으로 회신받았다. 조○용의 본적지는 칠곡군 석적면 남울리 122번지이다. 신청인 조○환 진술조서(2022. 3. 31.); 대구광역시 평리1동-718호(2024. 1. 25.).

183) 신청인은 어머니 조○○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신청인 조○환 진술조서(2022. 3. 31.).

184) 신청인에 따르면 고모부는 셋째 이모(막내 이모) 조○○의 남편으로 성은 이씨라고 들었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조○환 통화보고서(2024. 9. 23.).

185) 조○○(曹○○)은 조○용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 1925년생이다.

186) 신청인 조○환 진술조서(2022. 3. 31.); 신청인 조○환 통화보고서(2024. 9. 23.).

187) 참고인은 아버지 조○○와 집안 어른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조○○(曹○○)은 조○용의 맏형으로, 1906년생이다. 참고인 조○○ 진술조서(2023. 4. 21.).

188) 경찰 인사기록 요청 결과 ‘해당 기록 없음’으로 회신받았다. 대구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22005(2024. 9. 10.); 대구 남부경찰서 경무과-344호(2024. 1. 16.); 대구수성경찰서 경무과-462호(2024. 1. 15.); 대구강북경찰서 경무과-401호(2024. 1. 17.); 대구달성경찰서 경무과-344호(2024. 1. 17.); 대구달서경찰서 경무과-535호(2024. 1. 22.); 대구동부경찰서 경무과-546호(2024. 1. 22.); 대구서부경찰서 경무과-381호(2024. 1. 18.).

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¹⁸⁹⁾

제적등본에는 조○용이 1950년 7월 15일 본적지(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122)에서 사망(1967년 7월 2일 조○○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¹⁹⁰⁾

○○○○○에서 열람한 『6·25 처형자 명단』(1978)에 조○용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본적, 생년월일 및 연고자 성명 등이 일치해서 진실규명대상자 조○용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¹⁹¹⁾

『제4대국회보고서』(1960)에는 조○용의 아내와 조○용의 형이 각각 대구와 칠곡에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용의 아내가 신고한 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조○용에 대해 ‘[성명] 조○니 [생년월일] 1918년 1월 20일 [본적]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동 [주소] 경북 대구시 평리동 1구 18반 746번지 [피살연월일] 미기재 [피살장소] 미기재 [군관계] 보도연맹 가입 혐의로 헌병대에 연행되어 갔음. 1950년 7월 7일 가출(신고인 조○○, 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⁹²⁾ 조○용의 형이 신고한 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조○용에 대해 ‘[피살연월일] 판독불능 [피살장소] 판독불능 [경찰관계] 판독불능(신고인 조○○, 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용의 아들 조○환이 졸업한 『대구인지초등학교 생활기록부¹⁹³⁾』에는 1955년 4월 7일 입학 당시 보호자는 ‘조○○(모)’으로, 가정환경란에 ‘부는 일찍이 사망하였으며, 모가 생계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1950년 7월 15일로 이 사건의 희생 시기에 해당하고, 신청인과 참고인들이 희생 시기를 1950년 여름경 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용의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조○환이 조○용의 연행과정과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2)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청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3) 조○용의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희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4) 조○용과 같이 연행된 조○○의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조○용과 일치하는 점, (5) 제사를 1950년 여름경 지내왔던 점, (6) 『6·25 처형자 명단』에 조○용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7) 『제4대국회보고서』에 조○용이 희생되었다고 신고된 점, (8) 조○용의 아들 조○환의 생활기록부 조○용이 사망했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조○용(2다-4728)은 경북 칠곡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경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가창면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189) 참고인 조○○ 진술조서(2023. 4. 21.).

190) 제적등본에 조○용과 함께 연행된 조○○ 또한 1950년 7월 15일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적등본 발행번호 4115-2602-2136-2531(2022. 3. 23.).

191) 진실화해위원회는 『6·25 처형자 명단』을 열람 및 확인했다.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095, 3347)」(기법-3940, 2024. 8. 20.);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730 등)」(기법-4471, 2024. 9. 13.).

192) 조○용의 양민피살자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인적 사항이 성명 ‘조○니(호적 조○용)’, 생년월일 ‘1918년 1월 20일(호적 1920년 1월 8일)’, 신고인 성명 ‘조○○(호적 조○○)’으로 일부 불일치하나, 본적지가 일치한다. 조○○의 아내가 신고한 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성명 ‘조○○’, 생년월일 ‘1923년 11월 10일(호적 1925년 1월 17일)’, 신고인 성명 ‘이○○(호적 이○○)’이 일부 불일치하나, 성명과 본적지가 일치하고, 조○용의 피살 경위(헌병대에 연행당한 후 불상, 1950년 7월 7일 가출)와 본적지, 주소가 일치한다. 따라서 대구에서 신고된 피살자 ‘조○니’는 ‘조○용’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 6-22, 110~111쪽.

193) 대구인지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대구인지초등학교-10855, 2024. 9. 26.).

3) 군위군



경상북도 중앙부(대구광역시 북부)에 있는 군위군¹⁹⁴⁾의 행정구역은 1읍 7면이다. 군은 낙동강 유역 분지의 내륙 깊숙한 곳에 있고, 동남으로 영천시와 청송군, 서남으로 구미시와 칠곡군, 북으로는 의성군과 접해 있다.¹⁹⁵⁾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군위군에 거주하던 주민 21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주요 희생지는 우보면 나호동, 소보면 골짜기 등이다.¹⁹⁶⁾

(1) 진실규명대상자 권○봉(2다-9890, 신청인 권○억)

진실규명대상자 권○봉(權○鳳¹⁹⁷⁾, 1896년생, 농업)은 우보면 달산리(양산골)¹⁹⁸⁾에서 1950년 8월경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군위군 효령면 일대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권○억(1944년생, 손자)의 전문 진술¹⁹⁹⁾에 따르면, 할아버지 권○봉은 삼형제 중 둘째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1950년 7월경 권○봉은 논에서 일하던 중 자신의 아내 이○○와 마을 주민 권○○, 권○○, 문○○ 등과 같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우보지서에 구금됐다. 그 후 권○봉의 아내와 권○○, 권○○, 문○○ 등은 풀려나고 권○봉만 군위경찰서로 이송되어 군위군 효령면 일대에서 경찰에게 사살됐다. 친척들은 권○봉이 좌익활동과 관련돼서 연행됐다고 얘기했다. 이○○는 빨치산에게 밥을 해줘서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권○봉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제사는 음력 7월 4일(양력 8월 17일)에 지내고 있다.²⁰⁰⁾

참고인 황○○(1935년생, 권○봉의 며느리)의 전문 진술²⁰¹⁾에 따르면, 황○○은 23살 되던 해 음력 10월경 남편 권○○과 결혼했다. 시아버지 권○봉은 평소 농사를 짓고 틈날 때는 밭짐을 지고 마을을 다니며 한학을 가르쳤다. 사건 이전 밤이면 마을 인근 산에서 빨치산이 내려와 주민들에게

194)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됐다.

195) 군위군, 『군정백서 2010~2011』, 2012, 37~41쪽.

196) 13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4』, 2010.); 5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군위·안동·영주·의성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3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2』, 2010.

197) 신청인에 따르면 권○봉의 이명은 '권○집'이고, 족보상 이름은 '권○선'이다. 신청인 권○억 진술조서(2022. 5. 26.).

198) 신청인에 따르면 양산골(달산1리)은 당시 20가구 정도 살았다. 신청인 권○억 진술조서(2022. 5. 26.).

199) 신청인은 아버지 권○○(1934년)과 집안 어른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신청인 권○억 진술조서(2022. 5. 26.).

200) 신청인 권○억 진술조서(2022. 5. 26.).

201) 참고인은 사삼촌 권○○과 남편 권○○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현재 권○○은 3년 전 치매가 와서 집에서 요양 중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황○○ 진술조서(2023. 10. 19.).

충을 겨누며 배가 고프다고 밥을 해달라고 해서 먹고 가곤 했고, 베 짜놓은 것도 가져갔다. 시댁도 빨치산이 시어머니에게 밥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후 7월경 권○봉은 삼베옷을 입고 논에서 모를 심다가 우보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의성형무소에 구금됐다²⁰²⁾가 산으로 끌려가서 군경에게 총살됐다.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제사는 음력 7월 3일에 지내고 있다.²⁰³⁾

참고인 권○○(1936년생, 친척)의 전문 진술²⁰⁴⁾에 따르면, 9촌 권○봉은 볼에 어릴 때 아파서 생긴 흉터가 있었는데 글을 많이 알았고, 외향적이었다. 당시 마을은 권씨 7집, 박씨 3집, 문씨 1집 등이 살았는데, 권○봉의 집은 마을 위쪽에 있었고, 권○○는 권○봉의 집에 자주 놀러 갔었다. 사건 이전 우보면 미성리 등 골짜기 마을은 대부분 빨치산이 출몰해서 주민들이 식량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봤는데, 빨치산이 가고 나면 경찰이 마을로 들어와서 조사하곤 했다. 한국전쟁 이전 월일 미상경 권○봉은 마을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군위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군위군 일대에서 희생되었다고 들었다.²⁰⁵⁾

제적등본에는 권○봉이 1951년 4월 15일 본적지(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574번지)에서 사망(동년 9월 19일 동거자 권○○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⁰⁶⁾ 족보에는 권○봉이 기축(1949년) 7월 4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⁰⁷⁾

○○○○○에서 열람한 『6·25 처형자 명단』(1978)에 권○봉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본적, 생년월일 및 연고자 성명 등이 일치해서 진실규명대상자 권○봉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²⁰⁸⁾

제사일이 음력 7월 5일(양력 8월 17일)로 이 사건의 희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으로 보아 권○봉의 희생 시기는 1950년 8월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권○억이 권○봉의 연행과정과 사건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 참고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신청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3) 제사일이 희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4) 『6·25 처형자 명단』에 권○봉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권○봉(2다-9890)은 경북 군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8월경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군위군 효령면 일대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202) 참고인 권○○에 따르면 권○봉이 의성형무소로 이송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당시 대구·경북지역 형무소는 대구·김천·안동형무소가 있었고, 의성형무소는 존재하지 않아 참고인 황○○이 잘못 들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권○○ 면담조사보고서(2023. 10. 19.).

203) 참고인 황○○ 진술조서(2023. 10. 19.).

204) 참고인은 집안 어른과 마을 주민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권○○ 면담조사보고서(2023. 10. 19.).

205) 참고인 권○○ 면담조사보고서(2023. 10. 19.).

206) 신고자 권○○의 아내 황○○은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희생 시기와 차이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참고인 황○○ 진술조서(2023. 10. 19.); 제적등본 발행번호 6113-2612-1163-2612(2021. 11. 26.).

207) 족보상 사망 연도가 1949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6·25 처형자 명부』에 권○봉의 성명이 확인되어 사망 연도는 오기로 판단된다. 『안동권씨구밀공파대보장』, 연도 미상.

208) 진실화해위원회는 『6·25 처형자 명단』을 열람 및 확인했다.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095, 3347)」(기법-3940, 2024. 8. 20.);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730 등)」(기법-4471, 2024. 9. 13.).

4) 구미시



경상북도 서남부에 있는 구미시의 행정구역은 3읍 5면 17동으로, 동남쪽으로는 칠곡군, 서쪽 김천시, 북쪽 상주시, 동북쪽으로 군위군과 의성군에 접해 있다. 서남단에는 금오산이 있고, 시의 중앙을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고 있다.²⁰⁹⁾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구미시에 거주하던 주민 9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주요 희생자는 금오산 남티고개, 반티모리 등이다.²¹⁰⁾

(1) 진실규명대상자 장○두(2다-9547, 신청인 장○진)

진실규명대상자 장○두(張○斗, 1903년생, 농업)는 인동면 인의동(남산)²¹¹⁾에서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경 인동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대구형무소에 일시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1일경 대구 인근 불상지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장○진(1948년생²¹²⁾, 아들)의 전문 진술²¹³⁾에 따르면, 아버지 장○두는 마을 동장으로 농사를 짓는 한편 노동운동과 좌익활동을 하다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7월경 장○두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동지서 경찰에게 연행됐다. 그 후 마을 주민이 장○두가 대구형무소로 끌려간 후 8월 1일경 총살됐다고 장○두의 아내에게 알려줬다.²¹⁴⁾ 장○두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제사는 음력 8월 1일에 지내고 있다.²¹⁵⁾

참고인 장○○(1943년생, 먼 친척)의 전문 진술²¹⁶⁾에 따르면, 장○○은 인동면 신동에 살았지만, 종갓집이 인의동에 있어 집안 일가인 장○두의 집과는 왕래가 잦은 편이었다. 장○두는 남산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고,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장○두는 보도연맹원이라

209) 구미시, 『구미시정백서(2020~2021)』, 2022, 40~44쪽.

210) 7명(진실화해위원회, 「김천·구미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2명(진실화해위원회, 「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4』, 2009.).

211) 신청인과 참고인에 따르면 인의동은 인동장씨 집성촌으로 남산은 당시 20가구 정도 살았다. 인동면사무소 우측에 옥산이 있고, 장○두는 남산파 종택 옆집에 살았다. 신청인 장○진 진술조서(2023. 2. 9.);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3. 3. 24.).

212) 신청인은 실제로는 1947년 12월 17일생이다. 신청인 장○진 진술조서(2023. 2. 9.).

213) 신청인은 어머니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신청인 장○진 진술조서(2023. 2. 9.).

21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형무소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경북 경산시 코발트 광산, 대구시 달성군 가창 골짜기, 칠곡군 신동재 등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2010. 6. 29.)」,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215) 신청인 장○진 진술조서(2023. 2. 9.).

216) 참고인은 주로 할아버지 장○○과 할머니 남○○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들었다.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3. 3. 24.).

217) 신청인 장○진이 제출한 진실규명대상자 장○두 사진 사본이다.

는 이유로 인동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어딘가로 끌려가서 총살됐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²¹⁸⁾

제적등본에는 장○두가 1959년 8월 10일 칠곡군 인동면 신동 513번지에서 사망(1969년 12월 29일, 장○○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¹⁹⁾ 족보에는 장○두가 경인(1950년) 6월 18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²⁰⁾

『제4대국회보고서』(1960)에는 장○두가 경찰에게 피살되었다고 신고(신고자 노○○, 제221)된 피살자 명단이 있다.

○○○○○에서 열람한 『6·25 처형자 명단』(1978)에 장○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연고자 성명 등이 일치해서²²²⁾ 진실규명대상자 장○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²²³⁾

1946년 형사사건부에 따르면, 장○두가 「폭력행위등처치규칙」 위반 혐의로 1946년 1월 31일 구류되어 1946년 2월 11일 구공판, 1946년 3월 21일 재판언도, 1946년 3월 26일 재판확정되어 징역 6월²²⁴⁾을 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족보상 사망일이 1950년 6월 18일(양력 8월 1일)로 이 사건의 희생 시기에 해당하고, 신청인과 참고인이 희생 시기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또는 1950년 8월 1일경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장○두의 희생 시기는 1950년 8월 1일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장○진이 장○두의 연행과정과 사건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 참고인의 진술이 신청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3) 장○두의 족보상 사망일이 희생

〈사진 3〉 진실규명대상자 장○두 당시 모습²¹⁷⁾



218)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3. 3. 24.)

219) 신청인에 따르면 신고자인 셋째 형 장○○이 2021년 여름경 코로나 휴유증으로 사망해서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희생 시기와 차이나는 이유를 듣지 못했지만, 호적정리를 할 때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장○진 진술조서(2023. 2. 9.).

220) 1950년 음력 6월 18일은 양력으로 8월 1일이다. 『인동장씨남산공파보 권1』, 1981.

221) 『제4대국회보고서』 피살자 명부에 따르면, 피살자 장○두의 인적 사항에 주소가 '인동면 신동(실제 인동면 인의동)', 노○○이 '제(실제 배우자)'로 일부 오기재되어 있지만, 신고자 노○○이 장○두의 아내임이 확인되므로 진실규명대상자 장○두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222) 『6·25 처형자 명단』에 장○두의 생년월일이 1903년 2월 7일(호적 1903년 7월 7일), 본적이 경북 칠곡군 인동면 신동(호적 경북 칠곡군 인동면 인의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4대국회보고서』 피살자 명단에 주소가 '칠곡군 인동면 신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외 연고자의 성명·생년월일·관계(장○○, 1932년 6월 24일, 장남)가 동일해서 생년월일과 본적은 오기로 보인다.

223) 진실화해위원회는 『6·25 처형자 명단』을 열람 및 확인했다.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095, 3347)」(기법-3940, 2024. 8. 20.)

224)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법검찰청 제1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 『1946년 형사사건부』, 1946.

시기에 해당하는 점, (4) 제사일 또한 희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5) 『제4대국회보고서』에 장○두가 희생되었다고 신고된 점, (6) 『6·25 처형자 명단』에 장○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7) 형사사건부를 통해 장○두가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거나, 이를 이유로 연행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장○두(2다-9547)는 경북 구미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경 인동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대구형무소에 일시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1일경 대구 인근 불상지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2) 진실규명대상자 김○해(2다-12983, 신청인 오○석)

진실규명대상자 김○해(金○海²²⁵), 1930년생²²⁶, 농업)는 인동면 인의동(인의2구)²²⁷에서 거주하던 중 1950년 6월 말경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오○석(1959년생²²⁸, 생질²²⁹)의 전문 진술²³⁰에 따르면, 외삼촌 김○해는 당시 농사를 지었는데 미혼이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 김○해는 한학을 배워 필체가 좋았고, 자신의 여동생 김○○(오○석의 어머니)가 초등학생일 때 대구교대에 보내준다고 약속할 정도로 의식이 깨어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청년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다.

1947년 12월 31일경 김○해는 대구 칠성동 (남)조선국방경비대²³¹ 제1연대 제1중대 3소대 3(또는 5)분대에 근무했다.²³² 오○석은 “당시 국방경비대는 좌익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복무했다고 들었으니 외삼촌도 좌익활동을 하다가 보도연맹에 가입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한국전쟁 이전 외삼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지와 사진 등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태우는지 묻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 불태우지 않으면 신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경 보리가 익을 무렵 김○해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마실을 나섰다가 보도연맹원이란 이유로 경찰에게 연행됐는데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학살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는 당시 인동국민학교 5학년으로 사건 당일 집에서 김○해와 같이 저녁을 먹었고,

225) 신청인에 따르면, 가첩 상 김○해의 성명은 ‘김○호’이다. 신청인 오○석 진술조서(2023. 2. 16.).

226) 신청인에 따르면 김○해의 실제 나이는 1929년생으로 사건 당시 21살이었다. 신청인 오○석 진술조서(2023. 2. 16.).

227) 신청인에 따르면 인동면 중앙에 있는 인의동은 인의1·2·3구로 나뉘었다. 인의1구에 면사무소와 지서가 있었고,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인의2구는 옥산(높이 50m 정도 야산) 밑에 있는 마을로 50가구 정도 되는데, 김해김씨가 많이 살았다. 신청인 오○석 진술조서(2023. 2. 16.).

228) 신청인은 실제로는 1958년 10월 14일생이다. 신청인 오○석 진술조서(2023. 2. 16.).

229) 외할아버지 김○○과 외할머니 박○○ 슬하의 1남(김○해) 3녀(김○○, 김○○, 김○○) 중 김○해는 둘째고, 김○○은 셋째다. 오○석은 아버지 오○○과 어머니 김○○ 슬하의 3형제 중 맏이다.

230) 신청인은 어머니 김○○와 이모 김○○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신청인 오○석 진술조서(2023. 2. 16.).

231) 남조선국방경비대(이하 ‘국방경비대’)는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창설되어 대한민국 국군(육군, 공군)의 모체가 되었던 군사조직이다. 당시 주한미군육군사령부의 뱀부(BAMBOO)계획에 의거, 국내 치안 유지에 부족한 경찰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에서 1개 중대를 창설한 것을 효시로 2만 5,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책정해서 남한의 8개 도청소재지에 각각 1개 중대(장교 6명, 사병 225명)씩의 경비부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232) 병적기록 조회요청 결과 ‘김○해의 인적 사항과 일치하는 병적기록 없음’으로 회신받았다. 서울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2024. 9. 23.); 육군본부 병적민원과-15517(2024. 9. 24.).

김○해가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 김○해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절에서 백중일(음력 7월 15일) 등 행사가 있을 때 지내고 있다.²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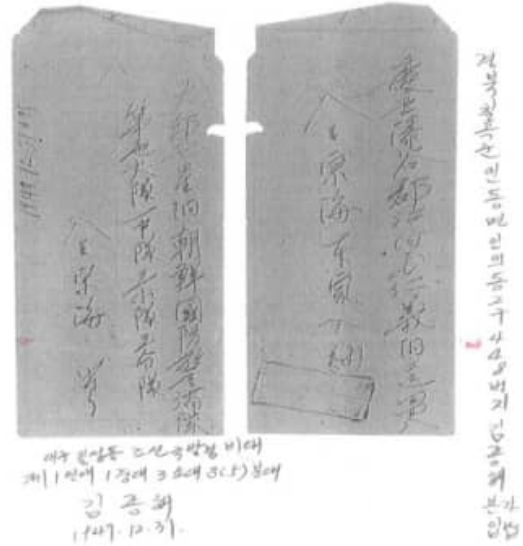
참고인 박○○(1942년생, 김○해의 매부²³⁵⁾)의 전문 진술²³⁶⁾에 따르면, 박○○은 26살 때 아내 김○○과 결혼했다. 처남 김○해는 김○○(김○해의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국전쟁 전후 경 누군가 호출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해는 집을 나서면서 동생들에게 “나는 가면 오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나간 후 실종됐다.²³⁷⁾

참고인 오○○(1964년생, 생질)의 전문 진술²³⁸⁾에 따르면, 외삼촌 김○해는 집안 농사일을 돕는 한편 왜관 청년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²³⁹⁾ 한국전쟁 발발 두 달 전 즈음 김○해는 며칠 동안 집을 떠났다가 갑자기 와서 사진을 정리하고 가족에게 인사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며칠 후 외할머니 박○○은 김○○과 김○○에게 물과 찌뽕을 주고 벽장 속에 숨기면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벽장문을 밖으로 잠갔고, 이틀 후 외할아버지 김○이 벽장 문을 열어줬다. 김○○가 벽장에 들어간 지 하루가 지났을 때 군경이 외삼촌을 찾다가 돌아갔다.

한국전쟁 발발 후 피난 가기 전 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박○○에게 “자네 아들이 왜관경찰서에 잡혀갔다”라고 전해줬는데, 그때 마을 주민 두세 명도 김○해와 같이 잡혀갔다. 그 후 전쟁이 끝날 무렵 마을 주민이 김○해가 칠곡군 신동재에서 총살됐다는 소식을 외할머니에게 전해줬지만,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 제사는 외할머니 박○○ 생전에는 명절에 지내다가 현재는 절에서 지내고 있다.²⁴⁰⁾

참고인 현○○(1946년생, 이웃)의 전문 진술²⁴¹⁾에 따르면, “6·25사변 때 그 집에 하나 있던 아들

〈사진 4〉 진실규명대상자 김○해가 1947년 경 남조선국방경비대 근무 당시 집으로 보낸 편지 봉투 사본²³³⁾



233) 신청인 오○석이 제출한 김○해가 1947년경 조선국방경비대에서 근무할 때 집으로 보낸 편지 봉투 사본(앞·뒷면)이다.

234) 신청인 오○석 진술조서(2023. 2. 16.).

235) 참고인 박○○은 김○해의 막내 여동생 김○○의 남편이다.

236) 참고인은 아내 김○○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4. 5. 14.).

237)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4. 5. 14.).

238) 참고인은 주로 외할머니 박○○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오○○은 대구 성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외할머니가 밥을 해준다고 대구에서 3년 정도 같이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외삼촌이 돌아가신 경위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오○○ 진술조서(2024. 5. 14.).

239) 참고인에 따르면, 당시 왜관 청년단이 좌익인지 우익인지 모르지만, 외할머니는 청년단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고, 외삼촌이 나라를 위해 청년단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참고인 오○○ 진술조서(2024. 5. 14.).

240) 참고인 오○○ 진술조서(2024. 5. 14.).

241) 참고인은 마을 주민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현○○ 면담조사보고서(2024. 5. 13.).

(김○해)이 죽어서 오○○(김○○의 배우자)이 그 집 데릴사위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⁴²⁾

제적등본에는 김○해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²⁴³⁾ 가첩에는 김○해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다.²⁴⁴⁾ 족보에는 김○해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²⁴⁵⁾

신청인과 참고인들이 희생 시기를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경 또는 한국전쟁 시기, 한국전쟁 발발 후 피난 가기 전으로 다수가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김○해의 희생 시기는 1950년 6월 말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김○해가 연행될 당시 목격한 김○○에게 직접 들은 신청인 오○석이 김○해의 연행과정과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2) 김○해의 어머니 박○○에게 전해 들은 참고인 오○○이 매우 구체적으로 희생 경위를 진술하고 있으며, (3) 참고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신청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4)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제사를 지내온 점, (5) 사건시기가 보도연맹사건 발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해(2다-12983)는 경북 구미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6월 말경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3) 진실규명대상자 김○병(2다-5010, 신청인 김○인)

진실규명대상자 김○병(金○炳, 1915년생, 농업)은 구미면 신부동(신늪)²⁴⁶⁾에서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경 경찰에 의해 연행·구금된 후 금오산 일대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인(1947년생²⁴⁷⁾, 아들)의 전문 진술²⁴⁸⁾에 따르면, 1950년 7월경 아버지 김○병이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사복형사 2명이 찾아와서 선산경찰서(현, 구미경찰서)로 김○병을 연행해서 구금했다. 김○병의 아내가 선산경찰서로 가서 죄가 없는 사람을 왜 가뒀냐고 하니, 경찰이 소 한 마리 값을 가져오면 풀어준다고 했다. 김○병의 아내는 그 길로 친정집 등을 돌아다니며 돈을 구하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경찰서로 다시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김○병이 벌써 대구

242) 참고인 현○○ 면담조사보고서(2024. 5. 13.).

243) 신청인은 연좌제 피해를 볼까 두려워서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오○석 진술조서(2023. 2. 16.).

244) 신청인에 따르면 ‘가첩’은 1930년도에 작성된 이후 손을 대지 않아 김○해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 오○석 진술조서(2023. 2. 16.).

245) 신청인에 따르면 외오촌당숙(종손 김○○, 81세 사망)이 족보를 관리했는데, 당시 김○해가 보도연맹 청년 간부로 사망해서 외오촌 당숙이 김○해를 1955년 발행한 족보에서 아예 삭제했고 이로 인해 김○○과 김○해의 부친 김○○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1955년 발행한 족보에는 김○○의 형제 김○○, 김○○만 등재되어 있고, 김○○의 이름도 삭제되어 있다. 1997년 발행한 족보에는 김○○의 이름(족보상 ○○)만 등재되어 있다. 신청인 오○석 통화보고서(2024. 9. 23.); 『김해김씨파보』, 1955.; 『김해김씨파보 서공파보 권4』, 1997.

246) 신청인에 따르면 신늪은 당시 70~80가구 정도 살았고,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뒤로는 야산이 있었는데, 1973년 공단 조성으로 마을이 없어졌다. 신청인 김○인 진술조서(2022. 3. 18.).

247) 신청인은 실제로는 1946년이다. 신청인 김○인 진술조서(2022. 3. 18.).

248) 신청인은 어머니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김○병이 연행될 당시 어머니와 누님 김○○가 목격했다. 신청인 김○인 진술조서(2022. 3. 18.).

로 이송됐다고 했다.

김○병의 아내는 그 와중에 아들 김○○²⁴⁹⁾을 출산했다. 출산 후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김○병의 소재를 알아봤지만, 경찰은 김○병이 이미 사망했다고 알려줬다. 그 후 김○병이 금오산 자락에서 선산경찰서 경찰에게 총살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제사는 음력 6월 10일(양력 7월 24일)에 지내고 있다. 김○인은 “사건 이후 마을 주민들이 저를 빨○이 아들이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버지가 연행된 이유도 그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라고 진술했다²⁵⁰⁾

참고인 류○○(1939년생²⁵¹⁾, 이웃)의 전문진술²⁵²⁾에 따르면, 김○병은 마을 구장으로 일제 강점기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7월 초순 여름경 새벽녘, 김○병은 집에 있던 중 경찰에게 끌려간 후 어딘가에 구금됐는데, 그의 가족이 면회를 한 번 간 적이 있다. 그 후 김○병이 금오산 골짜기 혹은 성주 골짜기에서 군경에게 총살됐다는 소문을 들었다. 마을 어른들은 김○병이 사변 때 억울하게 죽어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자주 얘기했다. 당시 마을 주민 백○○의 형(성명 미상)도 김○병과 같이 연행·총살됐는데, 경찰이 죽은 이의 윗형을 잡으려 갔다 대신 잡혀갔다고 한다.

류○○은 “저의 가족은 1950년 7월경 군위군 석적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효령면을 거쳐 청도까지 피난을 갔는데, 청도에서 이불로 집(천막)을 지어 생활하다가 같은 해 가을경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김○병이 총살됐다는 소문을 들은 후 피난을 갔기 때문에 김○병이 희생된 시기는 1950년 7월 초순으로 기억합니다. 김○병이 총살된 후 그 집 막내아들이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김○병이 경찰에게 연행됐고, 피난 가기 전 마을에서 군인을 본 적이 없으니 가해자는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1944년생²⁵³⁾, 딸)의 목격·전문 진술²⁵⁴⁾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피난 가기 전 여름경, 이른 아침 집으로 사복 경찰 둘이 찾아왔을 때 김○○은 마당에서 고무줄을 기둥에 매 놓고 놀고 있었는데 경찰들은 마당에 서서 할아버지 김○○에게 김○병이 집에 있는지 물었고, 집 뒤뜰에 있다고 알려주자 김○병을 연행했다. 그 후 김○병이 선산경찰서에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김○○이 만삭인 배를 안고 경찰서로 찾아갔는데 김○병은 만나지 못하고 경찰만 만나고 왔다. 경찰이 김○○에게 소 한 마리 값을 가져오면 김○병을 내준다고 말했지만 큰돈이라 구할 수 없었다. 김○○은 선산경찰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던 외할머니댁(선산군 구미면 봉곡동, 갑골)에서 선산경찰서로 한동안 면회를 갔었다. 그 후 김○병은 실종됐고 1950년 음력 6월경 가족은 칠곡으로 피난 갔다 추석을 지내고 가을경 마을로 돌아왔다.

249) 신청인에 따르면 김○○은 호적상 1951년 7월 15일생이지만 1년 늦게 신고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950년생이다. 김○인과 김○○도 호적보다 실제 2살이 많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김○인 통화보고서(2024. 10. 4.).

250) 신청인 김○인 진술조서(2022. 3. 18.).

251) 참고인은 실제로는 1937년생으로 사건 당시 만 13세로 광평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참고인 류○○ 진술조서(2024. 9. 12.).

252) 참고인은 부모와 집안 어른, 마을 주민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류○○ 진술조서(2024. 9. 12.).

253) 참고인은 실제로는 1942년생이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7. 11.).

254) 참고인은 김○병이 집에서 연행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김○병이 총살되었다는 소식은 외할머니에게 전해 들었다. “외할머니는 그 얘길 하며 우셨는데, 어머니 눈물이 말랐는지 몰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7. 11.).

이듬해 김○○의 사촌오빠²⁵⁵⁾가 외할머니 김○○과 김○○에게 김○병이 총살됐으니 음력 6월 스무날인가 스무하룻날 제사를 지내라고 알려줘서 김○병이 총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마을 주민들은 김○병이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와 친분이 있어 그와 연관되어 희생된 것이 아닌지 얘기했다. 제사는 음력 6월경 지내오다가 김○○이 사망한 후로는 지내지 않고 있다. 김○○은 “저는 아버지가 연행될 때 할머니가 짜고 어머니가 직접 만든 단추 달린 삼베 남방과 삼베 반바지를 입고 끌려가던 아버지를 본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후 어머니가 아버지를 면회한다고 경찰서를 오갈 때 막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 뒤로 피난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했다.²⁵⁶⁾

참고인 김○○(1942년생, 먼 친척)의 전문진술²⁵⁷⁾에 따르면, 김○병은 신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집안 소유 농지가 많아 잘 사는 편이었다. 한국전쟁 이전 월일 미상경, 김○병, 백○○의 형(백○○, 이름 부정확)은 대구10월사건에 연루되어 선산경찰서에서 데려간 후 실종됐고, 시신을 찾았는지는 알지 못한다.²⁵⁸⁾

참고인 정○○(1947년생²⁵⁹⁾, 낙계동 주민)의 전문진술²⁶⁰⁾에 따르면, 정○○는 당시 신부동과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낙계동에서 살고 있었다. 현재 신부동과 낙계동은 공단용지에 편입돼서 공단동이 됐다. 김○○의 아버지(김○병)가 6·25사변 때 경찰서에 끌려가서 실종됐다는 소문을 들었다.²⁶¹⁾

제적등본에는 김○병이 1970년 11월 29일 본적지(선산군 구미읍 신부동 289번지)에서 사망(1970년 12월 30일 동거자 김○○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⁶²⁾ 족보에는 김○병이 경인(1950년) 5월 20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⁶³⁾

족보상 사망일이 1950년 5월 20일(양력 7월 5일)로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해당하고, 제사를 음력 6월 10일(양력 7월 24일) 지내왔었고, 신청인이 희생 시기를 1950년 7월경으로 진술하고, 김○병이 연행될 당시 직접 목격한 참고인 김○○가 희생 시기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여름경 피난가기 전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김○병의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김○인이 김○병의 연행과정과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2) 참고인 김○○가 김○병이 집에서 연행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3)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청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4) 족보상 사망일이 희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5) 제사일이 희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실규

255) 참고인에 따르면 사촌오빠 김○○(이름 부정확)는 당시 김천에서 경찰로 재직 중이었는데 김○병보다 나이가 많았고, 경찰로 정년 퇴직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7. 11.).

25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7. 11.).

257) 참고인은 마을 어른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김○○ 면담조사보고서(2024. 5. 14.).

258) 참고인 김○○ 면담조사보고서(2024. 5. 14.).

259) 참고인은 실제로는 1945년생이다. 참고인 정○○ 면담조사보고서(2024. 5. 14.).

260) 참고인은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정○○ 면담조사보고서(2024. 5. 14.).

261) 참고인 정○○ 면담조사보고서(2024. 5. 14.).

262) 신청인에 따르면 형 김○○이 사망신고를 했는데 사망일이 1970년으로 기재된 것은 몰랐고 형도 사망해서 알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김○인 진술조서(2022. 3. 18.); 제적등본 발행번호 1114-2602-1144-1060(2021. 6. 14.).

263) 양력으로는 1950년 7월 5일이다. 『일선김씨대장군파보 권지1』, 2001.

명대상자 김○병(2다-3)은 경북 구미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경 경찰에 의해 연행·구금된 후 금오산 일대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5) 안동시



경상북도 중북부의 중앙에 있는 안동시의 행정구역은 1읍 13면 10동으로, 동쪽으로 영양·청송군, 서쪽으로 예천군, 남쪽으로 의성군, 북쪽으로는 영주시, 봉화군과 접해 있다. 동쪽 태백산맥과 서쪽 소백산맥에서 뻗어온 지맥이 지역 전체에 이르고 있고, 그 골짜기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²⁶⁴⁾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안동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99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주요 희생지는 한티재, 와룡면 기름땅고개 등이다.²⁶⁵⁾

(1) 진실규명대상자 임○근(2다-3226, 신청인 임○우)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미신청 희생 확인

진실규명대상자 임○근(林○根²⁶⁶⁾, 1911년생, 농업)은 북전면 원천리(길명)²⁶⁷⁾에서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경 북전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남후면 무릉리 계곡에서 희생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 진실규명대상자 임○근을 미신청 희생자로 진실규명 했다.²⁶⁸⁾

신청인 임○우(1966년생, 손자²⁶⁹⁾)의 전문 진술²⁷⁰⁾에 따르면, 1950년 7월경 할아버지 임○근과 종조할아버지 임○○²⁷¹⁾은 논에서 풀을 베던 중, 경찰에 의해 50여 명의 사람과 같이 북전지서로 연행됐다가 남후면 무릉리 계곡(현재 한티재 부근)으로 끌려가서 총살됐다. 임○근의 외삼촌과 마을 어

264) 안동문화원, 『내 고장 편람』, 2020, 21~38쪽.

265) 25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63명(진실화해위원회,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3』, 2009.); 11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2』, 2009.).

266) 족보상 이름은 임○욱이다.

267) 신청인에 따르면 길명마을(원천1리)은 울진읍 집성촌으로 당시 20가구 정도 살았고 토일천이 흐른다. 신청인 임○우 진술조서(2022. 4. 1.).

268)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269) 신청인은 임○근의 셋째아들 임○○(1943년생)의 아들이다.

270) 신청인은 아버지 임○○와 마을 어른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신청인 임○우 진술조서(2022. 4. 1.).

271) 임○○(다-8975, 신청인은 임○○의 아들 임○○)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2009. 11. 3.)」으로 진실규명 결정(희생 확인)되었다.

른들이 현장으로 가 보니 시신 50여 구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다른 마을 주민들도 시신을 찾으러 많이 와 있었다. 도민증을 보고 임○근의 시신을 확인했는데 가슴 등 몇 군데에 총알이 관통해 있었다고 한다. 임○근과 임○○의 시신은 같은 날 수습했고, 제사도 음력 6월 15일에 같이 지내고 있다.²⁷²⁾

참고인 임○○(1942년생, 임○근의 차남)의 전문 진술²⁷³⁾에 따르면, 아버지 임○근은 마을 동장으로 농사를 지으며 목수도 겸했다. 1950년 7월경 임○근과 삼촌 임○○이 논매기를 하던 중,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녹전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당일 남후면 무릉리로 끌려가서 총살되었다. 시신은 외삼촌과 삼촌 임○○이 같은 해 10월경 수습해서 매장했는데, 시신이 부패해서 임○근의 도민증을 보고 겨우 알아봤다고 한다.²⁷⁴⁾

참고인 임○○(1951년생²⁷⁵⁾, 임○근의 삼남)의 전문 진술²⁷⁶⁾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아버지 임○근과 삼촌 임○○은 논에서 일하던 중 녹전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남후면 무릉리에서 총살됐다. 시신은 수습했고 제사는 음력 6월 15일에 지내고 있다.²⁷⁷⁾

참고인 김○○(1945년생²⁷⁸⁾, 임○근의 며느리)의 전문 진술²⁷⁹⁾에 따르면, 1950년 음력 6월경 시아버지 임○근과 시삼촌 임○○은 논매기 중, 녹전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에서 총살됐다. 시신은 둘 다 같은 날 수습해서 선산에 매장했다.²⁸⁰⁾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임○○(1938년생²⁸¹⁾, 임○근의 조카)의 목격 진술²⁸²⁾에 따르면, 전쟁 이전 공비들(빨치산)이 밤에 종종 마을로 내려오곤 했다. 백부 임○근은 1949년 여름경 복숭아 농사를 지었는데, 공비들(빨치산)이 내려와서 복숭아 한 상자를 달라, 안주면 죽인다고 해서 준 적이 있는데, 지서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임○근을 지사로 데려간 일이 있었다. 아버지 임○○은 밤에 공비에게 끌려가서 이발해주다가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에게 여기 살면 (공비에게) 죽을 테니 녹전면 신평으로 나가자고 해서 그날 바로 녹전지서에 자수하고 가족을 데리고 지서 옆집으로 이사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경 임○○과 임○근은 녹전지서 경찰에게 연행됐다. 임○○은 “당시 면사무소 앞에서 50여 명의 사람을 굴비 엮듯이 허리를 새끼줄로 줄줄이 묶어서 경찰들이 안동 쪽으로 인솔해 갔습니다. 백부(임○근)와 부친(임○○)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부친은 저를 불러 만환짜리 지폐를 쥐여줬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임○근과 임○○은 남후면 무릉계곡에서 경찰에게 총살됐다. 시신은 수습했고 제사는 음력 6월 15일에 지내고 있다.²⁸³⁾

272) 신청인 임○우 진술조서(2022. 4. 1.).

273) 참고인은 어머니 박○○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임○○ 진술조서(2022. 7. 7.).

274) 참고인 임○○ 진술조서(2022. 7. 7.).

275) 참고인에 따르면, 임○○는 실제로는 1948년생이다. 참고인 임○○ 진술조서(2022. 7. 7.).

276) 참고인은 만형 임○○과 사촌 임○○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임○○ 진술조서(2022. 7. 7.).

277) 참고인 임○○ 진술조서(2022. 7. 7.).

278) 참고인은 실제로는 1943년생이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7. 7.).

279) 참고인은 시숙모 문○○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7. 7.).

280) 참고인에 따르면 김○○의 고향은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로 18살에 임○○와 결혼해서 녹전면 원천리로 왔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7. 7.).

281) 참고인의 실제 나이는 1937년생으로 사건 당시 13살이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임○○ 진술조서(2008. 6. 27.).

282) 참고인은 임○근과 임○○이 희생자로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임○○ 진술조서(2008. 6. 27.).

28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임○○ 진술조서(2009. 7. 29.).

제적등본에는 임○근이 1955년 11월 26일 본적지(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488번지)에서 사망(1955년 12월 1일 동거자 황○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⁸⁴⁾ 족보에는 임○근이 기축(1949년) 6월 16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⁸⁵⁾

『제4대국회보고서』(1960)에는 임○근에 대해 ‘[피살연월일] 1950년 7월 25일 [피살장소] 안동군 남후면 무집이, [경찰관계] 당시 도장 근무하다가 공비가 내려와서 물품 강요와 인명 위협함으로 1949년 10월경에 동장을 사표하고 안동읍으로 이사해서 당시 경찰에서는 사상이 달라서 동장을 사표하였다고 1949년 7월 20일경에 녹전지서에서 호출하여 남후면 무집이 뒷산에서 피살하였음. (신고인 박○○, 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²⁸⁶⁾

○○○○○에서 열람한 『6·25 처형자 명단』(1978)에 임○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본적, 연고자 성명 등이 일치해서²⁸⁷⁾ 진실규명대상자 임○근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²⁸⁸⁾

임○근의 아들 임○○가 졸업한 『녹전초등학교 학적부²⁸⁹⁾』에는 1949년 9월 1일 입학 당시 보호자가 ‘임○근’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사일이 음력 6월 15일로 이 사건의 희생 시기에 해당하며, 신청인과 참고인들이 희생 시기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또는 1950년 7월경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임○근의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임○우가 임○근의 연행과정과 사건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청인 진술과 일치하는 점, (3) 시신이 수습된 점, (4) 제사일 또한 희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5) 『제4대국회보고서』에 임○근이 희생되었다고 신고된 점, (6) 『6·25 처형자 명단』에 임○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7) 학적부를 통해 임○근이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임○근(2다-9547)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신청 희생자로 진실 규명된 임○근과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284) 신청인에 따르면 제적등본 상 사망일은 호적정리를 위해 임의로 날을 정해서 등재한 듯하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임○우 진술조서 (2022. 4. 1.).

285) 1949년 음력 6월 16일은 양력으로 7월 11일이고, 1950년 음력 6월 16일은 양력으로 7월 30일이다. 족보상 임○근의 사망일이 1949년 6월 16일(음력 추정)로 기재되어 있지만,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과 『6·25 처형자 명단』에 임○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근의 희생 연도는 1949년이 아닌 1950년으로 판단된다. 『울진임씨세보 상권』, 0000.

286) 『제4대국회보고서』 양민피살자신고서에 기재된 임○근의 피살 일자(1950년 7월 25일)와 경찰 관계에서 기술했던 피살 일자(1949년 7월 20일)가 차이 나지만,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과 『6·25 처형자 명단』에 임○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근의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경으로 판단된다.

287) 『6·25 처형자 명단』에 임○근의 생년월일이 1926년 5월 16일(호적 1911년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본적(경북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488)과 연고자의 성명·생년월일·관계(임○○, 1938년 8월 10일, 장남)가 동일해서 생년월일은 오기로 보인다.

288) 진실화해위원회는 『6·25 처형자 명단』을 열람 및 확인했다.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095, 3347)」(기법-3940, 2024. 8. 20.);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730 등)」(기법-4471, 2024. 9. 13.).

289) 임○근의 아들 임○○가 1949년 9월 1일 녹전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는 부친 임○근이 같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녹전초등학교 학적부 사본(녹전초등학교-7717, 2022. 9. 13.).

(2) 진실규명대상자 김○쇄(2다-11400, 신청인 김○동)

진실규명대상자 김○쇄(金○釗²⁹⁰), 1913년생, 농업)는 남후면 검암1리(대실)²⁹¹에서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경 경찰에게 연행된 후 한티재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동(1948년생²⁹², 아들)의 전문 진술²⁹³에 따르면, 사건 이전 밤이면 마을에 빨치산이 내려와 쌀 등 식량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마을 주민에게 짐을 운반시켰다. 1950년 5월에서 6월 사이 여름경 김○동은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 해지기 전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남후주재소(남후지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 김○쇄를 데려갔다고 얘기했다. 그 후 김○쇄가 한티재에서 총살됐다고 누군가 알려줘서 어머니가 현장으로 갔는데 시신들이 부패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숨으로 코를 막고 김○쇄가 입고 있던 옷으로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한티재에서 돌아온 후 청도로 피난가기 위해 짐을 꾸렸다. 짐이 많아 가족 중 김○동과 큰아버지 김○○, 사촌형 김○○이 우선 짐을 들고 재를 넘었다. 짐을 내려놓고 다시 재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산에 인민군이 있어 위험하다고 막아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마을에 남게 되었다. 국군이 마을을 수복한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가족들을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사촌 누나 김○○(큰아버지 김○○의 딸)에게 듣기로는, 이웃 마을인 검암1리(건바)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김○쇄를 찾아왔는데 큰아버지 김○○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김○쇄는 잘못된 것이 없으니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간 후 희생되었고 마을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했다. 제사는 사망일을 알지 못해 음력 9월 9일에 지내다가 현재는 지내지 않고 있다.²⁹⁴

참고인 김○○(1944년생, 이웃)의 전문 진술²⁹⁵에 따르면, 마을 이웃 김○쇄는 농사를 지었는데, 1950년 6월 여름경 집에 있던 중 남후면 소재 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한티재에서 총살됐다. 한티재에 많은 시신이 있어서 김○쇄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 대실에서는 김○쇄 한 명이고, 황계에도 희생자가 있다고 들었다.²⁹⁶

참고인 김○○(1937년생, 조카)의 전문 진술²⁹⁷에 따르면, 삼촌 김○쇄의 태호는 ○곡어른으로

290) 김○쇄의 족보상 이름은 '김○한(金○漢)'이다. 『안동김씨감찰공파대계가승보』, 0000.

291) 신청인에 따르면 대실은 당시 30가구 정도 살았고, 강을 건너면 행계마을(검암2리)이 있었다. 마을 초입은 평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김○쇄의 집은 산 밑 오르막길에 있었다. 신청인 김○동 진술조서(2022. 7. 1.).

292) 신청인의 실제 나이는 1942년생으로 사건 당시 집 나이 9살이었다. 김○동의 형이 2살 때 홍역에 걸려 일찍 사망해서 부모가 호적에 늦게 올렸다고 한다. 신청인 김○동 진술조서(2022. 7. 1.).

293) 신청인은 어머니와 사촌 누나 김○○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신청인 김○동 진술조서(2022. 7. 1.).

294) 신청인 김○동 진술조서(2022. 7. 1.).

295) 참고인은 마을 주민들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8. 25.).

29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8. 25.).

297) 참고인은 김○쇄 옆집에 살았는데, 사건 당일 아버지 김○○과 큰어머니(안동권씨, 이름 미상)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당시 김○○은 무릉초등학교 6학년으로 집까지 10리 길이라 여느 때와 같이 수업 도중 오후 1시쯤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큰어머니가 집에 와 있어서 사건 경위를 들을 수 있었다. 큰아버지 김○○은 사건 1년 전 병으로 사망했다. 김○○은 사친회 회장이라 경찰, 학교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살아만 있었어도 김○쇄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8. 5.).

죽보상 이름은 김○한이다.²⁹⁸⁾ 1950년 월일 미상경 안동 장날, 김○쇄는 좁쌀 한 말을 지고 읍내 방향으로 가던 중, 경찰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잡혀갈까 무서워 이웃 마을인 접실 이발소로 들어갔다. 경찰이 보이지 않자 나왔다. 김○쇄는 길바닥에 있던 삐라를 보자 이게 뭔가 싶어서 주웠는데, 마침 경찰이 그걸 보고 김○쇄를 남후주재소(남후지서)로 끌고 갔다. 남후주재소에서 경찰에게 매질을 당해 김○쇄의 팬티에 피가 흥건해지자 경찰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돌려보냈다. 김○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무릉국민학교 뒤편 철독 너머에 있던 큰어머니 집 짚더미 속에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김○쇄를 찾아내서 남후주재소(남후지서)로 다시 끌고 갔다. 며칠 후 경찰이 김○쇄를 한티재²⁹⁹⁾에서 총살했는데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 당시 죽은 사람은 마을에서는 김○쇄 한 명뿐이고, 다른 마을에는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당시는 경찰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빨치산으로 몰아 죽이던 때라 경찰을 보면 무서워서 숨던 시대였다. 그래서 김○쇄도 경찰을 피해 이발소에 숨었던 걸로 짐작되고, 삐라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살됐다고 생각한다.³⁰⁰⁾

참고인 김○○(1944년생, 조카)의 전문진술³⁰¹⁾에 따르면, 1950년 월일 미상경 좌익활동을 하던 황계³⁰²⁾에 사는 일가 사람이 삼촌 김○쇄를 불렀다. 김○○이 시국이 좋지 않으니 가지 말라고 말려도, 김○쇄는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며 황계로 갔다. 그 후 김○쇄가 한티재에서 총살됐다고 누군가 알려줘서 가족이 현장으로 갔지만 시신들이 너무 부패해서 찾지 못했다. 황계마을 동장 강씨가 4~5명 정도 좌익활동을 한 사람 명단을 만들어 경찰서에 제출해서 김○쇄와 황계마을 주민들이 희생됐다고 마을 주민들이 얘기했다.³⁰³⁾

제적등본에는 김○쇄가 1951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동 31번지에서 사망(1974년 7월 29일 동거자 친족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³⁰⁴⁾ 죽보에는 김○쇄가 경인(1950년) 6월 11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³⁰⁵⁾

죽보상 사망일이 1950년 6월 11일(양력 7월 25일)로 이 사건의 희생 시기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1950년 여름경 김○쇄가 희생됐고, 김○쇄가 죽은 후 피난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인들이 희생 시기를 1950년경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김○쇄의 희생 시기는 죽보상 사망 시기인 1950년 7월경으로 판단된다.

298) 참고인에 따르면 김○쇄는 키가 큰 편이고 보통 체격에 성격이 급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8. 5.).

299) 참고인에 따르면 한티재는 무릉에서 읍내로 나가는 방향에 있는 재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8. 5.).

30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8. 5.).

301) 참고인은 어머니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8. 5.).

302) 참고인에 따르면 이웃 마을인 검안2동 황계는 안동김씨 집성촌으로 당시 50가구 정도 살았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8. 5.).

30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8. 5.).

304) 신청인에 따르면,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희생 시기와 차이는 이유는 정확한 사망일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몇십 년을 살다가 늦게 사망신고를 했기 때문에 임의로 사망일을 정해서 신고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듯하다. 사망 장소도 김○동의 가족이 대구로 이사해서 살던 주소로 되어있다고 진술했다. 대명동 31번지는 신청인 김○동의 상호적 본적지이고, 김○쇄의 본적지는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263번지다. 신청인 김○동 진술조서(2022. 7. 1.); 제적등본 발행번호 1114-2102-2360-2416(2022. 1. 26.).

305) 양력으로는 1950년 7월 25일이다. 『안동김씨감찰공파대계가승보』, 1990.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김○동이 김○쇄의 연행과정과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2)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청인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며, (3) 족보상 사망일이 희생 시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쇄(2다-11400)는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경 경찰에게 연행된 후 한티재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6) 영양군



경상북도 동북부에 있는 영양군의 행정구역은 1읍 5면 115리로, 서쪽으로 안동, 동쪽으로 울진·영덕, 남쪽으로 청송, 북쪽으로 봉화와 접해 있다. 또한 경북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일월산이 봉화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³⁰⁶⁾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영양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23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주요 희생지는 남후면 수상리, 영양읍 팔수골 등이다.³⁰⁷⁾

(1) 진실규명대상자 김○종(2다-16041, 신청인 김○원)

진실규명대상자 김○종(金○鍾, 1912년생, 미곡상)은 영양읍 동부리³⁰⁸⁾에서 거주하던 중 1950년 7월경 경찰에게 연행된 후 가창면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원(1950년생³⁰⁹⁾, 아들)의 전문 진술³¹⁰⁾에 따르면, 아버지 김○종은 쌀 등 곡식을 파는 미곡상을 해서 사는 형편은 괜찮았다. 사건 이전 김○종은 어떤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김○종은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게 연행됐다. 주위에서 돈을 써서라도 김○종을 빼내야 한다고 해서 어머니 권○○이 김○쇄에게 전했더니,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돈을 주느냐”라고 반대했다. 그 후 김○쇄는 대구 방면으로 끌려가서 학살됐다. 권○○은 주위 분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걸 두고두고 후회했다. 김○종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9월 9일에 지내다가 현재는 종교 문제로 지내지 않고 있다. 김○종은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지 백일만에 아버지가

306) 영양군지편찬위원회, 『영양군지』, 1998, 18쪽.

307) 8명(진실화해위원회 「영양·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05』, 2010.); 15명(진실화해위원회, 「경북 봉화·영양·청송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5』, 2010.).

308) 동부리는 영양읍 소재지로 황룡천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어 있고, 골뱅이골, 바들양지, 도못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영양군지편찬위원회, 『영양군지』, 1998, 1009~1011쪽.

309) 신청인 김○원은 1950년 3월 17일생으로, 1남 2녀 중 막내다.

310) 신청인은 어머니 권○○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신청인 김○원 진술조서(2023. 2. 17.).

희생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950년 3월 17일(양력) 태어났습니다”라고 진술했다.³¹¹⁾

참고인 최○○(1935년생, 김○종의 사위)의 전문 진술³¹²⁾에 따르면, 최○○은 35살에 김○종의 장녀 김○○와 결혼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밤중에 김○종은 집에서 자던 중 군경에게 어딘가로 끌려가서 총살됐는데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 최○○은 “아내와 결혼하고 장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장인이 안 계셔서 경위를 물어봤다가 장인 어른이 그렇게 돌아가신 걸 알게 됐습니다. 밤중에 집에서 끌려가서 연행 당시 장모와 처제가 장인이 끌려가는 걸 목격한 걸로 압니다”라고 진술했다.³¹³⁾

참고인 김○○(1946년생, 김○종의 차녀)의 전문 진술³¹⁴⁾에 따르면, 아버지 김○종은 양곡 배급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식모를 두고 살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김○종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몇 명의 마을 주민과 같이 군경에게 끌려간 후 영양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가창댁에서 희생됐다.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 사건 이전 김○종이 보도연맹 관련해서 도장을 잘못 찍어줘서 끌려갔다고 어머니에게 들었다.³¹⁵⁾

제적등본에는 김○종이 1969년 3월 15일 영양군 영양면 동부동 549번지에서 사망(동월 26일 동거자 김○원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³¹⁶⁾

『제4대국회보고서』(1960)에는 김○종에 대해 ‘[피살연월일] 미기재 [피살장소] 미기재 [경찰관계] 6·25사변 발발 직후인 7월 초순경 무조건 빨○이라는 이유로 영양경찰서 사찰주임 호○○이 검속하여 안동에 송치 후 소식 없음(신고인 김○○, 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에서 열람한 『6·25 처형자 명단』(1978)에 김○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연고자 성명 등이 일치해서³¹⁷⁾ 진실규명대상자 김○종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³¹⁸⁾

김○종의 아들 김○원이 졸업한 『대구삼덕초등학교 생활기록부³¹⁹⁾』에는 1956년 6월 1일 입학 당시 보호자는 ‘김○○(조부)’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버지는 ‘공란’으로 되어있다. 『대건중학교 생활기록부³²⁰⁾』에는 1962년 3월 7일 입학 당시, 보호자는 ‘권○○(모)’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버지는 ‘공란’으로 되어있다.

311) 신청인 김○원 진술조서(2023. 2. 17.).

312) 참고인은 장모 권○○과 처제 김○○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3. 9. 8.).

313)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3. 9. 8.).

314) 참고인은 어머니 권○○에게 사건 경위를 전해 들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9. 12.).

31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9. 12.).

316) 신청인에 따르면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희생 시기와 차이 나는 이유는, 어머니가 자식들이 혹시라도 연좌제 피해를 볼까 염려해서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서 그렇게 된 듯하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김○원 진술조서(2023. 2. 17.); 제적등본 발행번호 3114-2612-2141-0118(2022. 11. 4.).

317) 『6·25 처형자 명단』에 김○종의 생년월일이 ‘1912년 10월 21일(호적 1912년 11월 2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4대국회보고서』에도 1912년 10월 21일로 기재되어 있다. 본적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로 번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김○종의 본적 지역과 동일하다. 그 외 연고자의 성명이 ‘김○○(호적 김○○)’으로 유사하고 관계(제)가 동일해서 생년월일과 연고자의 성명은 오기로 보인다.

318) 진실화해위원회는 『6·25 처형자 명단』을 열람 및 확인했다.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095, 3347)」(기법-3940, 2024. 8. 20.); ○○○○○,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조사3과-3730 등)」(기법-4471, 2024. 9. 13.).

319) 대구삼덕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대구삼덕초등학교 제7호, 2024. 1. 8.).

320) 대건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대건중학교 제18호, 2024. 1. 5.).

『제4대국회보고서』에 김○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초순경 희생되었다고 신고되어 있고, 신청인과 참고인들이 희생 시기를 한국전쟁 발발 직후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김○종의 희생 시기는 1950년 7월경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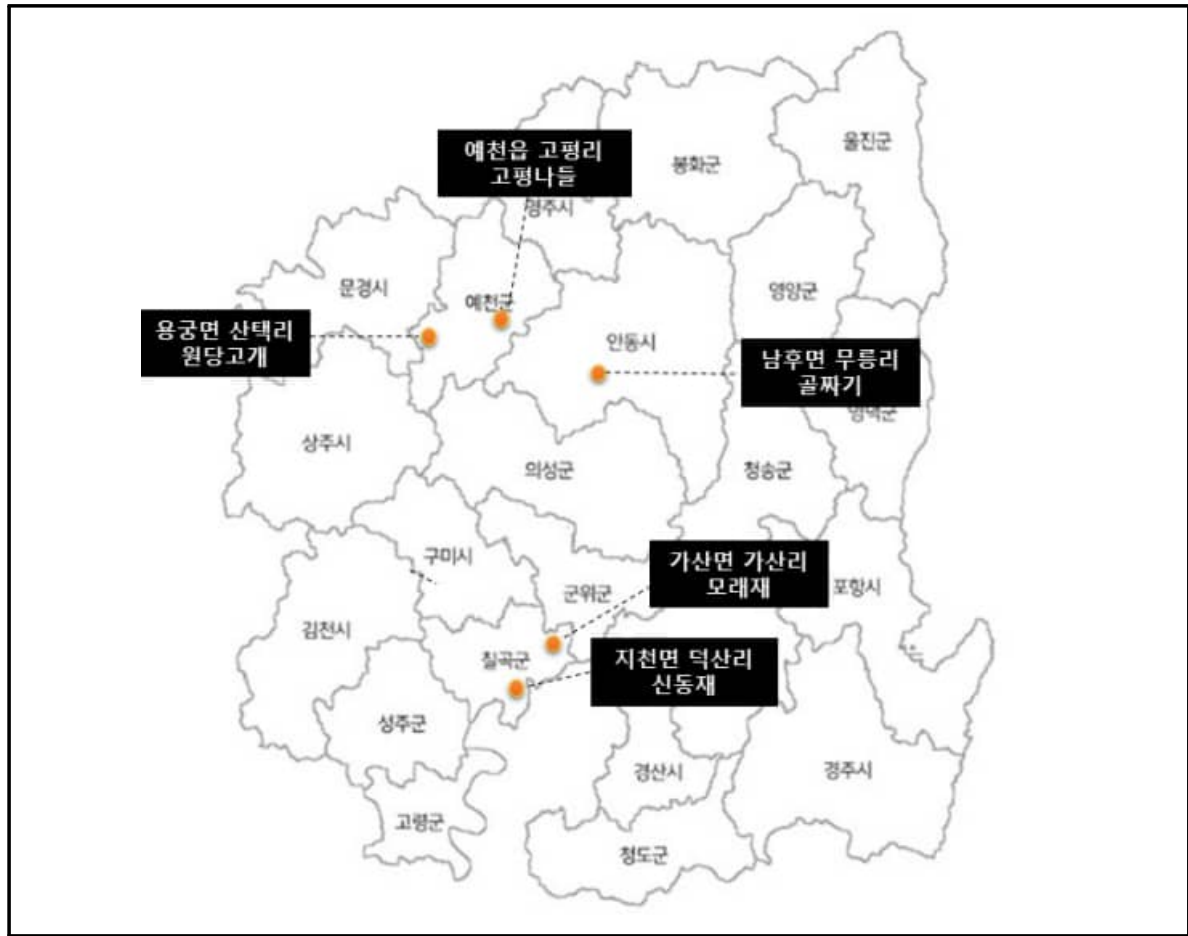
이상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김○원이 김○종의 연행과정과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2)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청인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며, (3) 『제4대국회보고서』에 김○종이 1950년 7월 초순경 연행되었다고 신고된 점, (4) 『6·25 처형자 명단』에 김○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5) 김○원의 대구삼덕초등학교·대진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보호자가 각각 조부와 모로 기재되어 있고, 아버지는 미기재되어 있어 김○종이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종(2다-16041)은 경북 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년 7월경 경찰에게 연행된 후 가창면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희생 장소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제4대국회보고서』, 『피해자현황조사』 등을 검토해 예천지역 (1)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2)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일명 벼락고개), 칠곡지역 (3) 지천면 신동재, (4) 가산면 모래재, 안동지역 (5)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 총 5곳을 이 사건의 주요 희생 장소로 판단하고 2022년 10월 4·5일·19일, 2023년 11월 9일, 2024년 10월 14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³²¹⁾ 이 사건의 희생 현장 위치 및 사진은 <붙임(표) 5>와 같다.

321) 이 사건 진실규명대상자가 희생된 장소는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와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이다.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과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특정된 주요 희생 장소는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와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개포면 경진리 경진나들까지 3곳이었다.

〈지도 2〉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주요 희생 장소



1) 원당고개

원당고개는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³²²⁾에 위치한다.

산택리(山澤里)는 본래 용궁군 구읍면의 지역으로서 뒤에는 고종산이, 앞에는 못이 있으므로 산뚝 또는 산택이라 하였다. 산택리는 1리와 2리로 되어있으며, 1리에 있는 34번 국도 남쪽 바로 옆 연못에서 약 1km 정도 옛 소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누에고치를 키웠던 잠실이 나오고 주민들은 그곳에 있는 고개를 ‘원당고개’ 또는 ‘벼락고개’라 부르고 있다.

조사 결과, ‘원당고개’에서 희생된 대부분의 진실규명대상자들은 예천군 용궁면과 유천면, 지보면 등에서 예비검속된 주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격참고인 이○○는 진실규명대상자 이○천(2다-15696, 용궁면 거주)이 ‘용궁면 산택리’에서 희생되어 ‘산택 골짜기에 열씩 묶여 있던 죽은 사람들 틈에 얼굴을 확인하여 이○천의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³²³⁾ 목격참고인 박○○은

322) 산택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등암리, 산평리, 원당리와 신읍면의 화미동 일부를 병합하여 산택리라 하여 예천군 용궁면에 편입된 곳이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중권: 예천의 생활문화』, 2005, 108쪽.

32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 6. 24.).

진실규명대상자 박○봉(2다-300-2, 용궁면 거주)가 ‘용궁면 산택리’에서 희생되어 ‘부모님이 시신을 수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³²⁴⁾ 참고인 김○○은 진실규명대상자 노○호(2다-1033, 유천면 거주)가 ‘용궁면 산택 못’에서 희생되어 ‘노○○이 노○호의 시신을 수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³²⁵⁾

『제4대국회보고서』 및 『피해자현황조사』에서도 예천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원당고개’로 끌려가 희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진실규명대상자 3명이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에서 희생되었다.

2) 고평나들

고평나들은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에 위치한다.

예천읍에서 안동으로 가는 34번 국도의 구도로가 내성천 위로 지나는데, 내성천에 걸린 다리가 고평다리(고평교)이다. 주민들은 이 다리의 서편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하여 나드리, 나들목이라는 뜻으로서 ‘고평나들’로 부르고 있다. 고평나들은 과거 예천읍 청북리 및 고평리, 호명면 월포리 세 마을의 접경지인 관계로 신청인들은 청북리 고평다리, 고평리 고평나들, 호명면 월포리 고평나들 등으로 진술하였다.

조사 결과, ‘고평나들’에서 희생된 진실규명대상자는 예천군 용문면에서 예비검속된 주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박○완은 진실규명대상자 박○식(2다-16708, 용문면 거주)이 ‘고평나들’에서 희생되었다고 진술했고, 목격참고인 박○○은 ‘아버지가 친구를 데리고 고평나들에 가서 진실규명대상자 박○식의 시신을 수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³²⁶⁾

『제4대국회보고서』 및 『피해자현황조사』에서도 예천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고평나들’로 끌려가 희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진실규명대상자 1명이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에서 희생되었다.

3) 지천면 신동재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산 45-6번지 일대에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천면 신동재’에 대해 2023년 11월 9일 현장 조사 실시 후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등의 내용을 종합해 지천면 신동재를 이 사건의 희생 장소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참고인 오○○(2다-12983)은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가 지천면 신동재에서 희생됐다고 진술했다.³²⁷⁾ 1960년 5월 23일 『대구매일신문』과 1960년 5월 2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324)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 6. 22.).

32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8. 14.).

326)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6. 21.).

“1950년 봄부터 8월 말까지 최소 500~600명의 남녀가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에서 헌병과 경찰들에 의해 20여 차례 이상 학살되었으며, 최소 500명 이상의 시체를 연호동 동장 구○○과 동민들과 함께 묻어줬다는 증언이 있다. 특히 1950년 8월 10일(음력 6월 27일) 오후 3시 트럭 6대에 실린 사람들(대부분이 양복을 입었고 일부가 삼베옷 한복 혹은 수의를 입었음)이 집단학살 당했으며, 구○○은 피난 갔다 온 9월경 그 시체들을 묻어줬다”고 했다.³²⁸⁾ 또한, 대구형무소 재소자 200~300명을 트럭 7대에 태워 신동재에서 사살했다는 당시 국군 제22연대 소속 헌병의 증언도 있다.³²⁹⁾

4) 가산면 모래재

칠곡군 가산면 모래재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 106-5번지 일대에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가산면 모래재’에 대해 2024년 10월 11일 현장 조사 실시 후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등의 내용을 종합해 가산면 모래재를 이 사건의 희생 장소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신청인 권○광(2다-2090-21)은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가 칠곡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가산면 모래재에서 희생됐다고 진술했다.³³⁰⁾ 모래재에서 진실규명대상자의 시신을 수습한 참고인 권○○은 “모래재는 한티재라고도 부르는데 가는 도중 금화지(가산지)라는 저수지가 있고, 거기서 700~800m 정도 올라가면 모래재가 나온다. 사건 당시 모래재로 갔을 때 9개의 구덩이에 흙으로 대충 덮어놓은 9구의 시체가 각각 놓여 있었고, 구덩이 위에는 죽은 사람 이름이 쓰인 꽃말이 있었다. 시신은 봉분만 해서 그 자리에 매장했다”고 증언했다.³³¹⁾

5)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는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산 58-2번지 일대에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에 대해 2022년 10월 19일 현장 조사 실시 후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등의 내용을 종합해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를 이 사건의 희생 장소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신청인 임○우(2다-3226)는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가 남후면 무릉리 계곡에서 희생된 후 시신을 그곳에서 수습했다고 진술했고³³²⁾, 참고인들 역시 무릉리 또는 무릉리 계곡에서 총살된 경위를 들었다고 진술했다.³³³⁾ 당시 안동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영양지역에 거주하던 보도연맹원들도 2트럭 정도 안동 무릉으로 끌려가서 경찰들에게 죽었다는 경찰과 참전군인의 증언도 있다.³³⁴⁾

327) 참고인 오○○ 진술조서(2024. 5. 14.).

328) 『대구매일신문』(1960. 5. 23.); 『세계일보』(1960. 5. 24.).

32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박○○ 면담보고서(2009. 6. 19.).

330) 신청인 권○광 진술조서(2021. 10. 27.).

331) 참고인 권○○ 진술조서(2023. 9. 11.).

332) 신청인 임○우 진술조서(2022. 4. 1.).

333) 참고인 임○○ 진술조서(2022. 7. 7.); 참고인 임○○ 진술조서(2022. 7. 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 7. 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8. 6. 27.).

33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09. 7. 3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30.).

3. 사건조사 결과

가. 희생자 수와 신원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제4대국회보고서』, 『피해자현황조사보고서』, 제적등본, 족보, 행형기록, 학적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의 희생자 총 1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희생자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4대국회보고서』, 제적등본, 『피해자현황조사보고서』 등 공적 기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 및 희생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을 경우 희생자로 확인했다.

(2) 위와 같은 기록이 없는 경우, 족보, 제사, 시신 수습 여부, 행형기록, 학적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면 희생자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이 사건의 희생자 13명에 대한 신원과 희생 판단 근거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희생자 신원과 확인 근거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 진술		사신 수습	제사	기타	비고	
		성명 (한자, 성별, 출생 연도)	당시 거주지	직업 경력	제적 등본 (사망일)	족보 (사망일)	행형 기록	6·25 사변 처형자 명단 (1978)	제4대 국회 보고서 (1960)	1기 기초 사실 (2007~ 2009)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예천군 (진실규명대상자 4명)																	
1	300-2	박○봉 (朴○鳳, 남, 1930)	웅궁면 월오리	학생	1950. 9. 8.	-	-	-	○ (박○○, 부)	○	박○○ (1936, 동생)	안○○ (1941, 이웃) · 김○○ (70대, 이웃)	○	-	「본인 박○봉의 웅궁중 학적부」 1950. 7. 17. 사망	희생 확인	
2	15696	이○천 (李○千, 남, 1926)	웅궁면 월오리	농업	1958. 7. 5.	1950. 6. 1.	-	○	○ (이○○, 숙부)	○	이○○ (1932, 육촌)	안○○ (1940, 이웃)	○	6. 1. (음)	「아들 이○석의 산양초 학적부」 (부 사망)	희생 확인	
3	1033	노○호 (盧○鎬, 남, 1917)	유천면 중평동	농업	1952. 12. 10.	1950. 6. 2.	형사 사건부	○	○ (노○○, 부)	-	윤○○ (1935, 이웃)	김○○ (1944, 며느리) · 박○○ (1942, 이웃)	○	6. 1. (음)	「아들 노○○의 유천초 학적부」 (보호자, 부) · 「아들 노○○의 대창중 학적부」 (보호자 형)	희생 확인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 진술		사신 수습	제사	기타	비고	
		성명 (한자, 성별, 출생 연도)	당시 거주지	직업 경력	제적 등본 (사망일)	죽보 (사망일)	행형 기록	6·25 사변 처형자 명단 (1978)	제4대 국회 보고서 (1960)	1기 기초 사실 (2007~ 2009)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4	16708	박○식 (朴○植, 남, 1915)	용문면 상금 곡리	농업	1961. 10. 15.	1950. 5. 28. (연도 미상)	수용자 신분장	-	-	-	박○○ (1938, 조카)	박○○ (1942, 친척)	○	5. 28. (음)	「아들 박○○의 용문초 학적부」 (부 별세)	희생 확인	
칠곡군 (진실규명대상자 2명)																	
5	2091- 21	권○택 (權○澤, 남, 1926)	석적읍 도개리	농업	1949. 6. 10.	1950. 5. 11.	형사 사건부 (포고령 제2호등 위반 1948. 11.10. 구류 1948. 11.□0. 석방)	○	-	-	권○○ (1936, 9촌)	권○○ (1941, 동생)	○	9. 9. (음)		희생 확인	
6	4728	조○용 (曹○龍, 남, 1920)	대구 (추정)	미상	1950. 7. 15.	-	-	○	○ (조○○, 처)	-	-	조○○ (1940, 조카)	-	여름경	「아들 조○환의 대구 인지초 생활 기록부」 (보호자, 모)	희생 확인	
군위군 (진실규명대상자 1명)																	
7	9890	권○봉 (權○鳳, 남, 1896)	우보면 달산리	농업	1951. 4. 15.	1949. 7. 4.	-	○	-	-	-	황○○ (1935, 며느리) · 권○○ (1936, 9촌)	-	7. 4. (음)		희생 확인	
구미시 (진실규명대상자 3명)																	
8	9547	장○두 (張○斗, 남, 1903)	인동면 인의동	농업	1959. 8. 10.	1950. 6. 18.	형사 사건부	○	○ (노○○, 처)	-	-	장○○ (1943, 먼 친척)	-	6. 22. (음)		희생 확인	
9	12983	김○해 (金○海, 남, 1930)	인동면 인의동	농업	-	-	-	-	-	-	박○○ (1942, 매부) · 오○○ (1964, 생질) · 현○○ (1946, 이웃)	-	-	백중		희생 확인	
10	5010	김○병 (金○炳, 남, 1915)	구미면 신부동	농업	1970. 11. 29.	1950. 5. 20.	-	-	-	-	김○○ (1944, 딸)	김○○ (1942, 먼 친척) · 정○○ (1947, 이웃 마을 주민)	-	6. 10. (음)		희생 확인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규명 대상자			판단 근거													판단 결과
					기록						참고인 진술		사신 수습	제사	기타	비고		
		성명 (한자, 성별, 출생 연도)	당시 거주지	직업 경력	제적 등본 (사망일)	족보 (사망일)	행형 기록	6·25 사변 처형자 명단 (1978)	제4대 국회 보고서 (1960)	1기 기초 사실 (2007~ 2009)	목격 (출생 연도, 관계)	전문 (출생 연도, 관계)						
안동시 (진실규명대상자 2명)																		
11	3226	임○근 (林○根, 남, 1911)	녹전면 원천리	농업	1955. 11. 26.	1949. 6. 16.	-	○	○ (박○○, 처)	-	1기 임○○ (1938, 조카)	임○○ (1942, 처남) · 임○○ (1951, 아들) · 김○○ (1945, 며느리)	○	6. 15. (음)		1기 미신 청회 생자 확인	희생 확인	
12	11400	김○쇄 (金○釧, 남, 1913)	남후면 검안리	농업	1951. 4. 30.	1950. 6. 11.	-	-	-	-	-	김○○ (1944, 이웃) · 김○○ (1937, 조카) · 김○○ (1944, 조카)	○	9. 9. (음)			희생 확인	
영양군 (진실규명대상자 1명)																		
13	16041	김○원 (金○源, 남, 1212)	영양읍 동부리	미곡상	1969. 3. 15.	-	-	○	○ (김○○, 제)	-	-	최○○ (1935, 사위) · 김○○ (1946, 딸)	-	9. 9. (음)	『아들 김○종의 대구 삼덕초 생활 기록부』 (보호자, 조부) · 『아들 김○종의 대건중 생활 기록부』 (보호자, 모)		희생 확인	

나. 희생자의 특징

이 사건의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13명의 거주지별 특성,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희생자 거주지(읍면동)별 분포

거주지	예 천			칠 곡	군 위	구 미		안 동		영 양	합계
	용궁면	유천면	용문면	석적읍	우보면	인동동	신부동	녹전면	남후면	영양읍	
희생자 수(명)	2	1	1	2 ³³⁵⁾	1	2	1	1	1	1	13
비율(%)	15.39	7.69	7.69	15.39	7.69	15.39	7.69	7.69	7.69	7.69	100

〈표 4〉 희생자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합계
희생자 수(명)	13	-	13
비율(%)	100	-	100

〈표 5〉 희생자 연령대별 분포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희생자 수(명)	-	4	7	1	1	13
비율(%)	-	30.8	53.8	7.7	7.7	100

〈표 6〉 희생자 직업별 분포

직업	농업	학생	상업	미상	합계
희생자 수(명)	10	1	1	1	13
비율(%)	76.9	7.7	7.7	7.7	100

조사 결과 이 사건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예천군(4명, 31%)과 구미시(3명, 23%)였으며 희생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희생자의 연령은 대부분 20대와 30대에 집중됐는데 해당 연령대에서 전체 희생자의 약 85%인 11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10명, 77%)에 종사했다.

335) 진실규명대상자 조○용(2다-4728)은 본적지는 칠곡군 석적읍이고 실거주지는 대구로 추정되지만, 주민등록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본적지 기준으로 집계했다.

다. 가해 주체

대부분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이 사건의 가해 주체로 경찰과 국군을 지목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이 사건의 가해 주체로 경찰과 국군을 지목한 바 있다.

1) 예천

조사 결과, 이 사건의 신청인들은 희생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7월 중순경 예천읍 고평나들, 용궁면 원당고개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참전경우회 전국인명부』 중 예천군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참전경찰관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여 경찰과 국군이 이 사건의 가해 기관임을 확인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윤○○은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들이 대구로 후퇴하기 전에 보도연맹원들을 처리하였다.’라며, ‘중앙의 지시를 받은 예천경찰서에서 각 지서로 국민보도연맹원 연행을 지시하였고, 연행된 국민보도연맹원을 경찰서 내 유치장 또는 유도장에 구금한 후 경찰서 후퇴 직전 몇 차례에 나누어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³³⁶⁾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신○○은 이 사건 당시 예천경찰서 경찰이었고,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서 후퇴 직전 경상북도 경찰국 소속 특별경찰대 27~28명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약 30여 명을 용궁면 산택리 등으로 데려가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³³⁷⁾

경찰이 이 사건의 가해 주체였음은 『제4대국회보고서』 및 『피해자현황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제4대국회보고서』와 『피해자현황조사』에는 이 사건 당시 용궁면 월오리에 거주하였던 이○천(2다-15696)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자로서 경찰에 연행, 원당계곡에서 총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봉(2다-300-2)이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 피살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유천면에 거주하였던 노○호(2다-1033)는 ‘보도연맹으로서 6·25 사변 당시 경찰에 구금 피살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4대국회보고서』 중에는 가해자를 군인으로 지목한 신고서가 있었고,³³⁸⁾ 일부는 ‘백골부대’로 특정하였다.³³⁹⁾ 그러나 이 사건의 진술 조사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2)의 가해 주체는 예천경찰서 및 각 지서 소속 경찰이었다.³⁴⁰⁾

336)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결과보고」(조사3팀-882, 2008. 11. 24.), 1~3쪽.

33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결과보고」(조사3팀-882, 2008. 11. 24.), 7~10쪽.

338)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163쪽, 176쪽, 178쪽, 179쪽, 180쪽.

339)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175쪽, 177쪽.

340)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과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군인도 가해 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칠곡

칠곡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칠곡경찰서³⁴¹⁾ 및 각 지서 소속 경찰과 헌병 등 국군으로 판단된다. 내무부 치안국의 비상통첩에 따라 칠곡경찰서는 각 지서에 연락해서 보도연맹원들을 소집·연행해서 칠곡경찰서에 구금했고, 헌병은 이를 인계받아 신동재 등에서 사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이었던 참고인에 따르면, 보도연맹원들은 남로당 가입자들로 그 명단이 지서에 있었고, 남로당 활동 사실과 조사받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요시찰인물로 관리됐으며 전쟁 직후 보도연맹원 소집지시에 따라 직접 소집 통보를 했는데, 이들은 칠곡경찰서로 간 후 행방불명됐다. 당시 왜관읍에 방첩대(CIC) 파견대가 주둔했고, 계급장 없는 군복이나 사복을 입고 2인 1조로 활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³⁴²⁾

사건 당시 북삼지서장이었던 참고인은 1950년 8월 3일 왜관철교가 폭파되기 직전 칠곡경찰서 사찰계 지시로 북삼면 보도연맹원 30여 명을 트럭에 실어 보냈는데, 그들은 신동재, 칠곡면(읍내동 안양·아시마을)에서 사살됐으며 가창, 앞산 등에서도 희생자들이 있다고 진술했다.³⁴³⁾ 또한,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에서 많은 민간인이 헌병에게 사살되었다는 내용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미군의 극비문서가 발견되면서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사건의 보고자는 미 제1포병사단 소속 프랭크 피어스 중사인데 “1950년 8월 10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대구에서 북쪽으로 약 13km(원문에는 8마일로 표기) 떨어진 야산 계곡에서 한국군 장교의 지시에 의해 무장한 헌병들이 여성을 포함한 200~300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했으며, 확인 사살을 하는 등 3시간 동안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³⁴⁴⁾

이상의 참고인 진술과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칠곡경찰서로 이송된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서 유치장 및 인근 창고에 일시 구금된 후 사찰계 형사와 칠곡 주둔 CIC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군위

군위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군위경찰서³⁴⁵⁾ 및 각 지서 소속 경찰과 CIC 등 국군으로 판단된다. 사건 당시 효령·산성지서에서 근무한 참고인 홍○○·안○○에 따르면, 남로당원들은 요시찰인으로 분류된 후 보도연맹에 가입됐고, 한 달에 두 번씩 본서 사찰계 형사나 지서 순경들은 이들의 동태를 파악했으며, 전쟁이 나자 경북지방경찰국에서 군위경찰서를 시켜 각 지서로 이들

341)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령 136호에 의거 칠곡군 왜관면에 왜관경찰서를 설치하고, 1946년 4월 11일 '제5관구 경찰국 제15경찰서'로 조직변경, 1949년 2월 23일 칠곡경찰서로 명칭이 환원되었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1055~1059쪽.

34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나○○(라○○) 조사보고서(2009. 4. 18.; 2009. 5. 7.).

34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마○○ 진술녹취록(2009. 3. 27.).

344) 김동춘, 『월간참여사회』, 2001, 7월호; 김기진,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233~237.

345)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3호에 의거 군위경찰서가 설치되고, 1946년 4월 11일 '제5관구 경찰청(경상북도) 제11구 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 환원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경상북도경찰청 관할 시군 경찰서 사례를 볼 때 1949년 2월 13일 군위경찰서로 명칭이 환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1135~1139쪽.

을 연행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는데 이들 중 간부급들은 경찰이 대한청년단원을 동원해 지서로 연행해서 본서로 이송됐다.³⁴⁶⁾

경찰서로 연행된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서 유치장 및 인근 창고에 구금됐고, 이후 사찰계 형사와 일심여관에 주둔 중이던 CIC에 의해 처형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됐다.³⁴⁷⁾ 당시 소보 지서에 근무한 참고인 김○○은 “보도연맹원들이 처형될 당시 군위지역에 4~5명의 CIC대원들이 일심 여관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경찰서 유치장과 인근 창고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을 CIC가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갑, 을, 병으로 분류했다”라고 했다.³⁴⁸⁾ 처형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경우, 우보면 나호동(비호골) 골짜기와 소보면(화창) 골짜기 등지에서 처형됐다.³⁴⁹⁾ 군위경찰은 경찰서 GMC트럭 2대로 하루에 몇 차례에 걸쳐 보도연맹원들을 우보면과 소보면의 산골짜기로 데려가 총살했다. 당시 트럭에 실린 보도연맹원들은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 고개를 숙인 상태였으며, 경찰과 CIC의 감시 아래 처형장소로 이송됐다.³⁵⁰⁾

이상의 참고인 진술과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군위경찰서로 이송된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서 유치장 및 인근 창고에 일시 구금된 후 사찰계 형사와 군위 주둔 CIC에 의해 분류과정을 거친 후 사살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구미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구미(선산)경찰서³⁵¹⁾ 및 각 지서 소속 경찰과 헌병 등 국군으로 판단된다. 사건 당시 구미(선산)경찰서 산동지서에 근무하던 참고인 이○○에 따르면, “당시는 보도연맹원 명부를 보고 지서에서 잡아들이고 본서로 넘기고 그랬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보도연맹이다 뭐다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와 있었다. 그때 감방 안에 4~명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형사들이 금오산이나 북삼 넘어가는 골짜기에서 처형했는데, 처형은 사찰계 형사가 관여했다”라고 진술했다.³⁵²⁾ 당시 선산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최○○은 “구미지역에서 후퇴하기 전 선산경찰서에 보도연맹원 100~200명이 구금되어 있었다. 유치장 공간이 모자라서 경찰서 내 회의실로 쓰던 가건물을 유치장으로 사용했다. 그들은 경찰이 후퇴하기 2~3일 전 대구로 이송시킨다고 실려 갔지만 금오산에서 처리됐다고 알고 있다. 보도연맹원들은 형사급에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³⁵³⁾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이○○은 “1950년 7월 24일 선산경찰서 경찰이 보도연맹원 문화부

346)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홍○○ 진술녹취록(2009. 4. 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안○○ 면담보고서(2009. 5. 18.).

34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홍○○ 진술녹취록(2009. 4. 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9. 4. 17.).

34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9. 4. 17.).

349)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홍○○ 진술녹취록(2009. 4. 3.); 참고인 안○○ 면담보고서(2009. 5. 18.); 참고인 김○○ 진술녹취록(2009. 5. 19.); 참고인 박○○ 면담보고서(2009. 6. 18.).

350) 참고인 홍○○ 진술녹취록(2009. 4. 3.).

351) 1914년 8월 27일 선산경찰서가 신설되었고, 1978년 2월 15일 직제변경에 따라 ‘구미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71~978쪽.

35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09. 6. 16.).

35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최○○ 면담보고서(2009. 7. 13.).

장이던 아버지 이○○을 연행했다. 다음 날 새벽 여러 명이 트럭에 태워졌고, 트럭에 탄 사람들이 이제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³⁵⁴⁾ 이렇게 각 지서로부터 연행되어 본서로 이송된 보도연맹원들은 군에 인계되어 헌병과 CIC가 담당했다.³⁵⁵⁾ 이상의 참고인 진술과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구미(선산)경찰서로 이송된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서 유치장 등에 일시 구금된 후 사찰계 형사와 구미 주둔 국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안동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안동경찰서³⁵⁶⁾ 및 각 지서 소속 경찰과 국군으로 판단된다. 전쟁 전부터 안동경찰서 의용경찰로 근무했고, 수복 후 안동경찰서로 복귀해서 와룡지서 차석, 안동경찰서 사찰계 형사로 근무한 참고인 박○○은 자신이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 업무에 참여했는데, 치안국에서 명령이 내려와 안동경찰서가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해서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20여 명, 무도관에 50여 명, 동북초등학교에 100여 명을 구금한 후, 경찰과 군인이 남후면 쓰레기 집하장 부근, 무릉계곡 부근, 서지미 고개 부근에서 총살했다고 진술했다.³⁵⁷⁾

참고인 최○○은 국군 제19연대로 입대했다가 25연대 창설 시 제1대대 제1중대 제1소대 분대장(이등중사)으로 배속되어 영덕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한 후, 전쟁이 발발하면서 안동으로 이동하여 안동 시내에 주둔했는데, 안동에서 후퇴할 때 제1중대 제1소대원 12명이 안동형무소에 갇혀 있던 보도연맹원 200여 명을 트럭에 50명씩 태워서 안동에서 10리도 안되는 곳의 다리를 건너 산골짜기에서 총살했다고 진술했다.³⁵⁸⁾ 국방부에서 편찬한 『한국전쟁사』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 제25연대 제1대대가 안동지역에 주둔한 사실과 7월 13일 8사단에 배속되고 이후 8사단 21연대 1대대로 편입·개편되어 안동지구 전투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⁵⁹⁾ 이상의 참고인 진술과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안동경찰서로 이송된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서 유치장 등에 일시 구금된 후 사찰계 형사와 안동 주둔 국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영양

영양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영양경찰서³⁶⁰⁾ 소속 경찰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찰에게 연행된 후 대구 방면으로 끌려가서 학살됐다고 주장

35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이○○ 진술조서(2008. 12. 27.).

355)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6. 1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도○○ 진술녹취록(2009. 9. 22.).

356) 1906년 ‘안동분서’가 설치된 후 1908년 7월 20일 안동경찰서로 승격되었다. 1946년 4월 11일 조직변경에 따라 ‘제7구경찰서’로 개칭된 후 1949년 2월 13일 안동경찰서로 명칭이 환원되었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86~997쪽.

357)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8. 11. 4.).

358)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최○○ 면담보고서(2008. 8. 21.).

3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70, 332쪽, 377쪽, 639쪽, 930~931쪽.

360) 1906년 ‘안동분서’가 설치된 후 1908년 7월 20일 안동경찰서로 승격되었다. 1946년 4월 11일 조직변경에 따라 ‘제7구경찰서’로 개칭된 후 1949년 2월 13일 안동경찰서로 명칭이 환원되었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986~997쪽.

했고³⁶¹⁾, 참고인도 진실규명대상자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영양경찰서에 구금됐다가 희생됐다고 진술했다.³⁶²⁾ 또한 『제4대국회보고서』에는 진실규명대상자가 6·25사변 발발 직후인 7월 초순경 영양경찰서 사찰주임이 검속해서 안동에 송치했다고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참고인 진술과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영양경찰서 경찰이 이 사건의 주요 가해 주체로 판단된다.

라. 가해의 위법성 여부

한국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도 경찰국에 치안국장 명의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이라는 비상통첩을 무선전보로 보냈다. 통첩의 주요 내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이었다. 치안국은 추신을 통해 인원과 수용관계를 고려하여 ‘각 지서에서는 요시찰인 중 특히 의식계급으로써 사찰대상이 된 자에 한하여 우선 구속하고 성명·연령·주소를 명기하고 보고 할 것’을 지시했다.³⁶³⁾

이어 치안국은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했다. 이 중 6월 30일에 있었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은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라는 제목의 치안국장 통첩을 하달하여 전국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³⁶⁴⁾ 이와 같은 일련의 치안국장 명의로 통첩을 근거로 경북 칠곡·의성·군위·구미·안동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한 것은 당시 「계엄법」이나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행위이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계엄법」³⁶⁵⁾ 제13조는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송요찬 헌병사령관은 1950년 7월 12일, 계엄사령관 정일권의 명령에 따라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했다. 이후 이 계엄은 7월 21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³⁶⁶⁾

그러나 전시에 계엄법상 체포·구금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현행범이 아닌 자에 대해 미래의 범죄 위험 가능성만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제헌헌법」 제28

361) 신청인 김○원 진술조서(2023. 2. 17.).

36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9. 12.).

363)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391~392쪽.

364)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391~392쪽.

365) 「계엄법」 [시행 1949. 11. 24.] [법률 제69호, 1949. 11. 24., 제정].

366) 진실화해위원회,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632쪽;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394쪽, 518~519쪽.

조367)에 규정된 최소침해의 원칙을 포함한 비례의 원칙³⁶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³⁶⁹⁾ 또한 국민보도연맹원 등의 예방구금에 관한 「체포·구금특별조치령」 관련 규정에는 그 조건을 ‘군작전상 필요’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방구금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설사 전쟁 발발 직후 군사상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³⁷⁰⁾

당시 좌익활동 가담자 또는 좌익사상 소지 혐의자를 간첩죄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으로는 「(구)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 있었다. 이 중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에서, 「(구)형법」과 「국가보안법」, 「특별조치령」을 위반하였으면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있었다.³⁷¹⁾

따라서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법관의 영장주의(제9조) 등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제22조)를 침해한 위법행위이다.³⁷²⁾

마. 유족의 피해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유족들의 피해는 소중한 가족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유족들은 대부분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피해자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지내야 했으며, 좌익혐의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367)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서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68)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민간인의 희생을 동반하는 공격을 할 경우 군사적 이익에 비해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의 피해가 과도하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521쪽.

369) 1953년 헌법위원회는 계엄법 제13조의 위헌 여부 결정 제청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에 수반할 계엄사령관의 공포 또는 포고 중 계엄지구에 있어서는 체포·구금·수색에 관하여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부분과 검찰청이 법관의 영장 없이 검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체포·구금·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모두 계엄법 제13조의 법의를 억측 곡해함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됨이 명료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위원회, 「위헌여부결정제청사건 결정서」(1953. 10. 8. 결정 4286년 헌위2)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0년사』, 1998, 75쪽.

370)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521~522쪽.

371) 1952년 9월 9일 헌법위원회는 ‘특별조치령’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며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2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 제76조 제2항의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3심제의 대원칙을 확립하여 무릇 소송이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심제인 행정소송이 또한 그러하고 단심제인 선거소송까지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 각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최종심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합귀일케 함이 헌법 제22조 및 제76조 제2항의 대정신이다. 그런데 긴급명령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는 국민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22조, 제76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0년사』, 1998, 20~21쪽.

372) 진실화해위원회,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632~633쪽.

이 중 유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경제적 빈곤이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대의 남성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고, 자녀는 교육의 기회를 누리기 어려웠다.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거나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였다.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부족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남은 자식들을 책임져야 했고³⁷³⁾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대물림되었다. 자녀들은 취업이 되었어도 연좌제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고,³⁷⁴⁾ 손자녀가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국가 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³⁷⁵⁾ 신청인 권○택은 군 입대 시 육군항공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28사단에서 항공정비를 맡았는데, 적성에 맞아 상병 무렵 장기 지원을 했지만, 신원조회에 걸려 특기도 보병으로 바뀌고 안동 36사단으로 전출된 바 있다.³⁷⁶⁾ 신청인 장○진은 군 복무 시 서무계에 근무할 때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³⁷⁷⁾ 진실규명대상자 사후부터 가족들이 마을에서 나가거나 마을로 돌아올 때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출입을 통제받고, 일가친척이 모이면 파출소에서 방위대를 데리고 와 구타하여 요양하기도 하였다.³⁷⁸⁾

이 사건의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희생자들이 무엇 때문에 희생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국가의 감시와 좌익의 가족이라는 차별을 받으며 7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또한, 유족들은 연좌제로 인한 취업의 제한을 받는 등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도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³⁷⁹⁾

37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8. 14.).

374) 신청인 노○완 진술조서(2023. 7. 1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8. 14.);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7. 6.).

375) 신청인 노○완 진술조서(2023. 7. 10.);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6. 21.).

376) 신청인 권○광 진술조서(2021. 10. 27.).

377) 신청인 장○진 진술조서(2023. 2. 9.).

378)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6. 21.).

379) 신청인 박○봉 진술조서(2022. 7. 1.); 신청인 이○석 진술조서(2023. 6. 5.); 신청인 노○완 진술조서(2023. 7. 10.); 신청인 박○완 진술조서(2023. 6. 5.); 신청인 권○광 진술조서(2021. 10. 27.); 신청인 조○환 진술조서(2022. 3. 31.); 신청인 권○억 진술조서(2022. 5. 26.); 신청인 장○진 진술조서(2023. 2. 9.); 신청인 오○석 진술조서(2023. 2. 16.); 신청인 김○인 진술조서(2022. 3. 18.); 신청인 임○우 진술조서(2022. 4. 1.); 신청인 김○동 진술조서(2022. 7. 1.); 신청인 김○원 진술조서(2023. 2. 17.).

Ⅲ. 결론 및 권고 사항

1. 결론

- 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 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경북 예천·칠곡·군위·구미·안동·영양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연행되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경찰과 국군 등에 의해 1950년 6월 말에서 8월 사이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일명 벼락고개),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칠곡군 가산면 모래재,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 등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여 희생자 총 1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박○봉(朴○鳳, 2다-300-2), 이○천(李○千, 2다-15696), 노○호(盧○鎬, 2다-1033), 박○식(朴○植, 2다-16708), 권○택(權○澤, 2091-21), 조○용(曹○龍, 2다-4728), 권○봉(權○鳳, 2다-9890), 장○두(張○斗, 2다-9547), 김○해(金○海, 2다-12983), 김○병(金○柄, 2다-5010), 김○쇄(金○釗, 2다-11400), 김○중(金○鍾, 2다-16041)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희생 확인)된 임○근(林○根, 2다-3226)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결정을 확인했다.
- 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들은 남성으로 대부분 20~30대(85%)였으며 농업(77%)에 종사했다. 거주지별로는 예천군과 구미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 국군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
- 마.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 권고 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적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역사 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붙임

〈붙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적 · 전문	주요 진술
예천						
1	300-2	박○봉 (1950년)	박○봉 (朴○鳳, 1930년, 형)	2022. 7. 1. 예천군청 영상회의실 · 진술조서	전문 (아버지, 어머니, 이웃)	●박○봉은 용궁면 월오리에 거주하며 용궁면 소재 용궁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전쟁 나던 해 여름에 경찰에 연행되어 희생되었음. ●한국전쟁 발발 전 여름, 지서에서 모임이 있다며 마을 청년들을 소집한 일이 있었고, 얼마 후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와 박○봉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제로 연행해갔다고 함. ●경찰의 소집을 받고 나간 청년들이 모두 사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봉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사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함. ●박○봉보다 먼저 비슷한 경위로 박○봉의 삼촌 박○○(2다-300-1의 진실규명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박○○의 시신은 경비가 삼엄하여 임시로 야산에 매장해 놓고 나중에 제대로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음. 박○봉의 시신은 용궁면 소재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가 이후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로 이장함. ●박○봉의 기제사는 지내고 있지 않으며, 명절 때만 지냄. * 당시 용궁고등공민학교였음.
2	15696	이○석 (1952년) * 실제 1950년생임.	이○천 (李○千, 1926년, 아버지)	2023. 6. 5. 진실화해 위원회 조사실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재종숙부, 재종숙모, 당고모)	●이○천은 용궁면 월오리에 거주하였으며, 1950년 음력 5월(양력 7월 중순)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용궁지서에 감금되었다가 용궁면 산택에서 희생되었음. ●이○천은 용궁면 월오리의 주민으로 한문 공부를 많이 한 선비였고 농사를 지었음. ●우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동네로 20가구 이내가 살았고, 성주 이 씨, 안 씨가 주로 거주하였음. ●남로당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스무 살 넘는 사람은 가입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였다고 함. 이○천이 폐병으로 누워있는데 총을 겨누며 위협하여 남로당에 가입이 되었으나, '마당을 못 나왔'다는 정도의 병세라 실제 활동은 없었다고 함. ●1950년 음력 5월(양력 7월 중순), 이○천이 집으로 온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용궁지서에 구금되었고, 이 기간에 이○천의 사촌누이(작은할아버지 이○○의 딸)가 4킬로미터 거리를 걸어서 밥을 가져다주었다고 함. 이○천의 아내는 4월에 출산하여 갈 수 없는 처지였음. ●구금되고 약 일주일 후 용궁면 산택(산택)에서 총살되어 이○천의 숙부 내외, 이○천의 육촌동생 이○○가 현장에 갔음. 먼저 온 다른 유족들이 시신을 식별해서 찾느라 얼굴을 닦아 놓았고, 새끼줄로 손목을 묶고 여러 사람을 연결해

연번	사건 번호 (2다 -)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적 · 전문	주요 진술
						놓아서 이쪽에서 줄을 당기면 여러 사람이 들썩었다고 함. •시신을 모셔 와 문중 산에 모셨고, 제삿날은 6월 1일이며, 현재 기독교식으로 추도식을 지냄. •신청인은 호적에 1952년생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950년 4월 1일생이고, 아버지 사후에 큰아버지의 양자로 입적되었다가 큰아버지가 득남하여 파양될 때까지 원래 이름인 '이○석'으로 기록되었으나, 파양되어 친부모의 호적으로 돌아올 때 '이○석'으로 새로 입적되었다고 함. 이○천-이○석의 관계가 부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족보에서 확인됨.
3	1033	노○완 (1965년)	노○호 (盧○鎬, 1917년, 할아버지)	2023. 7. 10. 위원회 조사실 · 진술조서	전문 (아버지, 할머니, 고모, 어머니)	•노○호는 예천 유천면 중평리에 거주하였으며,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산택에서 희생되었음. •노○호는 경북 예천군 유천면 중평리의 주민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거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등 공적인 일을 하였다고 함. •선조 중에 영의정이 나왔고, 선대에서 학당을 세워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고, 사서 삼경 같은 책이 있었음. 노○호는 사회주의 활동을 하였는지 '빨○이'라는 얘기를 들었음. •노○호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동네에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이 몇 있다고 들었고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고, 노○호도 같이 잘살자는 생각을 가졌다고 함. •전쟁이 난 후 면식이 있는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노○호를 연행했고, 중간에 도망갈 기회를 주느라 화장실 가라고 풀어줬는데 그냥 가서 산택에서 총살되었다고 함. •시신을 수습하여 동네 뒤 문중 산(장등산)에 산소를 썼고, 음력 6월 초하루에 제사를 지냄. •당시 예천 일대에서 여럿이 끌려가 희생되었고, 앞집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과 장○○ 씨의 아버지도 같이 활동하여 잡혀갔으나 중간에 빠져나와 생존하였다고 함. •신청인의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어딘가로 자주 불려 다녀왔고, 다녀와서는 울곤 하셨음. 신청인이 군생활 중에 보안대에서 민간인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빨갈다, 조심하라.'라고 하는 일이 있었고 호적에 빨간 줄이 있었음. •신청인은 아버지로부터 '나서지 말라, 공직에 가지 말라, 고시는 보지 말라'고 들었음.
4	16708	박○완 (1969년)	박○식 (朴○植, 1915년, 할아버지)	2023. 6. 10. 더 발렌 · 진술조서	전문 (아버지, 할머니, 당숙)	•박○식은 예천 용문면 상금곡리에 거주하였으며, 1950년 음력 5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고평나들에서 희생되었음. •박○식은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금당실)의 주민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회계직으로 직장을 다녀 돈을 많이 벌었고, 귀향 후 면사무소에 다녔음. •전쟁이 나서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 여름, 박○

연번	사건 번호 (2다 -)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적 · 전문	주요 진술
						식은 집으로 찾아온 경찰 2명에게 연행되어 예천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3일 후 고평나들능선에서 총살되었다고 함. •시체 더미에 덮여 생존한 사람이 '경찰들이 차 위에서 총을 쏘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서 확인 사살을 했다.'라고 전하였다고 함. •박○식의 아버지가 사람을 사서 박○식의 시신을 찾아 지게로 모셔 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묘 깊이를 평소보다 두 배는 더 깊게 파서 매장하였다고 함. •박○식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묘를 만들려고 박○식의 묘를 이장할 때 유골을 확인했음. •음력 5월 28일(양력 7월 13일)에 제사를 지냈음. •신청인의 아버지는 연좌제를 우려하여 박○식의 사망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강원도 정선에서 사망하였다고 신고하였음.
칠곡						
5	2091-2 1	권○광 (1948년)	권○택 (權○澤, 1926년, 아버지)	2021. 10. 27. 경주시 동천동 행정복지 센터 2층 · 진술조서	전문 (할머니, 마을 어른)	•아버지 권○택(칠곡군 석적면 도개동)은 5남 3녀 중 둘째로 어머니 김○○과 혼인해서 저를 낳았고, 농사를 지었음. •마을은 당시 60~70가구 정도 살았음. •1949년경 마을 이장이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테니 보도연맹원 명부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도장을 찍을 때 아버지도 도장을 찍어 줬다고 함.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음력 6월 초순, 칠곡경찰서 경찰이 찾아와 아버지 등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연행했음. 그 후 아버지는 약 7일간 칠곡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가사면 모래재로 끌려가서 10여 명과 같이 총살됐다고 함. 제사는 9월 9일에 지내고 있음. •도개마을에서는 아버지 혼자 끌려갔고, 인근 망정2리(절골)에서도 2명 정도가 같이 희생됐다고 들었음. •어머니 김○○은 재혼한 후 소식이 끊겼음.
				2024. 9. 22. · 통화보고서	전문 (할머니, 마을 어른)	•제가 대구에서 출생한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선 사건 이전 부친이 대구에서 잠깐 산 적이 있는 걸로 짐작됨.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1949년 6월 10일(1953년 4월 15일 권○○ 신고)로 희생 시기와 차이나는 이유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당시 시대 상황이 부친을 사변 때 돌아가신 걸로 신고하면 가족들도 빨○이 가족이라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삼촌이 그렇게 신고한 듯함. •당시 부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희생자인 가산면 모래재에 그대로 표식을 해서 묻었고 그곳에 돌비석이 있음.
6	4728	조○환 (1943년)	조○용 (曹○龍, 1920년, 아버지)	2022. 3. 31. 대구시청 별관 1층 대구스마트시티	전문 (어머니)	•아버지 조○용은 4형제 중 둘째로 본가인 칠곡군 석적면 남율동에 거주할 때 보도연맹에 가입했고 경찰 호출을 자주 받았다고 함. •고모부도 아버지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연번	사건 번호 (2다-)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적 · 전문	주요 진술
				지원센터 · 진술조서		경찰에게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함. •사건 이전 아버지는 대구로 이사해서 비산1동 원교개 근처에서 셋방살이를 했는데, 집 앞에 철길과 주막,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고, 집에서 조금 내려가면 들마를 연못이 있었음. 당시 아버지는 뚜렷한 직업은 없었던 듯하고 집을 자주 비웠음. •1950년 여름경 아버지 조○용과 삼촌 조○○은 대구에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실종됐는데 거창으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있었음. •삼촌 조○○이 자택에서 경찰에게 연행될 때 숙모가 목격했다고 함. •아버지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어머니 생전에는 아버지가 연행된 여름경 지내오다가 현재는 종교 문제로 지내지 않고 있음.
				2024. 9. 23. · 통화보고서	전문 (어머니)	•희생자가 거창인지 가창인지는 확실하지 않 않음.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고모부는 셋째 고모(막내 고모)*의 남편으로 성은 이씨라고 들었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음. * 호적에는 조○○이 셋째 고모임.
군위						
7	9890	권○억 (1967년)	권○봉 (權○鳳, 1896년, 할아버지)	2022. 5. 26. 군위군청 3층 소통협력실 · 진술조서	전문 (아버지)	•할아버지 권○봉(이명: 권○선, 군위군 우보면 달산동)은 1950년 7월경 논에서 일하던 중, 이 웃인 권○○, 권○○, 문○○ 등과 군위경찰서 우보지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됨. 권○○, 권○○, 문○○은 풀려나고 할아버지는 고문을 당한 후 군위경찰서로 이송되었으나 이후 소식이 두절됨. •당시 연행된 사람들이 효령면, 소보면 일대에서 희생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현장을 찾아가 보았으나 할아버지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함. •할아버지가 연행될 당시 할머니도 인민군에게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당시 아버지가 우보지서를 방문하여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다고 함. •저는 할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였으나 친척들을 통해 할아버지가 좌익활동 관련으로 연행되었다고 들었음. •당시, 작은고모 권○○(사망)가 아버지가 연행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함. •제사는 음력 7월 4일에 지내고 있음. (족보에는 사망 일자가 1949. 7. 4.로 기재되었으나 잘못 기재되었다고 함) •저의 5촌 아재가 연좌제로 인해 육사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음.
구미						
8	9547	장○진 (1948년)	장○두 (張○斗, 1903, 아버지)	2023. 2. 9. 대구시청 산격청사 201동 스마트시티지원	전문 (어머니, 마을 주민)	•아버지 장○두(칠곡군 인동면 인의동[現 구미시 인의동])는 농사를 지었는데, 노동운동을 한다고 밖으로 많이 다녀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음. 당시 집안 친척 20~30여 명도 좌익활동을 했음. •마을은 인동 장씨 집성촌으로 '남산'이라 불렀

연번	사건 번호 (2다 -)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 전문	주요 진술
				센터 1층 회의실 · 진술조서		고, 당시 80가구 정도 살았는데, 아버지의 집은 남산파 종택 옆집에 있었음. •1950년 7월경 아버지는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인동지서 경찰(성명 미상)에 의해 연행된 후 실종되었음. 그 후 마을 사람(성명 미상)이, 아버지가 대구형무소로 끌려갔다가 8월 1일경 총살되었다고 알려줬음. •시신은 희생 장소를 알지 못해 수습하지 못했지만, 제사는 8월 1일에 지내고 있음. 족보상 사망일은 1950년 6월 18일(음력)임. •어머니는, 아버지가 해방 이후 좌익활동과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 희생된 원인이라고 말했음. •사건 이전 마을 주민 여러 명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신동(새울) 주민 3명, 인동(남산) 주민 2~3명이 희생되었음. 그 중 신동 주민 장○○은 1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되었음. •당시 아버지의 친구 박○○은 보도연맹원이었지만 경찰에게 끌려가지 않았음. 그는 마을에 계속 살다가 사망했고, 현재 그의 가족 행방은 알지 못함. •아버지의 희생 경위는 마을 주민 장○○이 알고 있음. •가족은 마을에 계속 살다가 진술인이 6살 때 둘째 형 장○○이 양자로 들어간 신동(새울)으로 이사했음. •가족은 특별히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본 적은 없음. 다만, 진술인이 군 복무 시 서무계에 근무할 때, 신원조회에서 걸렸는지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못했던 적이 있음.
9	12983	오○석 (1959년)	김○해 (金○海, 1930, 외삼촌)	2023. 2. 16.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2층 소회의실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마을 주민)	•외삼촌 김○해(칠곡군 인동면 인의동[現 구미시 인의동])는 농사를 지었는데, 대대로 향반 집안이라 한학을 배워서 필체가 좋았음. •외삼촌은 어머니(김○○)가 국민학생일 때 대구 교대에 보내준다고 약속할 정도로 의식이 깨어 있는 분이었고, 당시 미혼이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음. •1950년 6월경 외삼촌은 보리가 익을 무렵 집에서 저녁을 먹고 마실을 나갔다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소속, 성명 미상)에 의해 연행된 후 실종되었음. 같은 날 마을 주민 윤씨(이름 미상)도 경찰에게 끌려간 이후 실종되었음. •외삼촌의 시신은 희생 장소를 알지 못해 수습하지 못했지만, 제사는 백중날(음력 7월 15일) 등절에 행사가 있을 때 지내고 있음. •진술인은 희생 경위를 어머니(김○○)에게 들었음. 어머니는 당시 인동국민학교 5학년으로 사건 당일 집에서 외삼촌과 같이 식사했고, 외삼촌이 집을 나가는 것을 목격했음. •외삼촌은 친구들과 어울려 청년 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

연번	사건 번호 (2다 -)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적 · 전문	주요 진술
						한 활동을 했는지는 알지 못함. •외삼촌은 한국전쟁 이전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편지와 사진 등을 불태웠다고 함. 어머니가 왜 태우는지 묻자, 외삼촌이 “이건 다 태워야 해, 가지고 있으면 안 돼”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 본인의 신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태웠던 듯함. •진술인은 외삼촌이 1947년 12월 31일경 대구 칠성동 조선국방경비대 제1연대 제1중대 3소대 3(또는 5분대)에 근무할 때, 집으로 보낸 편지 봉투 원본을 간직하고 있음. 조선국방경비대는 좌익들이 많이 복무했다고 들었으니 외삼촌도 좌익활동을 하다가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함. •진술인은 외삼촌을 마을 인근 인동지서 또는 칠곡군청 소재지가 있는 왜관경찰서에서 연행했을 것으로 생각함. •전쟁이 끝나고 외할아버지는 출가해서 도장골에 ‘동해사’라는 사찰을 짓고 대처승으로 살다가 사망했으며, 가족이 특별히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본 적은 없음.
10	5010	김○인 (1947년)	김○병 (金○炳, 1915년, 아버지)	2022. 3. 18. 진실화해 위원회 6층 3조사실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아버지 김○병(구미면 신부동)은 농사를 지었음. •1950년 7월경 아버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사복을 입은 형사 2명이 찾아와서 선산경찰서로 연행·구금했음. 아버지가 연행될 때 어머니와 누님 김○○가 목격했음. •어머니가 선산경찰서로 가서 왜 죄가 없는 사람을 가뒀냐고 하니, 경찰이 소 한 마리 값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고 했음. 어머니는 그 길로 친정집 등을 돌아다니며 돈을 구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경찰서로 다시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하니, 경찰은 아버지가 벌써 대구로 이송됐다고 알려줬음. •어머니는 그 와중에 동생 김○○을 출산했음. 출산 후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 아버지 소재를 알아봤지만, 경찰은 이미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알려줬다고 함. •그 후 아버지가 금오산 자락에서 선산경찰서 경찰에게 총살됐다는 소문이 퍼졌음. •아버지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제사는 음력 6월 10일에 지내고 있음. •사건 이후 마을 주민들이 저를 빨○이(진술인의 표현) 아들이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버지가 연행된 이유도 그와 연관이 있을 거라 짐작됨.
안동						
11	3226	임○우 (1966년)	임○근 (林○根, 1911, 할아버지)	2022. 4. 1. 대구시청 산격청사 201동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전문 (아버지, 마을 어른)	•할아버지 임○근(녹전면 원천1리)은 농사를 지었음. •마을은 ‘길명’이라고 불렸고, 올진임씨 집성촌으로 당시 20가구 정도 살았음. •1950년 7월경 할아버지 임○근과 종조할아버지 임○○*은 논에서 풀을 베던 중, 경찰에 의해

연번	사건 번호 (2다 -)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 전문	주요 진술
				1층 회의실 · 진술조서		50여 명의 사람과 같이 녹전지서로 연행됐다가 남후면 무릉리 계곡(현재 한티재 부근)으로 끌려가서 총살됐다고 함. *임○○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2009. 11. 3.)」으로 진실규명 결정(희생 확인)됨. ●할아버지의 외삼촌과 마을 어른들이 현장으로 가보니 시신 50여 구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다른 마을 주민들도 시신을 찾으려 많이 와 있었다고 함. ●도민증을 보고 할아버지 시신을 확인했는데, 가슴과 등 몇 군데에 총알이 관통해 있었다고 함. 임○근과 임○○의 시신은 같은 날 수습했고, 제사도 음력 6월 15일에 같이 지내고 있음.
12	11400	김○동 (1948년)	김○쇄 (金○釧, 1913, 아버지)	2022. 7. 1. 대구시청 산격청사 201동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1층 회의실 · 진술조서	목격 (연행) 전문 (어머니, 사촌, 마을 주민)	●아버지 김○쇄(안동시 남후면 검암1동)는 1950년 5월에서 6월 사이 남후주재소 경찰에 의해 연행된 이후 일자미상경 한티재에서 총살되었음. ●누군가(성명 미상)가 희생 장소를 알려줘서 어머니가 한티재로 찾아갔으나, 시신들이 너무 부패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숨으로 코를 막고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으로라도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음. ●제사는 사망 일자를 알지 못해 음력 9월 9일에 지내다가, 현재는 지내지 않고 있음. ●어머니께서 한티재에서 돌아오신 이후, 청도로 피난 가기 위해 집을 꾸렸고, 짐이 많아 가족 중 진술인과 큰아버지(김○○), 사촌형(김○○)이 우선 짐을 지고 재를 넘었음. ●그 후 짐을 내려놓고 다시 재를 넘으려고 했는데 군인들이 막아서, 어머니와 진술인의 동생들은 마을에 남게 되었음. ●국군이 마을을 수복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죽었을 거로 생각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음. ●사건 당시 마을에 밤이면 빨치산이 내려와 식량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주민들에게 짐을 운반 시켰음. ●아버지가 연행·희생된 이유는 이웃 마을(건바) 주민이 아버지를 신고했기 때문으로 사촌 누나(김○○)에게 들었으나,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함. ●마을(대실)에서는 아버지만 남후주재소로 연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한티재에서 많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음. ●전언자로 사촌 김○○과 마을 주민 김○○이 있음. ●가족들은 마을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했음.
13	16041	김○원 (1950년)	김○종 (金○鍾, 1912, 아버지)	2023. 2. 17.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2층 소회의실 ·	전문 (어머니)	●아버지 김○종(영양군 영양읍 동부동)은 미곡전을 운영했는데, 사는 형편은 괜찮았음. ●한국전쟁 발발 직후 아버지는 좌익혐의로 경찰(소속, 성명 미상)에 의해 연행된 후 어딘가에 구금되었다가 대구 방면 어딘가로 끌려가서 학살되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	신청인 (출생 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한자명, (출생연도,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 진술형태	목격 · 전문	주요 진술
				진술조서		•시신은 희생 장소를 알지 못해 수습하지 못했 고, 제사는 9월 9일에 지내다가 현재는 지내지 않고 있음. •어머니는 아버지가 연행되었을 때, 주위 분들이 돈을 써서라도 아버지를 빼내야 한다고 말했지 만, 아버지가 반대해서 죽었다며, 그때 본인이 주위 분들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을 후회했음. •진술인은 1950년 3월 17일생인데, 진술인이 태어난 지 백일만에 아버지가 희생되었다고 어 머니가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희생된 시기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일 것으로 생각함. •사건 이전 아버지가 어떤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과 연관된 듯하다고 어 머니가 말했든 적이 있음. •가족은 마을에 살다가 영양읍 서부리, 대구로 이사했음.

〈붙임(표) 2〉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예천(참고인 10명, 진실규명대상자 4명)							
1	300-2	박○봉 (朴○鳳)	박○○ (朴○○, 여, 1936년) * 실제 1934년 생임.	동생 · 용궁면 월오리	2023.6.22.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목격 (연행, 시신, 장례)	●박○봉은 용궁면 월오2리에 거주하였으며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 집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용궁면 산택에서 희생되었음. ●박○봉은 용궁면 월오2리 ‘다래이(다래마을)’의 주민으로 용궁고등공민학교 학생이었음. ●다래마을에는 순흥 안 씨가 가장 많이 살며 이장·구장을 지냈고 양 씨도 많이 살았는데, 우리 가족은 문경에 살다가 들어와 박 씨는 아버지 형제뿐이었음. ●안 씨 중에 ‘빨○이 두목장(참고인의 표현임.-조사관 주)’이 있어서 박○봉을 자주 가 입시키려고 하였는데 경찰에 잡혀서 죽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명단이 경찰에 넘어가서 박○봉을 잡아갔다고 함. 가족들은 박○봉이 그런 명단에 오른 줄도 몰랐음. ●인민군이 예천에 들어오기 전, 박○봉은 하교하여 해거름에 소여물을 주려고 불을 지피다가 집으로 온 경찰 여러 명에 의해 연행되었고, 귀가하지 못했음. ●이튿날 부모님이 지서와 예천경찰서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음. 오후에 1~2km 거리에서 기관총 소리가 들렸고, 산택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부모님이 일꾼을 데리고 가서 옷(흰 바탕에 줄이 있는 추리닝)과 얼굴로 박○봉을 알아보고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였음. ●참고인 박○○은 호적에 1936년생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934년생이라 당시 17세였음. 오빠의 연행, 시신, 장례를 목격하였고, 삼촌의 연행 등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음.
2	300-2	박○봉 (朴○鳳)	안○○ (安○○, 남, 1941년) * 실제 1938년 생임.	이웃 · 용궁면 월오리	2024.5.17.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이웃, 친척)	●참고인은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다래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토박이이고, 아버지가 1949년 음력 7월 28일(양력 8월 22일)에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되었음. ●1949년 월오1리와 월오2리에서 약 40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고, 한 집에 둘씩 사망한 사람은 세 집인데, 박○○와 박○봉, 안○○과 안○○, 양○○의 가족임. ●박○○, 박○봉은 농사를 짓고 마을 일을 많이 보았고, 안○○, 안○○은 기천서원 옆에 살면서 서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었음. ●이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된 일 없이 억울하게 경찰에 의해 사망했음. ●좌익들이 경찰을 공격해서 사망한 사건 이후 경찰들이 양민을 빨○이, 좌익이라고 몰아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잡아가서 죽었음. 한 번에 모두 잡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다 보니 피신하지 못하고 당하곤 했음. •참고인은 실제 1938년생으로 당시 초등학교생이었고, 위 내용을 당시에 동네 이웃과 집 안사람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음.
3	300-2	박○봉 (朴○鳳)	김○○ (金○○, 여, 70대)	이웃 · 경기도 부천시	2024.5.17. 월오 정미소 · 면담보고	전문 (남편, 친척, 이웃)	•용궁면 월오리에서 한국전쟁 때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안○○와 참고인의 남편인 안○○ 정도 있음. •이 지역의 미해결 사건으로 마을에서 유일한 밀양박씨였던 박○○와 박○봉이 희생된 사건이 있음. •신청인 박○봉의 부친이 안○○ 집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안○○는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참고인은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음.
4	15696	이○천 (李○千)	이○○ (李○○, 남, 1932년) * 실제 1930년 생임.	육촌 · 용궁면 월오리	2023.6.24.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목적 (시신, 장례) · 전문 (연행)	•이○천은 인민군이 예천에 들어오기 전,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용궁면 산택에서 희생되었음. •참고인은 이○천의 육촌 동생이지만 형제보다 가깝게 지내며 4~5일에 한 번씩 문병을 다녔음. •당시 일정 연령이 되면 남로당 가입을 시키곤 했는데, 남로당을 비판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서 남로당 사람들을 무서워했음. •이○천은 아파서 방에서 누워 지내는데도 나이가 됐으니 도장을 찍으라는 강요를 받아 남로당에 가입하였음. •인민군이 38선을 넘어온다는 소문이 날 무렵, 경찰이 보도연맹 가입자 명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가 감금하고, 그 사람들을 강가에서 총살한다는 이야기가 며칠째 돌았음. •참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야 중학교가 생겨 19세에 중학생으로 용궁면까지 통학했는데, 군수물자에 쓴다고 기차길의 철까지 걷어 기차가 다니지 못하니 걸어다녔음. 평소 하루에 트럭 한 대 정도 다니는 길에 트럭 5대가량 마주쳤는데, 사람들이 뺨뺨하게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음.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며칠째 들었던 터라 이○천이 병석에 누워있다가 끌려갔다는 얘기가 기억났고, 서둘러 귀가하여 어른들께 말씀드리는 중 산택 쪽에서 총소리가 연달아 났음. 어른들은 총살하는 소리라고 하시며 긴 막대에 가마니를 깔고 새끼를 감아 묶어 들것을 준비하였음. •아버지, 오촌 두 분, 참고인까지 산택 희생 장소에 갔더니, 열 명씩 묶어 골짜기 깊은 데 세워 총살하고는 흙으로 덮어 놓은 모습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이었고, 피가 고여 흐르고 있었음. 한 명만 끌어당겨도 열씩 따라 나왔고, 사람들이 얼굴을 확인하려고 시신의 옷을 벗겨 얼굴을 닦고 있었음. • 먼저 온 사람들이 얼굴을 닦아 정리해 놓은 곳에서 바로 알아보고 이○천의 시신을 수습하여, 해질녘에 앞산에 매장하고 귀가하였음. • 병석에 누웠다가 도장 하나 잘못 찍어준 일로 남로당 취급을 당하고 총살되어 억울함. • 참고인 이○○는 1930년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가 연행되었다고 전해 들었고, 희생 장소, 시신, 장례 등을 목격하였음.
5	15696	이○천 (李○千)	안○○ (安○○, 남, 1940년) * 실제 1939년 생임.	이웃 · 용궁면 월오리	2023.6.24.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할머니)	• 용궁면 월오리 '안터'에는 순흥 안 씨와 성주 이 씨가 살았고, 안 씨들이 이장·구장을 지냈음. • 참고인의 증조부 안○○과 참고인 이○○의 할아버지 이○○은 독립운동을 하였고, 후에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았음. • 아직 반상의 구분이 있을 때 증조할아버지 안○○이 우리 집 종이였던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갈 때 못되게 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집 큰아들이 순사가 되어 우리 집안은 고초를 겪었음. • 그 시절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원당고개에서 죽는 일이 있었음. • ○당어른(이○천의 아버지)의 아들이자 ○림어른(이○천의 큰아버지)의 조카인 이○천(2다-15696의 진실규명대상자)도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이 사상범으로 몰려 경찰에 붙잡혀 가서 죽었고, 동네 청년들이 잡혀갔음.
6	1033	노○호 (盧○鎬)	윤○○ (尹○○, 남, 1935년)	이웃 · 유천면 중평리	2023.8.14.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목격 (연행, 장례)	• 전쟁 때 피난을 가까이 다녀왔고, 인민군이 지나가는데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인 것을 보았음. 앞산이 격전지라 충격이 별어지는 것도 보았음. • 노○호는 뒷집에 살았는데, 우익과 경찰 같은 사람들이 손목을 포승줄 내지 수갑으로 묶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음. •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은 경진나들, 용궁면 산택에서 많이 죽었음. • 노○호는 산택에서 사망하여 집으로 시신을 모셔 와 장례를 지냈음. • 직접 본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후 연락이 오는 일이 없기를 바람.
7	1033	노○호 (盧○鎬)	김○○ (金○○,여, 1944년)	며느리 · 유천면 광전리	2023.8.14. 유천면 사무소 · 진술조서	전문 (남편, 아버지, 시아머니, 이웃)	• 노○호는 교육을 받고, 고등공민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면 업무도 보았다고 함. • 노○호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연행되었음. 옆집 윤○○ 씨네 양조장 마당에 시아버지를 끌어다 놓고 엮어놓았다가 데려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윤○○ 씨한테 전해 들었음. 윤○○ 씨는 당시 초등학교 2, 3학년이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연행된 후 산택 못에서 총살되었음. 노○호의 육촌 노○○이 시신을 찾아 지계에 짚어 지고 와서 집에서 간단히 장례를 치르고 산에 모셨음. •노○호의 아내는 노○호가 친구를 잘못 만난 탓에 도장을 찍어주는 일로 가입이 되어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였음. •결혼 전 참고인의 아버지는 ‘노○○ 씨네 아들이 똑똑하고 괜찮았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들었고, 결혼 후 시어머니, 남편, 이웃을 통해 노○호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들었음. •노○호 사망 후 노○호의 아버지가 마음을 잡지 못해 가산을 탕진하고,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음. 노○호의 아들 노○○은 공무원으로 과장까지 지냈고 지적 공사 소장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한 번씩 불러 다니면서 아버지에 대한 일로 고초를 겪었고, 자녀들에게도 나서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살았음.
8	1033	노○호 (盧○鎬)	박○○ (朴○○, 남, 1942년) * 실제 1941년 생임.	이웃 · 개포면 금리	2023.7.6.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이웃)	•노○호는 보도연맹으로 희생되었음. •노○호의 아들 노○○이 참고인과 고교 동창인데, 1기 때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국가에 고용된 신분이라 안 한 것으로 짐작함. •예천지역의 희생 장소는 산택리 벼락고개, 경진나들, 고평나들이며, 벼락고개에서 죽은 사람은 3급에 해당됨. •참고인의 아버지(박○○, 1기 진실화해위원회 다-2909 진실규명대상자)는 금동의 이장이었음. 당시 이장, 구장은 야경을 돌곤 했고, 아버지가 발이 아파 잘 걷지 못하여 누가 업어서 경찰서에 데려다 놓은 후 희생되었음. •마을에서 비슷하게 희생된 사람은 삼촌 박○○(1기 진실화해위원회 다-4410 진실규명대상자), 박○○의 아버지 박○○(1기 진실화해위원회 다-2924 진실규명대상자), 황○○, 박○○, 박○○(1기 진실화해위원회 다-7119 진실규명대상자) 등이 있음. •(양민피살자신고서 작성 경위) 1960년 양민 피학살신고서는 예천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이고, 면·리로 내려보내 수행하여 면장이나 이장이 보증을 선 것이며, 신고자가 글을 모르면 신고를 못 하니 공무원들이 대필한 것임. 이장이 10년 전 일을 직접 겪어 아는 사람이다 보니 신고서를 가지고 우리 집 마루까지 들어와 신고서를 써서 내자고 하였음. 예천군 183건 중 대부분이 대필이며, 면 도장을 찍고 날짜도 적혀있는바, 국가가 나서서 받은 것임.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9	16708	박○식 (朴○植)	박○○ (朴○○, 남, 1938년)	조카 · 개포면 금리	2023.6.21.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목적 (시신, 장례) · 전문 (아버지, 어머니)	●박○식은 용문면 상금곡리에 거주하였으며, 1950년 음력 5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고평나들에서 희생되었음. ●용문면 상금곡리 금당실 마을은 면사무소, 지서, 초등학교가 있어 면에서 중심이 되는 동네였음. 전쟁 전에 할아버지가 구장을 오래 했고, 전쟁 무렵에는 변 씨들이 구장을 하였음. ●함양 박 씨는 예천에서 알려진 선비 집안이었고, 박○식은 한학을 공부하고 일본에 노무자로 가서 돈을 벌어 귀국한 후, 필적이 좋아 관공서에 불러 다니면서 글씨를 써주곤 하였음. ●해방 후 소년단이나 청년단이 있었고, 단원들은 이복으로 갔다고 들었음. ●박○식은 파출소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불러서 일을 봐주고 오는 등 잘 지냈고, 밤에 산에서 자고 새벽에 조용히 들어오곤 하였음. ●당시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경찰서에 오가는 일이 있었는데, 전부 보도연맹이었고, 전쟁이 나서 인민군 넘어온다고 하니 갑자기 출세워 총살하였음. ●전쟁이 난 해 여름, 용문지서에서 집으로 찾아와 박○식을 연행해가는 것을 박○식의 아내가 목격하셨음. 3일 후 트럭에 사람들을 태워 고평나들에 하차시키고 경찰들은 차에 탄 채로 총을 쏘아 죽였음. ●그 무렵 약 1주일간 사람들이 고평에서 많이 죽었음. 손이나 발을 맞고 살아온 사람도 있어서 한동안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났음. ●참고인의 아버지(박○○)가 알아보시고는 친구와 함께 박○식의 시신을 찾아 지계로 모셔 왔음. 찾으려고 여기저기 들추는데 시체를 당기니 다리가 이마를 때려 놀라는 일이 있었고, 금니 보철로 식별하여 찾았다고 함. ●경찰을 피하느라 길이 아닌 곳으로 우회해서 왔고, 몰래 밭에 매장할 때 박○○(박○식의 아들)과 학교 다녀오니 '삼촌 얼굴이나 보라'고 하여 시신을 보았음. 박○식의 배우자 사망 후 개묘하여 합장하였음. ●○철이 아버지도 박○식처럼 사망하였고, 제삿날이 같은 집이 수십임. ●박○식 사후부터 우리 가족은 어디 다녀오려면 파출소에 출입 신고를 하였음. 사촌 중 누가 복으로 갔다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시집간 누나가 친정에 오면 파출소에서 방위대가 와 막대기로 구타하여 아버지가 보름씩 외병하거나 자형이 한 달을 요양한 적이 있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10	16708	박○식 (朴○植)	박○○ (朴○○, 남, 1942) * 실제 1941년 생임.	친척 · 개포면 금리	2023.7.6.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이웃, 친척)	●박○식은 예천 용문면 상금곡리에 거주하였으며 1950년 7월 보도연맹 잡아들일 때 고평나들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음. ●박○식은 예천 상금곡의 주민으로 농사를 지었고, 고평나들에서 사망하였고, 시신은 수습되었음. 형제가 신고서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음. ●예천지역의 희생 장소는 산택리 벼락고개, 경진나들, 고평나들이며, 벼락고개에서 죽은 사람은 3급에 해당됨.
칠곡(참고인 3명, 진실규명대상자 2명)							
11	2090-21	권○택 (權○澤)	권○○ (權○○, 남 1936년)	9촌 · 칠곡군 석전면 도개리	2023.9.11. 참고인 자택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진술조서	전문 (마을 동장)	●9촌 권○택(석전면 도개리)은 집에서는 '민이'라고 불렀고, 농사를 지었음. ●마을은 안동권씨, 영일정씨 집성촌으로 당시 80가구 정도 살았음. ●한국전쟁 발발 직후 왜관경찰서 형사 2명이 마을로 들어와서 권○택 등 마을 주민 여러 명을 조사할 것이 있다고 연행했음. 권○택만 제외하고 연행됐던 주민들은 풀려났음. 며칠 후 권○택이 한티재에서 죽었다는 것을 마을 동장에게 들었음. ●집안 어른들과 형님들은 집안 조카가 죽었으니 시신을 수습해야 한다며 한티재로 갔는데 그때 진술인도 따라갔음. ●한티재는 가산면 금화동(금화지)에 있는데 '모래재'라고도 불렀음. 마을에서 한티재까지는 20리, 왜관경찰서에서 한티재까지는 40리 정도 거리임. 한티재로 올라가는 방향 옆에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에서 700~800m 정도 올라가면 한티재가 나옴. ●한티재에 도착하니 9개의 구덩이에 흙으로 대충 덮어놓은 9구의 시체가 각각 놓여 있었음. 구덩이 위에는 죽은 사람 이름이 쓰인 푼말이 있었는데, 왜관경찰서에서 시신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표식을 남겨뒀다고 함. ●집안 어른들은 권○택의 시신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봉분을 해서 바로 매장했음. ●이후 진술인이 안동권씨종친회장을 할 때 권○택의 묘를 종산으로 이장하려고 했는데, 권○광의 꿈에 권○택이 나타나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여기 있는 게 편하다"라고 했다고 지금까지 이장하지 못하고 있음. ●진술인은 희생 경위를 마을 동장 정○○에게 들었음. 권○택이 연행된 지 3~4일 후, 왜관경찰서에서 동장에게 시신을 찾아가라고 통보했다고 함. 정○○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마을 동장을 했고, 종신토록 동장을 하다가 사망했음. ●사건은 왜관경찰서 배형사가 주동이 되어 벌어진다고 함. 배형사는 왜관 읍내에 살았는데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데, 보통 키에 뚱뚱했고 유도를 잘했음. 그는 경찰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사망했음. •한국전쟁이 끝나고 진술인이 도개리에서 7~8km 떨어진 왜관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단체 견학을 가서, 배형사가 경찰서 내 체육관에서 경찰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왜관경찰서에서 권○택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 조사한다고 끌고 갔다가, 권○택만 사살되었다고 마을 동장에게 들었음. 권○택이 보도연맹에 실제로 가입했었는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입 경위는 알지 못함. •권○택은 먹고 살기 바빠 좌익활동을 할 겨를도 없었을 것임. 당시 교통이 좋지 않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없었음. •한국전쟁 발발 직후 큰누님이 만삭이라 피난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군들이 총을 들이대면서 나가라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대구로 피난을 갔음. 집안 일가는 전쟁 중에 집을 쫓겨나 불뿔이 흩어졌고, 진술인의 가족은 1950년 10월경 집으로 돌아왔음. ※참고인은 호적상 1936년생이지만 실제 나이는 1935년생으로, 사건 당시 15세였고, 석적면 도개동 556번지(권○택 집에서 150m 거리)에 거주했음.
12	2090-21	권○택 (權○澤)	권○○ (權○○, 남, 1941년)	동생 · 칠곡군 석적면 도개동	2023.4.21.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둘째 오빠 권○택(칠곡군 석적면 도계동 603)은 농사를 지었는데 겨우 밥은 먹고 살 정도였음. 둘째 오빠는 인물도 굉장히 잘났고, 체격도 좋았음. •당시 칠곡군 도계면 도계1구에서 어머니와 8남매가 같이 살았는데, 둘째 오빠 내외도 같이 살았음. 아버지는 진술인이 6~7살 때 돌아가셨음. •마을은 안동권씨 집성촌으로 정씨도 몇 집 살았음. •한국전쟁 발발 이전 석적지서 경찰 2명이 찾아와 조사할 것이 있다며 둘째 오빠를 지서로 데려갔는데 지서에 며칠간 구금되어 있었음.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둘째 오빠는 군경에 의해 가산에 끌려가서 총살되었음. 가족이 가산으로 가서 시신을 급히 묻고 봉분으로 무덤 표식만 해놓고 돌아왔고, 난리 때라 바로 피난을 갔음. •진술인은 희생 경위를 어머니(손○○)에게 들었는데, 어머니가 목격했는지 전해 들은 것인지는 알지 못함. •둘째 오빠가 연행되던 날 진술인이 밖에 놀러 갔다 집으로 돌아오니 둘째 오빠가 보이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지 않아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울면서 둘째 오빠가 연행되었다고 알려줬음. •마을구장(성명 미상)이 도장을 받으러 와서 둘째 오빠가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는데, 그게 희생된 원인이라고 들었음. 도장을 어떤 서류에 무슨 이유로 찍어줬는지는 알지 못함. •사건 이후 가족은 하양으로 피난 갔다 가을 경 마을로 돌아왔음. ※참고인은 호적상 1941년생이지만 실제 나이는 1939년생으로 사건 당시 11살이었음.
13	4728	조○용 (曹○龍)	조○○ (曹○○, 남, 1940년)	조카 · 칠곡군 석적면 남울동	2023.4.21. 칠곡군청 2층 접견실 · 진술조서	전문 (아버지, 일가 친척)	•작은아버지 조○용(대구 서구 비산동)은 고향에서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지만, 대구로 이사한 후 1948년에서 1949년 사이에 경찰보조로 대구경찰서 본서에서 근무했음. 조형사라고 하면 사상범 잡는 형사로 유명했다고 함. •작은아버지가 좌익활동을 하던 사람이라 좌익단체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아, 일종의 정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작은아버지는 키가 훗칠하고 똑똑한 분으로 보통 사람은 아니었음. 성격이 굉장히 곧았고, 당시 좌익들이 똑똑한 사람을 포섭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좌익에 가담하지 않았나 짐작됨. •작은아버지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 대구로 이사해서 서구 비산동 날뫼마을(번지 미상) 원고개 부근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음. 고향에서는 생계가 어려워 이사했을 것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작은아버지는 집에 있던 중 갑자기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실종되었음. 그때 바로 옆집에 살던 둘째 작은아버지 조○○도 같이 연행되었음. •진술인은 희생 경위를 아버지와 집안 어른들에게 들었음. •사건 당시 작은어머니가 조○용과 조○○이 연행되는 것을 목격했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함. •전라도 경찰이 연행했다는데 소속과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함. •소문으로는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가창 또는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대구 서구 비산동에 살던 고모부(성명 미상)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고향인 칠곡군 석적면 포남2동으로 피난을 가다가 팔달교에서 경비를 서던 경찰에게 잡혀 신원조사를 받았는데, 고모부가 소지하고 있던 보도연맹원증이 발견되어 경찰에게 연행되었음. •조사받던 고모부는 처남들도 보도연맹원이라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고 얘기해서 작은아버지 조○용과 조○○이 연행되었고, 고모부도 당시 실종되었음. •작은아버지 조○용은 칠곡에 있을 때부터 좌익활동을 하다가 전향하면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몇 번 조사 받은 적이 그 후 대구경찰서에 경찰보조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건 이전에도 작 은아버지는 대구에 살 때 경찰서에 불려가서 몇 번 조사받은 적이 있었고, 그 후 대구경 찰서에 채용되었음.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 작은아버지 조○용 은 무슨 이유에선지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 고 있다 연행되었음. •칠곡군 석적면 남울동에서는 이○○필, 김○ ○, 이○○, 이○○ 등 여러 명이 보도연맹 에 가입되어 있었음. •이○○은 좌익으로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다 나와서 죽었고, 김○○은 어떠한 형도 살지 않고 무탈하게 살다가 사망했음. 이○○과 이○○는 한국전쟁 전후 경 실종되었는데, 이○○이 월북했다는 얘기를 조○○(둘째 작 은아버지 조○○의 쌍둥이 형제)에게 들었음. •이○○은 아내와 아들(이○○)이 있었는데 현재 모두 죽었음. 김○○은 아내는 죽었고, 아들(성명 미상)은 구미에 살고 있음. 이○ ○과 이○○는 미혼이라 자손이 없음. ※참고인은 1940년생으로 사건 당시 10살 이었고, 칠곡군 석적면 남울동 122번지에 서 살았음.
군위(참고인 2명, 진실규명대상자 1명)							
14	9890	권○봉 (權○鳳)	황○○ (黃○○, 여, 1935년)	며느리 · 울산	2023.10.19. 이화1리 노인정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 진술조서	전문 (시삼촌, 남편)	•시아버지 권○봉(우보면 달산리)은 삼 형제 중 둘째로 슬하에 1남 2녀를 뒀고, 그중 남 편 권○○은 둘째로 외동아들임. •시아버지는 평소 논 한 마지기와 문중 땅으 로 농사를 짓는 한편, 틈날 때는 마을을 다 니며 한학을 가르쳤다고 집안 어른들에게 들 었음. •집안 일가 중에는 종갓집이 제일 잘 살았고, 나머지는 그만그만했는데, 시아버지 집이 그 중 제일 못살았다고 함. •마을은 '양산골'이라고 불렸고, 시집을 때는 15가구 정도 살았는데, 산골이라 외딴집에 가려면 짚에 불을 붙여 다니곤 했음. 시댁은 마을에서 제일 위쪽에 있었음. •당시 주로 밤이면 마을 부근 산에서 빨치산 이 내려와 주민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배가 고프다고 밥을 해달라고 해서 먹고 갔다고 함. 시댁에도 빨치산이 시어머니에게 밥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드려 뺐다고 함. 그때만 해도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고, 소나무가 많고 산이 높은 편이어서 산에서 빨치산이 내려왔다고 들었음. •한국전쟁 전후 7월경, 시아버지는 삼베옷을 입고 논에서 모를 심다가 우보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었음. 그 후 시아버지는 의성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군경에게 끌려가서 산에서 총살되었다고 함. 제사는 음력 7월 3일에 지내고 있음. ※ 행형기록 열람 결과, 권○봉의 행형기록은 현재 없음('23. 10. 24. 열람). •진술인은 희생 경위를 시삼촌 권○○과 남편 권○○에게 들었음. 현재 남편은 3년 전부터 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임. •당시 사상범 혐의를 받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의성형무소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들었으니, 시아버지도 그와 같은 이유로 희생된 것이 아닌가 짐작됨. ※참고인은 호적상 1935년생으로 사건 당시는 결혼하기 전이라 고향인 울산에서 살고 있었음. 23살 되던 해 음력 10월경 남편 권○○과 결혼해서 우보면 달산동에서 살고 있음.
15	9890	권○봉 (權○鳳)	권○○ (남, 1936년)	9촌 · 우보면 달산리	2023.10.19. 화계봉산길 599-23 마당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 면담조사 보고서	전문 (집안 어른, 마을 주민)	•9촌 권○봉은 왼쪽 불인지 오른쪽 불인지 모르겠지만, 불에 어릴 때 아파서 생긴 흉터가 있었는데, 글을 많이 알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음. •마을은 권씨(7집), 박씨(3집), 문씨(1집) 등 11집 정도 살았는데, 권○봉의 집은 마을 위쪽에 있었고, 진술인은 권○봉의 집에 자주 놀러 갔었음. •한국전쟁 이전 권○봉은 마을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군위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군위군 일대에서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권○봉이 의성형무소로 이송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음. •집 나이로 14살 때 사건이 발생했으니, 사건 발생 시기는 1949년경으로 알고 있음. •권○봉이 희생된 이유는 알지 못함. •전쟁 이전 마을에서 군인을 본 적은 없음. •당시 우보면 미성리 등 골짜기 마을은 대부분 빨치산이 출몰해서 주민들이 식량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빨치산이 가고 나면 경찰이 마을로 들어와서 조사하곤 했음. •사건 이후에는 우보면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고 들었음.
구미(참고인 7명, 진실규명대상자 3명)							
16	9547	장○두 (長○斗)	장○○ (張○○, 남, 1943년)	먼 친척 · 칠곡군 인동면	2023.3.24 대구시청 산격청사 2층	목격 (연행)	•먼 친척 장○○(칠곡군 인동면 신동, 現 구미시)과 장○두(칠곡군 인동면 인의동, 現 구미시)는 농사를 지었음. •장○○은 괄괄한 성격이었음. 장○두가 보도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신동	2소회의실 · 진술조서		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얘기는 조부모님과 마을 주민들에게 들었음. • 장○○이 살던 마을은 신동(새울) 중 '걸음마'라고 불렀고, 장○두가 살던 마을은 '남산'이라고 불렀음. • 신동은 100가구 정도 되는데, 안마, 걸음마, 새마, 웃마, 못둑마로 나뉘어 있었음. 장○○이 살던 걸음마는 15가구, 장○두가 살던 남산은 20가구 정도 살았음. • 1950년 7~8월경, 국군이 걸음마와 안마에 잠시 주둔하고 있었음. • 걸음마에서는 진술인의 집에, 안마에서는 장○○의 집에 주둔하고 있었음. 진술인의 집은 300평 정도 되고 큰 마당이 있었고, 장○○의 집은 안마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라서 그들에게 선택된 듯함. • 진술인의 집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의 규모는 1개 소대 정도 되고, 안마에 주둔하던 국군은 1개 중대 정도였음. • 국군이 주둔한 지 며칠이 지난 후 마을 주민(성명 미상)이 국군이 깔았던 통신선을 이게 뭔가 싶어 호기심에(진술인의 표현) 잘랐음. • 그게 발단이 되어 군인들이 "통신선을 자른 놈은 빨○이(진술인의 표현)"라고 하면서 어느 날 낮에 마을 청년 7명을 잡아서 안마로 끌고 갔음. • 안마 장○○의 집 마당에서, 군인들이 잡아간 7명을 총 개머리판으로 마구 쏘았음. 그중 1명(장○○)은 스스로 도망쳤는지 군인이 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산으로 숨어서 살았고, 나머지 6명은 밤에 절골로 끌려가서 총살되었음. 안마에서 절골까지는 1km 정도 거리임. • 총살된 6명은 장○○, 장○○의 동생(성명 미상), 장○○의 형(성명 미상) 등임. 그중 장○○의 형은 총을 맞고 집까지 왔다가 집 마루에서 죽었음. 6명 중 장○○과 장○○의 동생은 기혼이었고, 나머지는 미혼이었음. • 군인들은 마을로 들어올 때 주민들에게 "우리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참변이 발생했음. • 진술인은 조부모님(장○○, 남○○)과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 경위를 들었음. 장○○이 끌려갈 때 할머니가 진술인을 등에 업고 장○○의 집으로 가다가, 국군을 보고 장○○의 집까지 가진 못하고 중도에 집으로 되돌아왔던 기억이 남. • 사건 이후 국군이 마을 주민들에게 피난을 가라고 해서 진술인의 집도 금전동 천생산성 근방으로 피난 갔다가, 나락이 익을 무렵인 9월에서 10월경 집으로 돌아왔음. 참변이 있었어도 그해는 마을에 풍년이 들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 먼 친척 장○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인동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실종되었음. 후에 소문으로는 어딘가로 끌려가서 총살되었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함. • 장○두의 희생 경위는 조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음. • 새마 주민 몇 명이 좌익으로 대구에서 활동했다고 들었음. • 사건 이후 장○두의 가족(장○두의 아내, 아들 5형제)은 신동으로 이사 와서 살았음. ※참고인은 1943년생으로 사건 당시 7살이었고, 칠곡군 인동면 신동 414번지에 살았음. 장○○의 집은 바로 뒷집이었고, 장○두의 집과는 10리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종갓집이 인의동에 있어 왕래가 잦았음.
17	12983	김○해 (金○海)	박○○ (朴○○, 남, 1942년)	매제 · 인동면 옥계동	2024.5.14 참고인 자택 (인동중앙로 33-3) · 진술조서	전문 (아내)	• 처남* 김○해(인동면 인의동)는 장인어른 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당시 미혼이었음. * 참고인은 26살 때 김○해의 막내여동생 김○○(2022년 사망)와 결혼했음. • 처남이 집 나이로 22살 때 누군가 호출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가면서 동생들에게 “나는 가면 오기 힘들다,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고 있거라”고 당부하고 간 후 실종됐다고 들었음.
18	12983	김○해 (金○海)	오○○ (吳○○, 남, 1964년)	외종질 · 미출생 (現 인의동 거주)	2024.5.14 참고인 박○○ 자택 (인동중앙로 33-3) · 진술조서	전문 (외할머니)	• 외삼촌* 김○해(인동면 인의동)는 집안 농사일을 돕는 한편 왜관 청년단 활동을 했는데, 외할머니 박○○은 외삼촌이 농사만 지었으면 좋았을 건데 바깥세상을 보고 싶어 해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했음. * 참고인은 김○해의 둘째 여동생 김○○의 막내아들임. • 첫째 이모 김○○은 결혼해서 만주 심양 부근에 살았는데, 외삼촌이 16살 때 즈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도 못 가고 답답해하니 외할머니가 돈을 마련해줘서 외삼촌 혼자 만주로 가서 1년 정도 살다가 풍토병에 걸려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고 함. •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월사금이 없어 1년 휴학했는데, 외삼촌이 돈을 마련해와서 겨우 졸업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고 함. • 마을은 당시 인의2구로 50가구 정도 살았는데, 집 바로 뒤쪽에 인동장씨 시조 묘가 있는 옥산이 있음. • 한국전쟁 발발 두 달 전 즈음 외삼촌은 며칠 동안 집에 없다가, 갑자기 와서 사진을 정리하고 가족에게 인사말을 남기고 간 이후 소식이 끊겼다고 함.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며칠 후 외할머니가 어머니와 이모 김○○에게 물과 찐쌀을 주고 벽장 속에 숨기면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벽장 문을 밖으로 잠갔는데, 이틀 후 외할아버지가 벽장문을 열어줬다고 함. 모친이 벽장 속에 숨은 지 하루가 지났을 때 몇 명의 군경이 집으로 들어와 외삼촌을 찾다가 돌아갔다고 함. •한국전쟁이 터지고 피난 가기 전 마을 주민 누군가가 외할머니에게 “자네 아들이 왜관경찰서에 잡혀갔다”고 전했는데, 그때 외삼촌 외에도 마을 주민 2~3명이 같이 잡혀갔다고 들었음. •1950년 7월에서 8월경 인민군이 들어올 때 주민 대부분이 군위군 효령면을 거쳐 영천으로 피난을 갔음. 외가댁도 피난 가다 외할머니 몸이 편찮아서 마을로 다시 돌아왔는데, 마을은 이미 인민군이 점령한 상태였다고 함. 외할아버지는 인민군이 강제연행해서 다 부동, 석적 전투에 끌고가서 식량을 날랐는데 포탄이 떨어질 때 도망쳐서 몇 달 동안 산속에 숨어 지냈다고 함. •전쟁이 끝날 무렵 외삼촌이 칠곡군 신동재에서 처형됐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외할머니에게 전해줬지만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제사는 외조모 생전에는 명절에 지내다가 현재는 외조모 유언에 따라 말형이 절에서 지내고 있음. •외삼촌이 칠곡 왜관에 있는 청년단 부단장으로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우익단체인지 좌익단체인지는 알지 못함. 외할머니는 외삼촌이 나라를 위해 청년단 활동을 했다고 말했음. •17살 때 대구 성광고등학교에 다닐 때 외할머니가 밥을 해준다고 대구에서 3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그때 외할머니에게 희생 경위를 들었음.
19	12983	김○해 (金○海)	현○○ (남, 1946년)	이웃 · 인동면 인의동	2024.5.13 인동경로당 (인동중앙로 8길 9) · 면담조사 보고서	전문 (마을 주민)	•6·25사변 때 그 집에 하나 있던 아들*이 죽어서 오○○(김○○의 남편)이 데릴사위로 갔다는 것 외에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알지 못함. * 참고인은 김○해의 본명은 알지 못함. •그 집 사위 박○○(김○○의 남편)이 사건 내용을 알 것임.
20	5010	김○병 (金○炳)	김○○ (金○○, 여, 1944년)	딸 · 선산군 구미면 신부 1동	2023.7.11. 참고인 자택 · 진술조서	목격 (연행) · 전문 (외할머니)	•아버지 김○병(선산군 구미면 신부1동)은 논 10여 마지기, 밭 7마지기 정도로 농사를 지었음. •선산김씨가 많이 살던 신부동은 신부1동과 2동으로 나뉘었고, 신부1동은 다시 아랫마을, 웃마을로 나뉘었는데, 아버지의 집은 아랫마을(신뉴, 100가구 이상)에 속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여름경, (진술인이 피난 가기 전) 이른 아침에 사복 경찰 2명이 집으로 찾아왔음. ●그때 김○○(진술인)는 마당에서 고무줄을 기둥에 매어놓고 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소죽을 끓여놓은 뒤 사랑방에 앉아 있었음. 할머니는 삼베를 짜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음. ●집으로 들어온 경찰이 마당에 서서 할아버지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는데, 할아버지는 경찰이 아들 친구인 줄 알고 “○병이는 뒤뜰에서 뭐 치우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음. 할아버지는 계속 사랑방에 있었고, 김○○가 지켜보니 경찰들이 두말없이 뒤뜰로 가서 일하고 있던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버지가 끌려가자 김○○는 할머니께,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를 끌고 갔다, 빨리 나온 나”라고 알렸고, 할머니가 뒷동산까지 쫓아가 봤지만 그땐 이미 흔적이 없었음. ●그 후 누군가 아버지가 선산경찰서(현 구미경찰서)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줘서, 어머니가 만삭인 배를 안고 경찰서로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는 만나지 못하고 경찰만 만나고 돌아왔음. ●경찰은 어머니께 “소 한 마리 값을 가져오면 아버지를 내준다”고 했음. 어머니는 아버지를 구명하기 위해 할아버지께 전했지만, 할아버지는 소를 팔지 않았음. 할머니와 어머니는 돈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큰돈이라 구하지 못했음. ●당시 마을에서 선산경찰서로 가려면 10리가 넘었는데, 외가댁(구미면 봉곡동, 갑골)은 경찰서에서 가까워, 어머니는 한동안 외가댁에 머물면서 면회를 갔지만, 아버지를 만났는지는 알지 못함. ●어머니가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 경찰서를 다니던 중 막내동생이 태어났음. ●아버지가 실종된 이후 음력 6월경 가족은 칠곡으로 피난 가서 추석을 지내고, 가을경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때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음. ●그 이듬해 김해에서 경찰로 근무 중이던 김○○(어머니의 사촌오빠)가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아버지가 총살되었으니 음력 6월 스무날(또는 스무하룻날) 제사를 지내라고 알려줬음.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총살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 후 아버지 제사를 음력 6월경에 지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지내지 않고 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김○○는 아버지가 연행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고, 총살된 것은 피난 다녀온 이듬해에 외할머니에게 들었음. 당시 외할머니는 그 얘기를 하며 울었는데, 어머니는 눈물이 말랐는지 울지 않았음. ●아버지를 연행한 경찰은 처음에 사복을 입고 있어 경찰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선산경찰서 경찰임을 알게 되었음. 사복 경찰은 당시 위 아래 검정색(또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음. ●진술인은 아버지가 연행되는 광경을 목격했음. 사건 당시 아버지는 할머니가 짜고, 어머니가 손수 만든 단추 달린 삼베 남방과 삼베 반바지를 입고 있었음. ●아버지가 김천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정확한 희생 장소는 알지 못함.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백씨도 실종되었음. 백씨 집 앞집인가 뒷집에 살던 사람이 사상범인데, 경찰이 집을 잘못 찾아가서, 그 사람 대신 백씨가 억울하게 비명에 갔다고 마을 사람들이 얘기했음. ●그 후 백씨 가족은 김천으로 이사했는데, 현재 그의 아내는 사망했고, 아들 백○○은 부산에서 살고 있음. ●초등학생이던 김○○가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은, “저 집 아버지가 빨○○이(진술인의 표현)라고 총을 맞았다, 그 사람이 실제 빨갱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너무 급하게 죽였다”고 얘기했음. ●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빨간 옷도 안 입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라고 대든 적도 있었음. ●그리고, 박○○(박정희 대통령의 형)가 좌익이었는데, 그가 아버지와 매일 붙어 다니던 절친이어서 아버지가 총살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음. 박○○는 마을에서 가까운 선산군 구미면 상모에 살았음. 어머니는 진술인을 데리고 떡을 하러 쌀을 이고 지고 자주 그 마을에 갔었음. ●사건 이후 피난 가려고 준비하던 중 인민군이 마을로 들어와 소, 개, 식량 등을 털어갔음. 저의 집 소와 개도 잡아갔는데, 개는 그 자리에서 도살해서 불에 그슬려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음. ●진술인의 집이 낙동강 큰길 주변에 있어, 피난 갔다 돌아온 겨울쯤에 미군과 국군이 수도 없이 구미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때 밤새도록 군화 소리가 들려 무서워서 떨던 기억이 남. 행군하던 군인들이 가끔 진술인의 집 사랑방에서 수십 명씩 자고 간 적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가족이 연좌제 피해를 본 적은 없지만, 오촌 중 누군가가 사관학교 시험을 칠 때 신원조회에 걸려 떨어진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 ※참고인은 호적상 1944년생이지만 실제로는 1942년생으로, 사건 당시 8살이었음.
21	5010	김○병 (金○炳)	김○○ (남, 1942년)	먼 친척 · 구미시 신부동	2024.5.14. 신평2동 할아버지 경로당 (구미시 신비로7길 9) · 면담조사 보고서	전문 (집안 어른)	●저는 김○병의 집과 50~60m 정도 거리에 살았음. ●김○병은 구미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당시 농사를 지었는데, 각진 네모난 얼굴에 보통 키보다 조금 컸음. 그의 집안은 소유 농지가 많아 잘 사는 편이었음. ●한국전쟁 이전 월일 미상경 김○병, 백○○의 형(백○○, 성명 부정확)은 대구10월사건에 연루되어 선산경찰서(현 구미경찰서)에서 데려간 후 실종됐다고 집안어른들에게 들었음. 시신을 찾았는진 알지 못함. 백○○은 부산에 살고 있다고 들었음.
22	5010	김○병 (金○炳)	정○○ (남, 1947년)	이웃 · 구미시 낙계동	2024.5.14. 신평2동할아 버지경로당 (구미시 신비로7길 9) · 면담조사 보고서	전문 (아버지, 마을 주민)	●저는 호적상 1947년생이지만 실제 나이는 1945년생으로, 당시 신부동과 길 하나를 경계로 접해 있는 낙계동에 살았음. 현재 신부동과 낙계동은 공단용지에 편입돼서 공단동이 되었음. ●6·25사변 때 김○○의 아버지(김○병)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실종됐다는 소문은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에게 들었음.
안동(참고인 3명, 진실규명대상자 2명)							
23	3226	임○근 (林○根)	임○○ (林○○, 남, 1911년)	아들 ·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2022.7.8. 참고인 김○○ 자택 · 진술조서	목적 (연행, 시신 수습) · 전문 (어머니)	●아버지 임○근(안동시 녹전면 원천리)은 마을 동장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목수 일을 겸하셨음. ●1950년 7월경 아버지와 삼촌 임○○이 논매기를 하던 중, 녹전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당일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에서 총살되었음. ●시신은 외삼촌과 삼촌 임○○이 10월에 수습해서 매장했음. 몇 달 뒤에 수습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해서 아버지의 도민증을 보고 알아보았다고 함. ●제사는 음력 6월 15일에 지내고 있음. ●연행기관은 녹전지서 경찰이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함. ●아버지가 연행·희생된 이유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참고인은 1942년생으로, 사건 당시 9살이었음.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24	3226	임○근 (林○根)	임○○ (林○○, 남, 1936년)	아들 ·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2022.7.8. 참고인 김○○ 자택 · 진술조서	목적 (연행, 시신 수습) · 전문 (만형, 사촌)	•아버지 임○근(안동시 녹전면 원천리)은 마을 동장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목수 일을 겸했음. •아버지는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성격도 성실하고 착한 분이라고 어머니에게 들었음. •한국전쟁 발발 직후 아버지와 삼촌 임○○이 논에서 일하던 중 녹전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당일에 안동시 남후면 무릉동에서 총살되었음. •시신은 외삼촌과 삼촌 임○○이 10월에 수습해서 매장했음. •제사는 음력 6월 15일에 지내고 있음. •연행기관은 녹전지서 경찰이나,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함. •연행·희생된 이유는 아버지가 그 당시 마을 동장이었는데,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참고인은 호적상 1951년생이지만 실제 나이는 1948년생으로, 사건 당시 3살이었음.
25	3226	임○근 (林○根)	김○○ (金○○, 여, 1945년)	며느리 ·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2022.7.8. 참고인 김○○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시숙모)	•시아버지 임○근(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488)은 마을 동장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목수 일을 겸하셨음. •1950년 음력 6월경 시아버지와 시삼촌 임○○이 논매기 중, 녹전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당일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에서 총살되었음. •시신은 문중 사람들이 10월에 수습해서 매장했다고 함. •제사는 음력 6월 15일에 지내고 있음. •연행기관은 녹전지서 경찰이라고 들었으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함. •연행·희생된 이유는 시아버지가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시아버지의 사촌 임○○도 군경에게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는 군경 토벌작전 시 희생되어, 1기 위원회 때 진실규명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인은 호적상 1945년생이지만 실제 나이는 1943년생으로 사건 당시 8살이었고,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에 살다가, 1961년도에 임○○와 결혼해서 녹전면 원천리에 거주하였음.
26	11400	김○쇄 (金○釧)	김○○ (金○○, 여, 1937년)	조카 · 안동시 남후면 검암1리	2022.8.5. 참고인 김○○ 자택 · 진술조서	전문 (큰어머니)	•삼촌 김○쇄(안동시 남후면 검암1리)는 농사를 지었으며, 키는 큰 편이고 보통 체격에,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급한 성격이었음. 족보상 성명은 '김○한(金○漢)'이며, 태호는 '○곡'임.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한국전쟁 발발 이전 1950년 일자 미상경, 삼촌은 안동 장날 좁쌀 한 말을 지고 읍내 방향으로 가던 중, 경찰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잡혀갈까 무서워서 이웃 마을(접실) 이발소로 잠시 들어갔음. 삼촌은 경찰이 보이지 않자 나오다가 삐라(전단)를 주웠는데, 마침 삐라를 들고 있는 삼촌을 보고 경찰이 삼촌을 남후주재소로 연행해 갔음. ●삼촌이 남후주재소에서 경찰에게 매질을 당해 팬티에 피가 흥건해지자, 경찰이 삼촌에게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음. ●삼촌은 그길로 집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큰 어머니의 집(무릉초등학교 뒤 철독 너머)에 가서 짚더미 속에 숨어있었음. ●경찰이 큰어머니 집에 숨어있던 삼촌을 다시 남후주재소로 끌고 갔음. ●며칠 후 경찰들이 삼촌을 한티재로 끌고 가서 총살했고,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음. ●저는 당시 무릉초등학교 6학년으로 수업 중이라 목격하지는 못했고, 큰어머니(안동 권씨, 성명 미상) 등에게 들은 내용임. ●삼촌을 연행해 간 사람은 남후주재소 경찰인데,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함. ●삼촌이 연행·희생된 이유는 삐라(전단)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함. 당시는 경찰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빨치산으로 몰아 죽이던 때라 삼촌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경찰을 보면 무서워서 숨던 시대였음. ※참고인은 1937년생으로 사건 당시 14살로, 안동시 남후면 검암1리 263번지*에 거주했음. * 피해자의 집과 같은 지번이나, 담장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형태
27	11400	김○쇄 (金○釧)	김○○ (金○○, 남, 1944년)	조카 · 안동시 남후면 검암1리	2022.8.5. 참고인 김○○ 자택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마을 주민)	●삼촌 김○쇄(안동시 남후면 검암1리)는 농사를 지었으며, 강한 성격이었음. ●한국전쟁 발발 이전 1950년 일자 미상경, 삼촌은 그 당시 좌익활동을 하던 행계(대계리)에 사는 일가 사람(성명 미상)이 불러서 행계로 가려고 했음. ●저의 아버지(김○○)가 시국이 좋지 않으니 행계에 가지 말라고 말리니, 삼촌이 듣지 않고 간 이후 실종되었음. 그 길로 경찰서로 연행된 것인지 자발적으로 경찰서로 간 것인지는 알지 못함. ●실종 이후 어느 날(일자 미상) 누군가(성명 미상)가 삼촌이 한티재에서 총살되었다고 알려줘서, 가족들이 삼촌의 시신을 찾으려 갔지만, 시신들이 너무 부패해서 수습하지 못했음. ●삼촌이 경찰에게 총살되었다고 들었지만, 경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찰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함.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한 시기는 1950년 6월 말경으로, 삼촌이 희생된 이후였음.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했을 때는 대부분 피난을 가고 2~3집 정도 남아있었고, 저도 피난을 가지 못해 마을에 남게 되었음. •인민군이 저의 집 개를 잡아먹었고, 저는 총을 맞지 않으려고 바위 밑에 숨어있었음. 인민위원회를 구성할 인력이 남아있지 않아 마을에 어떠한 조직을 만드는 일은 없었음. 국군이 마을을 수복한 시기는 9월경임. •삼촌과 한티재에서 같이 희생된 사람은 마을에는 삼촌 한 분이고, 황계에 4~5명정도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삼촌이 희생된 이유는 누군가의 모함으로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희생되었다고 생각함. 그 당시 황계마을 동장 강씨(성명 미상)가 좌익활동자 명단을 경찰서에 제출해서, 삼촌과 황계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들었음. 마을 어른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했음. ※참고인은 1944년생으로 사건 당시 7살로, 안동시 남후면 검암1리 263번지*에 거주했음. * 피해자의 집과 같은 지번이나, 담장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형태
28	11400	김○쇄 (金○釧)	김○○ (한자 미상, 여, 1944년)	이웃 · 안동시 남후면 검암1리	2022.8.25. 자택 · 진술조서	전문 (마을 주민)	•마을 주민 김○쇄(안동시 남후면 검암1리)는 농사를 지었으며, 건강하고 잘생긴 외모에 착한 사람이었음.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인 1950년 6월 여름 어느 날 김○쇄는 남후면 소재지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한티재에서 총살되었음. 한티재는 마을에서 10리가 넘는 곳에 있음. 한티재에 부패한 시신이 너무 많아 그의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김○쇄가 연행·희생된 이유는 알지 못함. •저는 안동 지역 집단학살지로 한티재 외에는 알지 못함. ※참고인은 1944년생으로 사건 당시 7살이었고, 안동시 남후면 검암1리 264번지(김○쇄 옆집)에 거주했음.
영양(참고인 2명, 진실규명대상자 1명)							
29	16041	김○종 (金○鍾)	최○○ (崔○○, 남, 1935년)	사위 ·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2023.9.8. 참고인 자택 (대구시 남구 대명동) · 진술조서	전문 (장모, 처제)	•장인 김○종(영양읍 동부리)은 양곡점을 운영해서 사는 형편은 괜찮았음. •진술인은 35세 때 아내 김○○와 결혼해서 대구시 북구 칠성동으로 분가해서 살았는데, 아내는 1996년 사망했음. •한국전쟁 발발 직후, 밤중에 자고 있던 장인

연번	사건 번호 (2다-)	진실 규명 대상자 (한자명)	참고인				주요 진술
			성명 (한자명, 성별,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당시 거주지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을 군경이 끌고 가서 어딘가에서 총살했음. 희생 장소를 알지 못해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음. •진술인은 희생 경위를 장모 권○○과 처제 김○○에게 들었음. •결혼하고 장모를 찾아뵈었을 때 장인어른이 안 계신 경위를 물어봤는데, 그때 장인이 희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장인이 밤중에 집에서 끌려갔기 때문에, 장모와 처제가 장인이 진행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인은 1935년생으로 사건 당시 25세였음.
30	16041	김○종 (金○鍾)	김○○ (金○○, 여, 1946년)	딸 ·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2023.9.12. 참고인 자택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 진술조서	전문 (어머니)	•아버지 김○종(영양읍 동부리)은 양곡 배급소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식모도 두고 살았음. •한국전쟁 발발 이후 아버지는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군경에게 끌려간 후 영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실종되었음. 그 후 아버지가 가창댁에서 사망했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들었지만,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음. •진술인은 희생 경위를 국민학교 재학 중일 때 어머니께 들었음. •당시 아버지 외에도 마을 주민 두 명(성명 미상)이 끌려갔다고 들었음. •사건 이전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도장을 잘못 찍어줬기 때문에 끌려갔다고 어머니께 들었음.

〈붙임(표) 3〉 군경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1기 진실화해위원회)

연번	성명 (출생 연도)	당시 소속 신분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적 전문	주요 진술
예천					
1	윤○○ (1934년)	민간인 (1950. 10. 철도경찰 배명)	2008. 11. 11.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전문	•한국전쟁 당시 예천에 제107연대(백골연대)가 주둔해 있어서 인민군들에게 바로 함락되지 않고 17일을 버틸 수 있었음. •안동과 점촌이 함락되어 예천이 동·서로 포위되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보도연맹원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음. •국민보도연맹은 전쟁 발발 전에 조직되었고, 가입자는 대체로 나이가 많거나 사회활동이 활발했던 사람들(특히 면사무소 직원이나 반장 등)이었고, 과거 지하활동 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활동과 무관한 사람도 있었음. •국민보도연맹원 연행은 중앙의 지시를 받아 예천경찰서에서 각 지서로 지시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천경찰서에서 직접 연행하기도 하였다고 함. •연행 인력은 지서 경찰, 지서 의용경찰(특공대, 경찰보조원 등)이었고, 구금 장소는 경찰서 내 유치장 또는 유도장이었음. 구금 기간은 2~3일 정도였음. •국민보도연맹원을 과거 활동 경력 등을 토대로 경중을 나누어 등급을 분류했고, 경찰서 후퇴 직전 몇 차례에 걸쳐 처리하였음. •이송 수단은 전쟁 당시 징발된 민간인 소유 차량 또는 전투나 공비토벌 작전 출동할 때 이용했던 군용 트럭이었음. •운전은 징발된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수가 하였는데, 경찰복을 입혀 운전을 시켰고, 그 중 한 명이 김○○이었음. •희생 장소는 예천읍 우계동, 개포면 경진나들, 용궁면 산택 등 세 곳이 대표적이라고 함.
2	김○○ (1931년)	예천경찰서 경리계 (운전수 조수)	2008. 11. 12.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전문	•정식 경찰 입문 전 3~4년간 경찰서 차량 조수로 근무하였음. •국민보도연맹 명단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활동 정도에 따라 등급 분류가 되어있었고, 사찰계가 관리 감독하였음. •국민보도연맹원 연행은 각 지서로 지시를 내려, 지서 경찰이 연행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구금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무도장이었고, 구금 기간은 2~3일, 3~4일 정도였음. •처형장소 중 경진나들로 보도연맹원들을 이송할 당시 운전수 유○○과 함께 갔음. •트럭에는 40~50명이 탑승했고, 유치장이나 무도장을 경비했던 경찰 1~2명과 군인 1~2명이 함께 탔음. •경진교가 생기기 전이라 내성천을 건너기 직전까지 있는 도로의 끝에 차량을 멈추고 사람들이 하차한 후 차량에서 대기했음. •경찰은 사건 현장 주위에서 경비하고, 군인 1~2명이 칼빈총으로 연발을 쏘았음. •처형을 실시한 사람들은 계급장이 없는 군복을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였음. •이후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시신을 유가족들이 수습했는지 현장에 한 구도 없었다고 함.
3	신○○ (1925년)	예천경찰서 보안과	2008. 11. 12. 참고인 사무실 (진술녹취록)		•경찰서에 요시찰인명부와 같은 국민보도연맹원 명부가 있었는데, 사찰과가 명단 작성과 감시를 담당하고, 경비과나 총무과는 유치장에 수감된 국민보도연맹원 관리를 담당했음. •국민보도연맹 가입은 과거 좌익활동자, 삐라 뿌린 경력 소유자들이었다가 상관없는 사람이 가입되어 나중에 억울하게 희생되었음.

연번	성명 (출생 연도)	당시 소속 신분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주도적으로 활동한 연맹원은 모르겠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음. •국민보도연맹원의 연행 및 처형은 대구경찰국 또는 경북경찰국 소속 특별경찰대(이하 특경대)가 담당하였음. •예천지역 경찰은 안면이 있으니 일면식이 없는 타지역 출신자가 담당한 것임. •특경대는 27~28명 규모였고, 복장은 경찰 정복이 아닌 경찰 마크가 붙은 군복이었음. •특경대는 주로 밤에 트럭을 몰고 나가 동장의 협조를 받아 국민보도연맹원을 연행하였고, 인원이 많아 유치장 구금이 곤란하면 수갑을 채워 유도장에 감금했는데, 30명 정도로 기억하며, 용궁면 산택 등 여러 곳으로 데려가 총살하였음. •총살의 명분은 이들을 살려둔 채 후퇴하면 진주하는 인민군에 협조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4	권○○ (1930년)	민간인 (대한청년단 특동대 활동, 1952. 2. 23. 배명)	2008. 11. 12.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전문	•사건 발생 전 대한청년단 특동대에 소속되어 활동했음. •특동대의 주 임무는 공비들의 지서 습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서 주위에 호를 파고 야간에 2교대로 보초를 서는 것이었음. •특동대는 낮에는 농사를 짓고 야간에 지서 보초를 섰고, 총이 지급되는 의용경찰과 달리 방망이 같은 것이 무기로 지급되었음. •당시 지서에는 정식 경찰이 5~6명 정도 있었음. •한국전쟁 당시 예천군 내에서 국민보도연맹원이 경진리 내성천 강변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희생규모는 알지 못함. •상기 장소에서 먼 친척이 희생되어 집안 식구들이 확인 후 수습했다고 함.
5	김○○ (1923년)	예천경찰서 경무과	2008. 11. 13.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전문	•국민보도연맹원 명부 작성 및 관리는 예천경찰서 사찰계가 담당하였음. •누가 어떻게 연행했는지 모르겠으나, 연행된 이들은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유치장이 아닌 연무장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1~2일 구금되었음. •예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국민보도연맹원 20~30명은 경찰서 퇴각 직전 백골부대 1개 소개(책임자: 황 상사, 규모: 약 35명) 병력이 고평나들에서 총살하였다고 함.
6	김○○ (1928년)	예천경찰서 경리계 (운전수)	2008. 11. 13.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전문	•경찰서 운전수 조수로 근무하다가 정식 경찰에 입문하여 본서 경리계에서 10여 년 근무하였음. •월급, 피복 등을 지급하면서 경찰서 소유 차량의 운행 및 관리 감독을 하였음. •당시 경찰서에는 쓰리쿼터, 일산 군용차, GM 사발이 등 3개 정도가 있었음. 일산 군용차에는 40~50명 탑승할 수 있었음. 공비토벌 작전이나 전투 시 경찰력을 수송한 적은 있지만 민간인들을 수송한 적 없고,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처형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없고, 이후 국민보도연맹 관련된 모든 질문에 잘 모른다고 일관되게 답변함. •다만 한국전쟁 당시 군부대가 주문하여 경찰과 같이 정보활동을 하였던 것과 예천경찰서에서 한국전쟁 전후 좌익 색출 및 보도연맹원의 모집·교육·연행 등은 사찰과 소관 업무였다는 것 정도만 기억이 날 뿐이라고 함.
칠곡					
7	나○○ (1926년)	칠곡경찰서 북삼지서 순경	2009. 4. 18. 진술녹취록 참고인 자택 ·	목격 전문	• 6·25 당시 칠곡경찰서 북삼지서(지서장 마○○ 경사)에서 근무했음. 북삼면에도 보도연맹원들이 10여 명 있었는데 대부분 남로당 가입자들로 구성되었음. • 북삼지서에 보도연맹 명단이 있었으며 남로당 활동 사실과

연번	성명 (출생연도)	당시 소속 신분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2009. 5. 7.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조사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이 사람들은 요시찰인물로 관리하였으며 본서에서 교육을 했음. • 보도연맹원 소집지시에 따라 내가 직접 박○○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했고, 다른 보련원 7~8명과 함께 경찰서로 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당시 왜관에 CIC 파견대가 있었는데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거나 사복을 입고 2인 1조로 활동했음.
8	마○○ (1923년)	칠곡경찰서 북삼지서 지서장	2009. 3. 27. 대구 북구 협화맨션 관리사무소 진술녹취록 · 2009. 4. 6. 위원회 사무실 통화조사서	목격 전문	• 6·25 당시 칠곡군 북삼지서장이었는데 왜관 철교 폭파(8. 3.)되기 직전에 본서 사찰계의 지시로 북삼면 보도연맹원 30여 명을 트럭에 실어 보냈음. • 당시 보도연맹원들은 신동재, 칠곡(면), 가창, 앞산 등으로 가서 총살당했음.
9	김○○ (1927년)	칠곡경찰서 경찰	2009. 6. 19. 면담보고서	전문	• 죽전출장소에서 6·25가 터졌다는 연락을 받고 7월 말에 신동지서로 후퇴를 하였음. 보도연맹원 명단을 사찰계에서 취급하였는데 6·25 때 다 데리고 가서 총살시켰음. • 칠곡에서 보도연맹 처형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포항으로 출동 나갔다가 보도연맹원들 포승줄에 묶여 트럭에 수백 명이 실려 가는 것을 목격하였음. 그렇게 트럭에 실려 가면 모두 총살당하는 것임.
10	박○○ (1929년)	칠곡경찰서	2009. 6. 19. 조사보고	전문	• 1950년 7월부터 칠곡경찰서 의경으로 있다가 9월에 순경으로 임용되었음. 주로 대공분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내가 경찰에 임용되기 전에 보도연맹원들이 모두 처형되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없고 나중에 들어서 아는 바가 있으나 말하기는 어려움. • 보도연맹은 1949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는데 칠곡에는 왜관읍내 적산가옥에 사무실이 있었음. 당시 사찰계에 남○○, 민○○ 형사가 있었음.
11	이○○ (1932년)	대한청년단	2008. 12. 16. 칠곡군청 면담보고서 · 2009. 7. 2. 참고인 자택 면담보고서	전문	•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에서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였는데 1950년 전쟁 직후 7월 중순경 석전동 보도연맹원들이 소집되어 신동재, 안양동, 아시동 등지에서 학살당했음.
군위					
12	홍○○ (1925년)	군위경찰서 효령지서 경찰	2009. 4. 3.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목격 전문	• 한국전쟁 전 군위지역의 경우 빨치산의 활동이 심했으며 마을마다 남로당 세포가 한 명씩 있어 빨치산의 정보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마을 주민들을 남로당에 가입시켜 군위지역 남로당원의 수가 증가했음. • 남로당에 가입된 사람들은 이후 '요시찰인'으로 분류된 후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한 달에 두 번씩 본서 사찰계 형사나 지서 순경들은 이들의 동태를 파악했음. • 전쟁이 나자 경북지방경찰국에서 군위경찰서를 거쳐 각 지서로 이들을 연행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는데 이들 중 간부급들은 경찰이 대한청년단원을 동원해 지서로 연행하여 본서로 이송시켰음. • 보도연맹원들이 처형장으로 이송될 당시 본인은 군위경찰서 정문입초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군위경찰은 경찰서 GMC트럭 2대로 하루에 몇 차례에 걸쳐 보도연맹원들을 우보면과 소보면의 산골짜기로 데려가 총살시켰음.

연번	성명 (출생 연도)	당시 소속 신분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 당시 트럭에 실린 보도연맹원들은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 고개를 숙인 상태였으며 경찰과 CIC의 감시아래 처형장소로 이송되었음. • 당시 본인이 직접 처형현장에 동원되지는 않았으나 효령지에서 함께 근무한 신○○가 처형현장에 동원되었으며 총살을 마치고 돌아와 “처형현장은 계곡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덩이를 파지 않았으며 현장은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사람,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는 사람,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진동을 했다. 처형은 CIC가 경찰에게 처형대상자를 지목해주면 경찰이 총격을 가했는데 만약 경찰이 총을 쏘지 못하고 있으면 CIC가 권총으로 위협을 하였으며 처형이 끝나면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주위의 나뭇가지 등으로 그냥 덮었다”고 말했음. 신○○는 처형 현장을 다녀온 후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 며칠간 밥을 먹지 못했음. • 당시 처형된 사람들은 농사짓던 복장 그대로였는데 처형된 사람들의 수는 약 100명 정도 되었을 것 같음. • 경찰서로 연행된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서 유치장 및 인근 창고에 구금되었으며 이후 사찰계 형사와 일신여관에 주둔 중이던 CIC에 의해 처형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됐음.
13	안○○	군위경찰서 산성지서 경찰	2009. 5. 18. 면담보고서	전문	• 팔공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에게 식량을 빼앗기거나 이들이 작성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주민들은 ‘요시찰인’으로 관리를 받다가 이후 보도연맹에 가입 되었으며, 전쟁이 발발하자 지사로 소집되어 사찰계 형사들에 의해 본서로 이송되었음.
14	박○○ (1929년)	군위경찰서 산성지서 의용경찰, 우보지서 순경	2009. 6. 23. 참고인 자택 면담보고서	목격 전문	• 한국전쟁 전 군위경찰서 산성지서 의용경찰로 시작해서 1950년 8월 3일 우보지서 정식 순경으로 발령받음. 산성지서에서 2~3개월간 근무하다 산성지서장 박동렬이 우보지서장으로 발령받자 진술인도 우보지서로 근무지를 옮겼음. • 우보지서는 지서차석 이○○, 이○○ 등 총 6명이 근무했는데, 의용경찰은 본인뿐이었음. • 우보지서 근무 당시, 미성동에 사상자가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본인이 그들을 예비검속한 적은 없음. • 한국전쟁 전 월일미상경 산성지서로 친구 남○○ 등 화전동 주민들이 잡혀온 적이 있는데,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의심받아 주민들을 피해다닌 적이 있음. • 한국전쟁 발발 후 월일미상경 우보지서 앞으로 트럭이 한 대 지나갔는데, 그 트럭에 같은 마을 친구 남○○을 비롯해 산성면 지역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트럭 목적지는 군위경찰서인 것을 알고 있음. • 전쟁 직후 산성면 등 군위지역에서 연행된 보도연맹원들은 우보면 나호동 골짜기와 대구 가창 어느 광산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당시 의용경찰 신분이라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아 관련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함. • 하지만, 우보면 나호동 인근 주민들이, ‘나호동 골짜기로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간 후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음. 처형장소는 나호1동 마을 뒷산으로 추정됨. • 당시 산성지서에서 연행되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경우, 실제 좌익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 심부름을 하거나 한 번씩 모임 등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음. • 당시 군위지역 손○○(1950. 2. 7. 『영남일보』에는 손○○이 국민보도연맹 군위군 간사장이라고 기재)이 좌익계통에서 활동했는데, 집안이 부유한 사람이었음.

연번	성명 (출생 연도)	당시 소속 신분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15	김○○ (1930년)	군위경찰서 소보지서 순경	2009. 4. 17.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향다방 진술녹취록	전문	- 한국전쟁 이전 경찰서에서 보도연맹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소집해서 정확교육(반공교육)을 시켰음. 한국전쟁이 나자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해서 구금했는데, 후퇴함과 동시에 전부 총살시키라고 명령이 내려왔음. 그 명령은 치안국에서 경찰국으로 다시 경찰서로 내려왔음. 당시 보도연맹원 관리는 사찰계에서 했음. - 보도연맹원 구금장소는 경찰서 유치장 외에도 강당, 창고 등 임시수용소가 있었고, 군위경찰서에 GMC 1대, 쓰리쿼터 1대가 있었음. - 보도연맹원들이 처형될 당시 군위지역에 4~5명의 CIC 대원들이 일심여관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경찰서 유치장과 인근 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들을 CIC가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갑, 을, 병으로 분류했음. - 보도연맹 처형 당시 군위경찰서장은 장○○임.
구미					
16	노○○ (1916년)	대한청년단 및 대구경찰	2009. 5. 6. 진술녹취록	목격	- 한국전쟁 전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을 지냈으며, 1950년 한국전쟁 시기 경찰임용, 미군G-2에서 근무시작, 관할 지역은 구미, 칠곡, 왜관, 고령, 성주였음. - 전쟁 직후 경찰과 대한청년단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체포하여 좌익 관련 여부를 조사했음. 체포된 보도연맹원들은 군인들에 의해 총살되었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은 모두 죽었음.
17	손○○ (1920년)	대한청년단	2009. 5. 7. 진술녹취록	전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구 대한청년단 감찰대원이었음. - 전쟁 전 대구 10.1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했던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명부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직후 '빨○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모두 죽었음.
18	김○○ (1926년)	선산경찰서 수사과 형사	2009. 5. 7. 진술녹취록	전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선산경찰서 수사과 형사 근무. - 보도연맹원들은 사찰과에서 취급되어 고아읍 모처에서 처형되었음. - 대한청년단과 경찰은 긴밀한 협조관계였는데, 청년단은 각 마을의 좌익 관련 동향 등의 정보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음.
14	최○○ (1926년)	선산경찰서 순경	2009. 5. 8. 진술녹취록	전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선산경찰서 순경으로 근무. - 선산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7월 말 8월 초 선산경찰서 유치장에 예비검속된 후 등급분류 되어 일부는 처형되고 일부는 석방되었음. - 당시는 계엄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고 특무대나 헌병들의 전횡이 난무했으며, 특히 사상 쪽 일은 군에서 담당했음.
15	이○○ (1926년)	선산경찰서 해평지서,산성지서 전투경찰	2009. 6. 16.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목격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선산경찰서 외근 및 소속 지서(해평지서, 산동지서) 전투경찰로 근무. 선산경찰서 수사주임은 임○○, 수사계 형사는 이○○이었음. 보도연맹원은 경찰이 지서에서 명부를 가지고 체포한 다음 본서로 넘기면 사찰계에서 처형했음.
			2009. 6. 29. 위원회 사무실 통화보고서	목격	전쟁 당시 왜관으로 후퇴하기 전 선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산동지서 근무 당시 알고 지냈던 황○○가 구금된 것을 보고 담배를 권했었음. 황○○는 보도연맹원 4~5명과 함께 선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후퇴하기 전날 저녁 사찰형사들에 의해 금오산 순사양지에서 총살되었음.
16	최○○ (1928년)	선산경찰서 순경	2009. 7. 13. 참고인 자택 면담보고서	목격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선산경찰서 순경이었음. - 구미지역에서 후퇴하기 전 선산경찰서에는 보도연맹원 100~200명이 구금되어 있었음. 유치장 공간이 모자라서 경찰서 내 회의실로 쓰던 가건물까지 구금시켰음. - 이들은 경찰이 후퇴하기 2~3일 전 대구로 이송된다는 이유

연번	성명 (출생 연도)	당시 소속 신분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로 실려 나갔다가 금오산에서 총살되었음. 보도연맹원들은 형사급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함.
17	김○○ (1931년)	선산경찰서 도개지서 의용경찰	2009. 7. 13.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전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선산경찰서 도개지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 전쟁 발발 한 달 후 피난을 갔는데 그때 잡혀 온 보도연맹원들은 모두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음.
안동					
18	박○○ (1923년)	안동경찰서 의용경찰, 사찰계 순경	2008. 11. 4. 안동시 중앙파출소 조사실 (진술조서)	목격 전문	- 전쟁 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후까지 안동경찰서 의용경찰로 근무했고, 수복 후 사찰계 순경으로 근무했음. 의용경찰로 근무할 때 안동경찰서 서장은 박○○(경산 출신)이었음. - 안동군 보도연맹원 사무실은 현 웅부공원 동쪽 법원 부근에 있었음. - 참고인은 당시 보도연맹원 예비검속 업무를 했음. 치안국에서 명령이 내려와 보도연맹원 처리를 했음. - 안동경찰서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해서 안동경찰서 유치장과 무도관, 동부초등학교 교실에 구금했음. 구금자 수는 170명 정도 될 것임. 유치장에 20여 명, 무도관에 50여 명, 동부초등학교 교실 2개에 100여명 정도 구금했음. - 보도연맹원 총살은 경찰과 군인이 했음. - 학살지는 현재 쓰레기 집하장 부근(남후면)과 와룡면 서지미 고개 부근, 무릉계곡 부근 등이었음. - 수복 후 와룡지서에 근무 시, 와룡면 주민 40~50여 명을 부역혐의로 안동경찰서로 이송함 - 수복 후 부역자 처리는 내무부 치안국 명령에 의해 진행되었고, 군 선무공작대(정훈국 소속)도 개입을 했음.
19	이○○ (1932년)	안동경찰서 의용경찰	2008. 11. 5. 안동시 용상지구대 조사실 (진술조서)	전문	- 한국전쟁 전부터 안동경찰서에서 무보수경찰로 경비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당시 의용경찰이 5명 정도 있었음. -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찰이 후퇴하기 직전 보도연맹원들이 예비검속되어 안동 남후면, 와룡면 서지미 땅고개 등 여러 곳에서 총살됐다는 얘기를 들었음. - 수복 후 8사단 10연대가 먼저 안동에 들어오고 경찰은 나중에 들어왔음. - 안동경찰서가 폭격으로 소실되어 안동읍사무소(현 보건소)에 청사를 임시로 사용했음. - 수복 후 부역자를 많이 잡아들였고, 부역자를 총살하였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음.
20	손○○ (1927년)	안동경찰서 사찰계 형사	2008. 11. 3.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전문	- 영주경찰서에 4년 정도 근무하다가 1952년 4월부터 1956년까지 안동경찰서 사찰계에서 근무했음. 당시 사찰계 형사주임(이○○)과 삼촌이 잘 아는 사이라 그쪽으로 발령이 났음. - 일직면 송리에는 보도연맹원 두 명이 있었음. - 한국전쟁 발발 당시 아버지는 일직면 송리 동장이었는데, 세상이 소란해 일직면 운산리로 갔다가 보도연맹원을 소집한다는 정보를 들었음. 인민군이 내려오면 보도연맹원들이 협력할 것이니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죽여야 한다는 정보를 듣고 마을 보도연맹원들에게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고 해서 둘은 무사했고, 송리에서 보도연맹원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음. - 전쟁 전후 경찰이 부역자와 좌익세력들을 임의처형 하는 일이 많이 있었음. - 수복 후 일직지서에 구금된 일직면 주민 수십 명이 광음리 암산골에서 국군 선발대에 의해 인계되어 총살됨. - 수복 후 영주경찰서 근무 시, 1개 면에서 많게는 50여 명의 주민이 부역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보아 안동지역은 희생자 수가 더 많을 것임.

연번	성명 (출생 연도)	당시 소속 신분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목격 전문	주요 진술
영양					
21	이○○ (1925)	1950. 9. 1. 영양경찰서 배명	2009. 7. 30. 경북 영양 서부리 노인회관 진술녹취록	전문	- 영양은 산이 많아서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으며 공비토벌작전이 수시로 이뤄졌음. - 전쟁 당시 보도연맹원들이 잡혀 있다 2트럭 정도의 인원이 안동 무릉으로 끌려가서 경찰들에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당시 사찰계 형사로 악명높은 천○○라는 형사가 있었음. - 수비면에 김○○이라는 좌익우두머리가 있어서 빨○이들이 많았으며, 팔수골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함.
22	김○○ (1927)	참전군인	2009. 7. 30. 경북 영양 서부리 노인회관 진술조서	목격 전문	- 전쟁 이전 22연대 군인들이 영양시장 장날에 빨○이라고 하면서 동네주민 몇십 명을 시장 옆 공터에서 총살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 - 특히 후퇴할 당시에는 경찰들이 보도연맹원들을 붙잡아서 안동 무릉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고 들었음. - 팔십골(팔수골)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6·25전쟁이 끝난 후 한동안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팔십골 근처에 가길 꺼려 했음.

〈붙임(표) 4〉 제4대 국회 『양민피살자신고서』 정리표

연번	피살당시								피살경위	유족대표						
	본적	주소	직업	성명	성별	생년 월일	피살 연월일	피살 장소		본적	직업	성명	성별	나이	관계	
예천 지역																
1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동 1104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동 1104	학생	박 ○ 봉	남	1936. 2. 7.	1950.	미기재	경찰 관계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 피살됨.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동 1104	농업	박○○	남	55	부
2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동 78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동 78	농업	이 ○ 천	남	1927. 5. 13.	1950. 6. 2.	예천군 용궁면 원당리	경찰 관계	보도연맹에 가입한 자로서 경찰에 연행 원당계곡에서 총살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동	농업	이○○	남	67	숙부
3	경북 예천군 유천면 중평동 95	경북 예천군 유천면 중평동 95	농업	노 ○ 호	남	1917. 5. 5.	1950. 7. 13.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경찰 관계	보도연맹으로서 6.25 사 변 당시 경찰에 구금 피 살되었음.	경북 예천군 유천면 중평동 95	무직	노○○	남	69	부
칠곡 지역																
4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동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동	농업	조 ○ 용	남	1927.	판독 불능	판독 불능	경찰 관계	○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동	-	조○○	-	-	-
5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동	경북 대구시 평리동 1구 18방 746	농업	조 ○ 니	남	1928. 20.	-	-	군관 계	보도연맹 가입 혐의로 헌 병대에 연행되어 갔음. 1950. 7. 7. 가출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동	무직	조○○	여	40	처
구미 지역																
6	-	인동면 신동	농업	장 ○ 두	남	33세	-	-	경찰 관계	○	-	-	노○○	-	-	제
안동 지역																
7	경북 안동군 녹천면 지천리 488	경북 안동군 녹천면 지천리 488	농업	임 ○ 근	남	1911. 1.	1950. 7. 2.	안동군 남후면 무짐이	경찰 관계	당시 동장 근무하다가 공 비가 내려와서 물품강요와 인명위협 함으로 1949년 10월경에 동장을 사표하 고 안동읍으로 이사해서 당시 경찰에서는 사상이 달라서 동장을 사표하였다 고 1949년 7월 20일경 에 녹전지서에서 호출하여 남후면 무짐이 뒷산에서 피살하였음.	경북 안동군 녹천면 지천동 488	무직	박○○	여	47	처
8	경북 영양군 영양면 동부리 549	경북 영양군 영양면 동부리 549	상업	김 ○ 중	남	1912. 10. 21.	-	-	경찰 관계	6·25사변 발발 직후인 7 월 초순 경 무조건 빨○ 이라는 이유로 영양경찰서 사찰주임 호○○이 검속 하여 안동에 송치 후 소 식 없음.	경북 영양군 영양면 동부리 549	농업	김○○	남	38	제

〈붙임(표) 5〉 희생 현장 위치 및 사진

① 원당고개

- 위치: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일명 벼락고개)’이다.
- 현황
 - 산택리(山澤里)는 본래 용궁군 구읍면의 지역으로서 뒤에는 고종산이 앞에는 못이 있어 산 못, 또는 산택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예천군 용궁면에 편입되었다.
 - 산택리 1리와 2리로 구분되며, 1리에 있는 34번 국도 남쪽 바로 옆 연못에서 약 1km 정도 옛 소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누에고치를 키웠던 잠실이 나오는데, 주민들은 그곳에 있는 고개를 ‘원당고개’ 또는 ‘벼락고개’라고 부른다.

원당고개 현장 지도



산택 연꽃공원에서 바라본 현장(원거리)



희생 현장(중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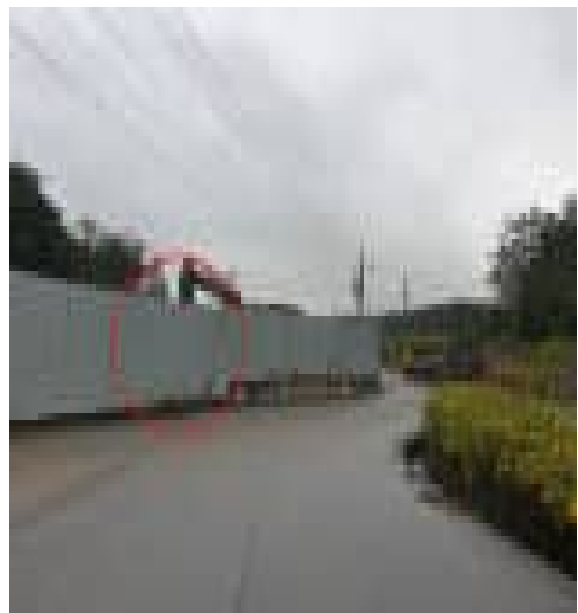
희생 현장(근거리)



② 고평나들

- 위치: 행정구역으로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이다.
- 현황
 - 예천읍에서 안동으로 가는 34번 국도의 구도로가 내성천 위로 지나가는데, 내성천에 걸린 다리가 고평다리(고평교)이다. 이 다리의 서편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나드리, 나들목이란 뜻으로서 ‘고평나들’로 부른다.

고평나들 현장 지도

양궁장 옆 레미콘공장³⁸⁰⁾

380)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의 신청인 엄○○은 박○○의 시신수습 장소를 고평나들 인근(진호국제양궁장 옆, 레미콘 공장부지(현, 고려실업))으로 진술하였다. 신청인 엄○○ 진술조서(2022. 6. 15.).

③ 지천면 신동재

- 위치: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산 45-6 번지 일대이다.
- 현황
 - 신동재는 명봉산(明峰山)에서 남서 방향으로 246.6m와 187.6m로 이어지는 이언천의 하간지(河間地)에 위치하며,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와 낙산리를 잇는 고개다. 현재 희생지에는 길이 60cm 백비가 세워져 있다.
- 2023. 11. 9.(목) 현장 조사 시 신청인 박○희 등이 동행했다.

▼ 현장 사진(희생 장소)



▼ 위성지도



▼ 신동재로에서 희생지로 올라가는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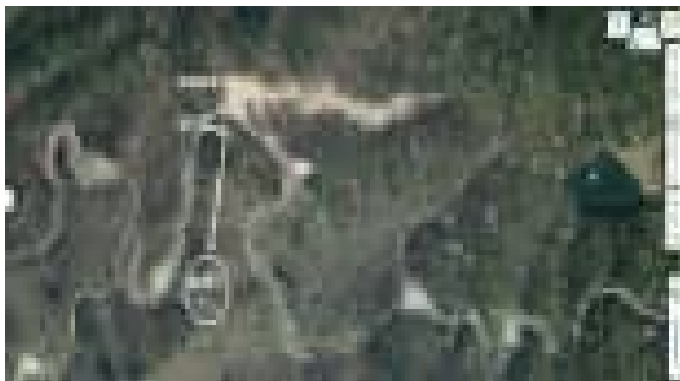
④ 가산면 모래재

- 위치: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 106-5 번지 일대이다.
- 현황
 -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323) 입구를 통과해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우측으로 금화지(가산지)가 나오고 금화지에서 1km 정도 올라가면 모래재 주차장이 나온다.
 - 주차장 건너편 전망대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직선거리 160m 정도 거리에 희생지가 있다.
- 2024. 10. 14.(월) 현장 조사 시 신청인 권○광이 동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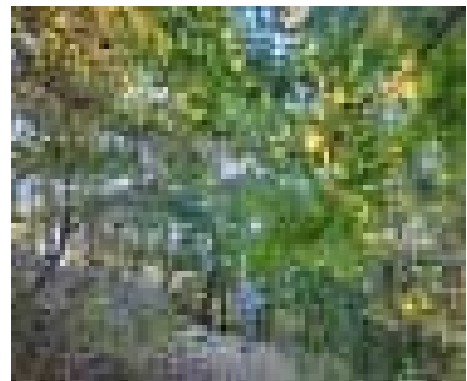
▼ 현장 사진(희생 장소)



▼ 위성지도



▼ 희생지에서 10m 정도 거리에 매장



⑤ 남후면 무릉리 골짜기

- 위치: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산 58-3 번지 일대이다.
- 현황
 - 경북대로 8088-8번지 인근 산으로 사안2교에서 직선거리 49.5m 정도 거리에 있다.
 - 『제4대국회보고서』에는 ‘무짐이 뒷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22. 10. 19.(수) 현장 조사 시 신청인 임○우의 조카 임○○가 동행했다.

▼ 현장 사진(희생 장소)



▼ 위성지도



▼ 사안2교에서 바라본 전경

